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328-01

정책보고서 201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방안 연구



안수란 · 김희성 · 김준표 · 이영글 · 김진희

【책임연구자】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김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표 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

이영글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김진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방안 연구」의 연구용역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안수란

연구참여자: 김희성

김준표

이영글

김진희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개 과정 검토	31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개	51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정책 변화	22
제3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52
제1절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개요	72
제2절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결과	92
제4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별 이용 변화 분석	95
제1절 분석 개요	6
제2절 대상별 이용 변화 분석	26
제3절 사업유형별 이용 변화 분석	68
제4절 대상별, 사업유형별 결재금액 변화 분석	39
제5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획 및 성과관리 현황 분석	111
제1절 분석 개요	13
제2절 분석 결과	14
제6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실행방안	141
제1절 지투자사업 구조조정 필요성	31

제2절 지투사업 구조조정 실행방안	61
참고문헌	159
부록	161
부록 1: 지역별·대상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161
부록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조사표	3·7 1

표 목차

〈요약표 1〉	준치평가를 위한 사업평가기준(안)	3
〈요약표 2〉	예산배분 상한기준 설정안 비교	4
〈표 2-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변천과정: 2007년~현재	6
〈표 2-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변화: 2013-2018	8
〈표 2-3〉	사업군 및 사업유형: 2013-2017년	9
〈표 2-4〉	바우처 결제정보 데이터 상의 사업 분류체계 및 사업유형: 2013-2017년	10
〈표 2-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사업 예산액(국비기준)	1
〈표 2-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방침 변화	4
〈표 3-1〉	분석 데이터 구성	8
〈표 3-2〉	대상별 사업 추이: 2013~2017	9
〈표 3-3〉	시도별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추이: 2013-2017	1
〈표 3-4〉	시도별 성인 대상 사업 추이: 2013-2017	2
〈표 3-5〉	시도별 노인 대상 사업 추이: 2013-2017	3
〈표 3-6〉	시도별 장애인 대상 사업 추이: 2013-2017	4
〈표 3-7〉	시도별 기타 대상 사업 추이: 2013-2017	5
〈표 3-8〉	시도별 복합 대상 사업 추이: 2013-2017	6
〈표 3-9〉	2017년 대상별 사업 수 및 비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7
〈표 3-10〉	2017년 대상별 사업 수 및 비율: 도, 특별자치도	9
〈표 3-11〉	사업군별 사업 추이: 2013~2017	10
〈표 3-12〉	시도별 아동재활 사업군 추이: 2013-2017	2
〈표 3-13〉	시도별 아동역량개발 사업군 추이: 2013-2017	3
〈표 3-14〉	시도별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군 추이: 2013-2017	4
〈표 3-15〉	시도별 신체건강관리 사업군 추이: 2013-2017	5
〈표 3-16〉	시도별 정신건강관리 사업군 추이: 2013-2017	6
〈표 3-17〉	시도별 가족역량강화 사업군 추이: 2013-2017	7
〈표 3-18〉	시도별 기타 사업군 추이: 2013-2017	8
〈표 3-19〉	2017년 사업군별 사업 수 및 비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9
〈표 3-20〉	2017년 사업군별 사업 수 및 비율: 도, 특별자치도	10
〈표 3-21〉	시도별 자체개발모델·표준모델 사업 수 및 비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2

<표 3-22>	시도별 자체개발모델·표준모델 사업 수 및 비율: 도, 특별자치도	3	5
<표 3-23>	시도별 서비스 제공범위별 사업 수 및 비율: 2013~2017: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6	5
<표 3-24>	시도별 서비스 제공범위별 사업 수 및 비율: 2013~2017: 도, 특별자치도	7	5
<표 4-1>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바우처 결제정보) 데이터 활용 변수	2	6
<표 4-2>	총인구 및 지투사업 이용인구 비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4	6
<표 4-3>	총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 도, 특별자치도	5	6
<표 4-4>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영유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6	6
<표 4-5>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영유아): 도, 특별자치도	9	6
<표 4-6>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아동·청소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7	7
<표 4-7>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아동·청소년): 도, 특별자치도	3	7
<표 4-8>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성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5	7
<표 4-9>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성인): 도, 특별자치	7	7
<표 4-10>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노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9	7
<표 4-11>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노인): 도, 특별자치도	0	8
<표 4-12>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장애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8	8
<표 4-13>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장애인): 도, 특별자치도	3	8
<표 4-14>	대상별 인구구성비 대비 지투사업 이용인구 구성비 차이	5	8
<표 4-15>	표준모델과 자체개발모델 사업 이용규모 변화	8	8
<표 4-16>	지역별 표준모델과 자체개발모델 사업 이용자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1	9
<표 4-17>	지역별 표준모델과 자체개발모델 사업 이용자수: 도, 특별자치도	2	9
<표 4-18>	대상별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변화 추이	3	9
<표 4-19>	2013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5	9
<표 4-20>	2013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도, 특별자치도	6	9
<표 4-21>	2014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8	9
<표 4-22>	2014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도, 특별자치도	9	9
<표 4-23>	2015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1	0
<표 4-24>	2015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도, 특별자치도	2	0
<표 4-25>	2016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4	0
<표 4-26>	2016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도, 특별자치도	5	0
<표 4-27>	2017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6	0
<표 4-28>	2017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도, 특별자치도	7	0

〈표 4-29〉	표준모델과 자체개발모델의 대상별 결재금액	9·0·1
〈표 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기획에 대한 인식(n=17)	7·1·1
〈표 5-2〉	지투사업 계획 수립과 확정 시 고려사항(n=17)	8·1·1
〈표 5-3〉	지투사업 발굴·기획·개발을 위한 체계화된 절차	9·1·1
〈표 5-4〉	지투사업 발굴·기획·개발을 위한 절차의 효과성(n=13)	9·1·1
〈표 5-5〉	시도의 지투사업 발굴·기획·개발을 위한 절차 종합(체계화된 경우)	0·2·1
〈표 5-6〉	시도의 지투사업 발굴·기획·개발을 위한 절차 종합(체계화되지 않은 경우)	2·2·1
〈표 5-7〉	시도의 지투사업 발굴·기획·개발을 위한 절차 요약	3·2·1
〈표 5-8〉	지투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기준	4·2·1
〈표 5-9〉	지투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세부 기준	4·2·1
〈표 5-10〉	지투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기준의 효과성(n=10)	5·2·1
〈표 5-11〉	지투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기준이 없는 경우의 절차(n=7)	5·2·1
〈표 5-12〉	사업별 예산배분을 위한 객관적 기준	6·2·1
〈표 5-13〉	예산배분을 위한 기준(n=14)	7·2·1
〈표 5-14〉	지투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기준이 없는 이유(n=3)	7·2·1
〈표 5-1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인식(n=17)	9·2·1
〈표 5-16〉	특정 서비스 제공 대상에 대한 예산 배분 상한선에 대한 인식(n=17)	0·3·1
〈표 5-17〉	성과지표 설정·관리(n=17)	0·3·1
〈표 5-18〉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평가 여부(n=17)	0·3·1
〈표 5-19〉	성과평가의 결과의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 여부(n=11)	1·3·1
〈표 5-20〉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n=5)	1·3·1
〈표 5-21〉	저성과 사업의 판단 기준 유무(n=17)	2·3·1
〈표 5-22〉	저성과 사업의 분류기준(n=10)	2·3·1
〈표 5-23〉	저성과 사업 판단기준이 없는 이유(n=7)	2·3·1
〈표 5-24〉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n=17)	3·3·1
〈표 5-25〉	개편이 필요한 표준모델(n=17)	4·3·1
〈표 5-26〉	개편이 필요한 이유	631
〈표 5-27〉	현재 운영 중인 지투 사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n=17)	8·3·1
〈표 5-28〉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n=15)	8·3·1
〈표 5-29〉	구조조정 시 가장 어려운 부분(n=17)	9·3·1
〈표 6-1〉	준치평가를 위한 사업평가기준(안)	9·4·1

〈표 6-2〉 예산배분 상한기준 설정안 비교	4·5·1
〈부표 1〉 지역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합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1·6·1
〈부표 2〉 지역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합계: 도, 특별자치도	2·6·1
〈부표 3〉 지역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합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영유아)	3·6·1
〈부표 4〉 지역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합계: 도, 특별자치도 (영유아)	4·6·1
〈부표 5〉 지역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합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5·6·1
〈부표 6〉 지역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합계: 도, 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6·6·1
〈부표 7〉 지역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합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성인)	7·6·1
〈부표 8〉 지역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합계: 도, 특별자치도 (성인)	8·6·1
〈부표 9〉 지역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합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노인)	9·6·1
〈부표 10〉 지역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합계: 도, 특별자치도 (노인)	0·7·1
〈부표 11〉 지역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합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장애인)	1·7·1
〈부표 12〉 지역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합계: 도, 특별자치도 (장애인)	2·7·1

그림 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체계	2·1
[그림 3-1] 대상별 사업 추이: 2013~2017	0·3
[그림 3-2] 2017년 대상별 사업 비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8·3
[그림 3-3] 2017년 대상별 사업 비율: 도, 특별자치도	9·3
[그림 3-4] 사업군별 사업 추이: 2013~2017	1·4
[그림 3-5] 표준모델 vs 자체개발모델 사업 수: 2013~2017	1·5
[그림 3-6] 시도 단위 표준모델 vs 자체개발모델 사업 추이: 2013~2017	4·5
[그림 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기획에 대한 인식(n=17)	6·1·1
[그림 6-1] 전북의 집행률 저조사업 관리방안 사례	0·5·1
[그림 6-2] 전북의 유사·중복 예방조치 계획 사례	1·5·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하 지투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수요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효과를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설계된 제도임.
- 그러나 제도도입 이후, 지자체별 복지자원 불균형, 사업 기획 및 성과관리 역량의 차이로 지역의 특성과 사업 효과성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서비스 기획과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중앙정부는 연도별 지역의 사업 집행 현황과 수행 실태를 점검하면서, 사업 기획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지역 역량에 따른 사업 기획 및 운영 격차는 해소되고 있지 않음.
- 본 연구는 지역 수요와 서비스 효과성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투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시도별 지투사업 제공 및 이용 실태를 시계열로 살펴보고, 지투사업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해 보고자 함.
 - 시도별로 지투사업이 기획, 조정, 성과관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에서 사업 결정이 이루어지는 요인을 도출하고, 공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투사업의 합리적 기획 및 조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의 지투사업 전개과정을 검토함.
 - 지투사업 관련 행정 및 정책자료 및 지침 검토를 통해 지투사업의 변천과정을 정리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방침 변화를 살펴봄.
- 시·도별 지투사업의 제공 추이를 분석함.
 - 연도별 기준정보(2013-2017년)를 활용하여 시도별 지투사업의 특성 변화를 사업대상·사업군·사업유형·서비스 제공범위 기준에 따라 분석
- 시·도별 지투사업의 이용 추이를 분석함.
 - 사회보장정보원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결재정보 데이터(2013-2017년)를 활용하여 시도별 지투사업 이용 추이 분석
- 시도별 지투사업 기획과정, 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구조조정 관련 인식을 분석함.
 - 시도 지원단 FGI 및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기획 및 신규 사업 개발 과정, 사업 조정 및 폐지 판단기준, 예산배분 기준, 저성과 사업 관리 체계, 성과관리 활용도 등을 파악
- 지투사업의 합리적 기획 및 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 지투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체계(안) 및 구조조정 실행절차(안) 마련, 예산편성 운영방식(안) 제시, 표준모델 개선 방향 제언

3.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 분석 결과 지투사업의 기획, 조정, 성과 관리 측면에서 다음의 문제점이 도출됨.
 - (기획) 지역 욕구 조사에 기반한 체계적 사업 설계 미진, 아동·청소년 중심의 사업 대상 편중화, 표준모델로의 사업 광역화 및 예산 편중 문제가 두드러짐,
 - (조정 및 성과 관리) 사업 조정 및 폐지 기준이 모호하고 개별 사업별 성과 관리 및 환류 체계가 미흡하여 사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력은 낮은 수준임.

- 사업 대상의 편중화 해소,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업 내용의 다양화, 사업 조정 및

관리의 체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지투사업 구조조정 실행방안을 제시함.

□ 사업 구조조정 평가체계(안)

- (설계원칙) 포괄성, 유연성, 자율성이라는 핵심 원칙을 반영
- (평가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모든 사업
- (평가기준) 사업기획, 사업집행, 사업성과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세부 기준을 설정
- (평가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5대 등급으로 준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이행 조치 방안을 마련
- 세부기준별 배점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권고기준을 참고하여 분야별 총 배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요약표 1〉 준치평가를 위한 사업평가기준(안)

분야	세부 기준	배점 (권고)
사업기획 (40)	1-1. 중앙정부-지자체의 타 복지사업 및 지투사업 내 다른 사업과 목적, 내용, 지원대상이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25
	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인가? -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가?	15
사업집행 (20)	2-1. 부정행위, 안전사고, 서비스 품질관리 등 관련 규정과 기준정보를 준수하여 사업이 제공되었는가?	10
	2-2. 사업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가?	10
사업성과 (4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사업 실적)	25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사업 효과)	15
준치평가	정상추진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통폐합 집중관리	

□ 구조조정 실행절차(안)

- 존치평가 기준 수립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존치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 →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의 과정으로 추진
- 존치평가 주체는 「시(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로, 위원회는 존치평가의 기준을 확정하고, 평가를 수행
- 존치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시도, 시군구 합동 회의를 통해 결정
 - 존치평가에서 미흡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협력하여 집중관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

□ 예산편성 운영방식(안)

- 특정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의 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제고
- (설계원칙) 자율성과 신축성의 원칙 반영
 - 서비스 제공대상별 조정 기준을 일률적·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양함.
 - 특정 서비스 제공대상을 위한 예산편성의 상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지자체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
 - 예산배분 상한기준 내에서 예산운영을 자율화하되, 지자체별 지투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탄력적 운영을 위해 자율운영 범위를 추가로 설정

〈요약표 2〉 예산배분 상한기준 설정안 비교

구분	시나리오	조정 필요 시도	예산 조정 효과		
			평균	최대	최소
1안 (30±15%)	최소조정(45%)	10개 시도	12.6%	39.9%	4.4%
	평균조정(30%)	17개 시도	22.6%	54.9%	5.3%
2안 (27±12%)	최소조정(39%)	16개 시도	13.1%	45.9%	0.6%
	평균조정(27%)	17개 시도	26.9%	57.9%	8.3%

□ 지투사업 표준모델 개선 방향

- 표준모델 사업의 이용자 규모가 전체 사업의 80%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모델 사업의 개선이 지자체의 사업 기획, 조정, 관리 및 운영 효율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 표준모델은 지역개발형 사업이 지닌 문제점(사업 내용의 지나친 세분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지역 간 편차)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중앙정부 주도로 표준화하여 제공하여왔으나, 그간 표준모델에 대한 개편 요구는 지자체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표준모델의 개편은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발굴되지 않은 잠재적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사업 개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임.

□ 표준모델 개선 방안

-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표준모델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
- 이용이 저조한 표준모델 사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새롭게 나타나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표준모델 사업의 개발 필요
- 공급자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정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보편적 서비스 욕구가 있어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표준모델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부 지원 수준을 하향조정하여 그간 지원이 미미했던 사업량의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용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투사업) 구조조정 성과관리, 구조조정 실행방안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하 지투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수요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효과를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설계된 제도임.
- 2007년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2012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3년 포괄보조 형태로 전환하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가사간병관리지원사업과 함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운영 중임.
- 그러나 제도도입 이후, 지자체별 복지자원 불균형, 사업 기획 및 성과관리 역량의 차이로 지역의 특성과 사업 효과성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서비스 기획과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그간 쟁점화 된 지투사업 기획 및 조정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면,
 - 첫째, 지역사회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별 욕구 대비 공급 상황에 맞춰 일정한 틀을 가지고 서비스를 체계화시키고 있다기보다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발되고, 그 중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관리가 안 되거나, 다른 서비스와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업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박세경 외, 2016),
 - 둘째, 기초지자체별로 개발된 사업이 가져오는 편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가 표준모델로 표준화 광역화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의 기획과 실행이 미진해졌고,

- 셋째, 일부 지자체는 사업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사업폐지 유도를 위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여 이미 시장형성이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조정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
 -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가 가진 본질적 특성(예:효과 정의 불분명, 측정도구의 부재, 효과 발생에 장시간 소요)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계를 노출시켰음.
- 이러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시도 성과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그간 중앙 정부는 연도별 지역의 사업 집행 현황과 수행 실태를 점검하면서, 사업 기획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지역 역량에 따른 사업 기획 및 운영 격차는 해소되고 있지 않음.
- 본 연구는 지역 수요와 서비스 효과성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투자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됨.
- 첫째, 시도별 지투자사업 제공 및 이용 실태를 시계열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투자사업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해 보고자 함.
 - 둘째, 시도별로 지투자사업이 기획, 조정, 성과관리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에서 사업 결정이 이루어지는 요인을 도출하고, 공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전술한 바와 같이 지투자사업 기획, 조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 과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한 자료는 미흡한 상황
 - 셋째,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투자사업의 합리적 기획 및 조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제2절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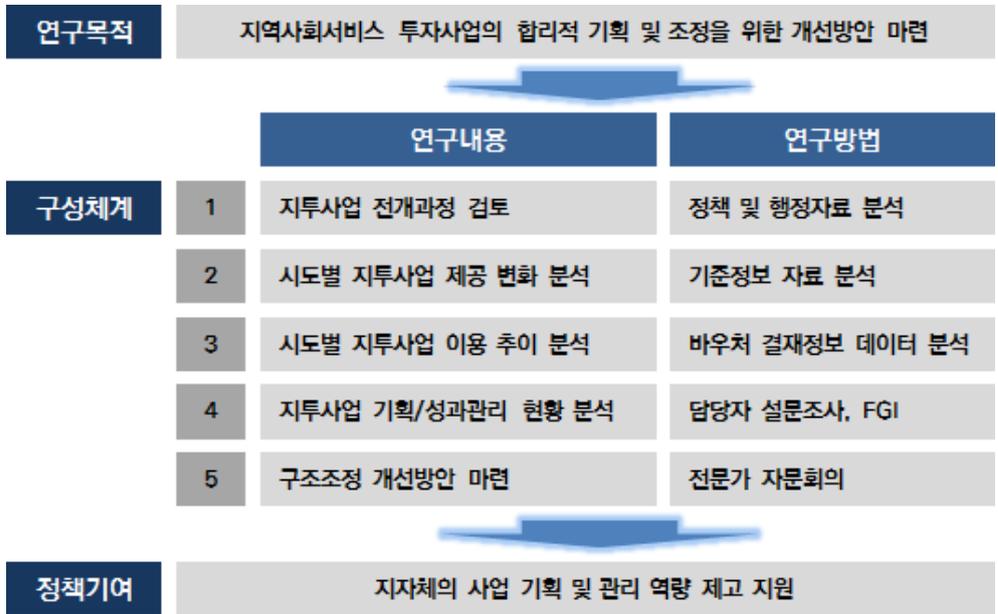
- 첫째,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의 지투사업 전개과정을 검토함.
 - 지투사업 관련 행정 및 정책자료 및 지침 검토를 통해 지투사업의 변천과정을 정리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방침의 변화를 살펴봄.
- 둘째, 시도별 지투사업의 제공 추이를 분석함.
 - 연도별 기준정보(2013-2017년)를 활용하여 시도별로 제공되고 있는 지투사업의 특성 변화를 분석
 - 사업대상(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기타, 복합), 사업군(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사회참여지원, 신체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가족역량강화, 기타), 사업유형(표준모델, 자체개발모델), 서비스 제공범위(시도, 시군구, 시군구공동, 전국) 기준에 따른 시도별 사업구성 변화를 분석
- 셋째, 시도별 지투사업의 이용 추이를 분석함.
 - 사회보장정보원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결재정보 데이터(2013-2017년)를 활용하여 시도별 지투사업 이용 추이 분석, 지역의 잠재적 서비스 수요에 지투사업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진단함.
 - 사업대상별(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서비스 잠재적 수요 대비 이용 규모, 사업유형별(표준모델, 자체개발모델) 이용규모, 대상별·사업유형별 결재금액 분석
- 넷째, 시도별 지투사업 기획과정, 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구조조정 관련 인식을 분석함.
 - 시도 지원단 FGI 및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기획 및 신규 사업 개발 과정, 사업 조정 및 폐지 판단기준, 예산배분 기준, 저성과 사업 관리 체계, 성과관리 활용도 등을 파악하고 시도별로 지투사업이 결정되는 요인을 종합 검토함.

- 아울러 시도별 사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장애요인, 표준모델 개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함.

○ 다섯째, 지투사업의 합리적 기획 및 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투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체계(안) 및 구조조정 실행절차(안) 마련, 사업 간 합리적 조정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방식(안) 제시, 표준모델 개선 방향 제언
- 정책 제언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지역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체계



제 2 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개 과정 검토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개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정책 변화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전개과정 검토 <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개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 지투사업은 2007년 참여정부 때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기획·집행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제도 도입 이후, 사업명, 사업구성, 재정지원방식, 운영 체계 등에 있어 몇 차례 중요한 변화를 거쳐 사업 규모를 확장해오면서 우리나라의 핵심 사회서비스 제도로 자리매김함.
- 2007년 도입 당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13년 재정지원방식이 개별보조에서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과 하나로 묶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관리됨.
- 사업구성을 살펴보면, 2013년 이전에는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다가 2013년 이후 지역자율형의 단일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2013년 이전의 사업유형은 1) 서비스 수요가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사회투자적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 투자의 필요성에 의해 복지부가 사업의 기준과 지침을 직접 설계하고 지역은 이에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의 사업(전국표준형, 보편형, 지역선택형)과 2) 지역이 사업을 직접 기획하

여 운영하는 유형의 사업(자체형, 지역맞춤형, 지역개발형)으로 구분되었음.

○ 두 번째 유형의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이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발굴·기획하고, 복지부가 이를 심사·선정 및 지원·평가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역량에 따른 사업 내용 및 서비스 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장점이 있었음.

- 그러나 사업 내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서비스 제공대상이나 제공내용 측면에서 일정한 원칙 없이 사업이 운영·관리되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등 사업관리의 한계가 노출되었음(정홍원 외, 2013).

○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사업의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표준화하여 지역선택형 사업과 유사하게 희망 지자체에서 채택·운영하도록 하는 표준모델을 제공하여 왔음.

〈표 2-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변천과정: 2007년~현재

구분	’07.6	’08	’09	’10	’11	’12	’13	’14	’15	’16~ 현재
사업명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구성	전국 표준형	보편형	지역선택형				지역자율형			
	자체 개발형	지역 맞춤형	지역개발형							
주요 정책 변화			제공 기관 운영 자시스템 운영		지원단 설치 운영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 등록제 도입	사회보장 기본법 전면개정 시행 포괄보조 도입		지역발전 특별회계 전환	

주 : 2012년까지 전국표준형, 보편형, 지역선택형 사업으로 제안된 것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임. 2007년에는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가 전국 표준형으로 제시됨.

자료: 정홍원 외(2013) p.15 〈표2-1-2〉 을 재구성함.

- <표 2-2> 은 포괄보조방식으로의 전환 이후 지투사업 표준모델 변화를 정리한 것으로, 지자체는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해당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음.
- 2013년에는 11개의 표준모델과 9개의 기타 표준형 모델이 제시되었음.
 - 제시된 11개의 표준모델은 2015년 폐지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지
 - 기타 표준형 모델 중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는 표준모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유지
 - 장애인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는 장애인 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로 명칭 및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표준모델로 유지
 - 아동돌봄서비스, 부모학교 서비스, 저소득가정 렌탈 서비스, 고령자소외예방서비스, 아동 리더쉽 증진 서비스,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서비스,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는 단년 또는 다년간 표준모델로 유지되다가 폐지
- 성인(청년) 심리지원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서비스은 2017년 이후 신규 표준모델로 포함됨.
- 종합하면 2013년 이후 총 27개의 표준형 모델 사업이 제시되었으며 2018년 현재 17개 사업이 운영 중임.

〈표 2-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변화: 2013-2018

표준모델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	○	○	○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	○	○	○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	○	○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	○	○	○	○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	○	○	○	○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	○	○	○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	○	○	○	○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	○	○	○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	○	○	○	○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	○	○	○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	○	○	○	○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	○	○	○	○	○
아동돌봄서비스	□	○				
부모학교 서비스	□	○				
장애인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	□	○	○			
저소득가정 렌탈서비스	□	○				
고령자소외예방서비스	□	○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	○	○	○	○
아동 리더쉽 증진 서비스	□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서비스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			
장애인 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				○	○	○
성인(청년) 심리지원서비스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_전국표준					○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서비스					○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
계 (총 : 27개)	11개+ □	19개	17개	14개	17개	17개

주 : 2013년 □ 표시는 기타 표준형 모델, 표준모델명이 일부 변경된 사업 있음.
 자료: 각 사업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3-2018

□ 한편, 지투자사업은 사업군에 따라 분류하여 사업군별 필수 서비스 절차 및 예산 집행기준 등을 설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군은 <표 2-3> 과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음.

○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신체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가족역량강화, 기타의 7개 사업군으로 분류되며, 사업군별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제시됨.

- 2013년부터 노인장애인사회참여지원 분류가 새롭게 마련되어 노인층이 중요한 서비스 대상으로 등장한 점이 이전 분류체계와의 차이임.

<표 2-3> 사업군 및 사업유형: 2013-2017년

사업군	사업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동 재활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치유 등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치유 등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정서발달 ·인터넷 과몰입 아동치유 등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정서발달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 등
아동 역량 개발	·아동인지능력 향상 ·아동 비전형성 지원 ·아동 리더쉽 증진 ·멘토링 아동 문화활동 지원 등	·아동 비전형성 지원 ·아동 리더쉽 증진 ·멘토링 아동 문화활동 지원 등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등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등
노인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여행 ·노후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등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여행 ·노후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등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노후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등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신체 건강 관리	·시각장애인 안마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표준형) ·기타 맞춤형 운동처방 ·(비만)아동 건강관리 ·U-Health 등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시각장애인 안마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표준형) ·기타 맞춤형 운동처방 ·(비만)아동 건강관리 ·저소득 건강증진 등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시각장애인 안마 ·노인 맞춤형 운동 ·(비만)아동 건강관리 등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시각장애인 안마 ·노인 맞춤형 운동 ·장애인 신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비만)아동 건강관리 등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정신 건강 관리	·정신장애인 토탈케어 ·자살고위험군 건강관리 등	·정신건강 토탈케어 ·자살 위험군 예방 등	·정신건강 토탈케어 ·자살 위험군 예방 등	·정신건강 토탈케어 ·자살 위험군 예방 등
가족 역량 강화	·다문화가정사회참여 지원 ·근로자 정서지원 ·부모학교(양육태도 교육) ·조손가정 사례관리 등	·다문화가정사회참여 지원 ·근로자정서지원 통합지원 등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 지원 등

자료 : 각 사업 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3-2017

-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되는 사업 분류 항목과 지침에 제시된 분류 체계는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예컨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지침상 아동재활 사업군이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아동역량개발 사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 2015년까지 기준정보에 사업군 구분항목은 부재함.
- 2016년에 들어서야 지침과 데이터 상 분류가 일치하여 안정된 데이터 관리 체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됨.

〈표 2-4〉 바우처 결재정보 데이터 상의 사업 분류체계 및 사업유형: 2013-2017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분류	아동역량개발	아동역량개발	아동역량개발	아동재활	아동재활
	아동돌봄 신체건강관리	아동돌봄 신체건강관리	가족역량강화	아동역량개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노인장애인사회참여지원
	노인장애인 신체건강	노인장애인 신체건강	신체건강관리	신체건강관리	신체건강관리
	기타	기타	기타	정신건강관리 가족역량강화 기타	정신건강관리 가족역량강화 치매부양가족지원 기타

자료 : 각 사업 연도 바우처 결재정보 데이터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규모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13년 포괄보조 전환 이후 사업규모가 점차 확장되어 2018년 현재 2,361억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있음.

○ 서울과 지방은 각각 사업비의 50%, 70%, 신성장추진지역의 경우 80%가 국비로 지원됨.

○ 그러나 저출산 해소 및 돌봄 욕구 대응을 위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은 2016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음.

〈표 2-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사업 예산액(국비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11	1,452	1,584	1,684	1,621	1,65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291	272	361	361	388	499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82	181	191	192	204	255
계	1,884	1,906	2,136	2,237	2,213	2,361

자료: 보건복지부. 각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정책 변화

- 지투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의 발굴과 제공이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 그러나 제도도입 이후 지투사업이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자율성 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침, 즉 연도별로 제시하는 관리기준 및 성과평가가 지자체의 사업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조근식 외, 2017).
- 특히 2013년 포괄보조방식에서의 전환 이후, 보건복지부의 지투사업 구조조정 방침은 보다 구체화되었음.
 - 지투사업이 6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사업 수가 증가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점검 방식의 개편이 요구되었고, 사업 종류 및 규모 증대로 인해 기존의 사업별 보조방식에 대한 관리 부담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전례답습적인 사업운영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관리방식이 요구되었음(정홍원 외, 2013, p.4).
 -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업 조정 및 시도별 예산총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과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시도가 기획·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가 전환됨.
 -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 총액의 배분, 사업기획 컨설팅 및 거시적인 정책 방향 기획에 집중하고,
 - 시도는 사업 기획 및 집행의 책임성을 가지고 정책 방향성 설정, 사업의 기획운영 및 집행관리, 세부 사업별 시군구별 자체평가를 담당함.
- <표 2-6> 은 2013년 이후 지침에 제시된 보건복지부의 지투사업 구조조정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특히 2013, 2014년의 경우 사업군별, 사업유형별 예산배분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임.
 - 2013년과 2014년은 사업군별(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사회참여지원, 신체

건강관리) 예산 상한선(안)을 설정하여, 상한을 초과한 시도는 예산 상한 아래로 조정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함.

- 지역선택형으로 제공되었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삭감(이용자별 정부지원금 하향조정)하고 지역개발형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통해 2015년 사업을 최종 폐지하였음.
-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 내 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여 중복 이용 방지 및 사업 규모화를 도모하도록 그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였음.
 - 시군구 유사사업을 시도 개발사업으로 광역화 시 성과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
 - 2013년과 2014년 시도 성과평가 정량 세부지표에 ‘사업의 광역화 비율’, ‘사업군별 투자 방향 준수율’, ‘구조조정 권고사항 이행률’을 포함
 - 2015~2017년 성과평가에는 사업 통합 및 광역화 실적을 정량지표로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사업계획 영역 내에서 반영하여 통합적으로 평가
 -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낮아 이용률이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도록 유도함.
- 또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사업 차별성 및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의 축소·폐지를 권고함.
 - 사업효과가 불확실하여 단계적 폐지 권고를 받은 청소·방역·세탁·이미용사업
 -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및 다문화가정 아동학습지도서비스
 - 타 사업과의 중복소지가 있는 단순체험, 단순 학습지원 사업
 - 현장점검 결과 사업중단을 권고받은 사업
 - 학습지 위주 서비스, 제공기관 패키지 상품 제공 등으로 변질 우려가 있는 독서지도서비스
 - 기타 자체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한 사업
 - 서비스 제공 전후, 개선효과가 미비한 단순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복지사업과 유사한 서비스

〈표 2-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방침 변화

연도	구조조정 방침 내용	
2013	<p>사업군/유형별 예산 배분 기준안 제시</p> <p>유사중복 서비스 구조조정 추진 - 공공인프라 확대에 따른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사업 차별성이 미흡한 사업 축소·폐지</p> <p>여러 시군구 유사사업을 시도 개발사업으로 광역화 시 인센티브 부여 (유사중복 사업 통합 실적 및 사업 광역화 실적은 추후 성과평가 시 반영)</p> <p>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낮아 이용률이 미흡한 사업 예산 감액</p>	<p>(아동역량개발) 2012년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시도별 상한선 설정- 상한을 초과하여 예산 조정·집행 불가</p> <p>(아동인지) 별도의 상한을 정하여 예산을 책정·배분하고 단계적으로 정부지원금 인하 및 구조조정</p> <p>(아동인지 외) 해당 사업 예산이 사업 총액의 30%를 초과하는 시도는 2014년까지 30% 이하로 조정</p> <p>(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2012년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시도별 상한선 설정- 상한을 초과하여 예산 조정·집행 불가</p> <p>해당 사업 예산이 사업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시도는 2014년까지 20% 이하로 조정</p> <p>(신체건강관리) 2012년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시도별 상한선 설정- 상한을 초과하여 예산 조정·집행 불가</p>
2014		<p>(아동역량개발) 50% 이내 예산 배분</p> <p>(아동돌봄_신체건강관리) 30% 이내 예산 배분</p> <p>(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50% 이내 예산 배분</p> <p>(노인장애인 신체건강) 30% 이내 예산 배분</p> <p>(기타) 30% 이내 예산 배분</p> <p>(10대) 돌봄여행, 청소방역, 아동체험의 경우 예산배분을 최소화하여 구조조정 권고</p> <p>(아동인지) 지역개발형사업으로 전환 등 구조조정 지속추진, `14년 사업축소 및 구조조정을 거쳐 `15년 이후 사업 폐지 원칙 준수</p>
2015	유사중복 서비스 구조조정 지속 추진	
2016	공공인프라 확대에 따른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사업 차별성이 미흡한 사업 축소·폐지 여러 시군구 유사사업을 시도 개발사업으로 광역화 시 인센티브 부여 (유사중복 사업 통합 실적 및 사업 광역화 실적은 추후 성과평가 시 반영)	
2017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낮아 이용률이 미흡한 사업 예산 감액	
2018	유사중복 서비스 구조조정 지속 추진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낮아 이용률이 미흡한 사업 예산 감액	

자료 : 각 사업 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3~2018년

제 3 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제1절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개요

제2절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결과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

제1절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개요

□ 본 장에서는 2013년~2017년 5개년도 기준정보를 활용하여 17개 시도별로 1) 대상별, 2) 사업군별, 3) 사업유형별(표준/비표준(자체개발) 모델), 4) 서비스 제공범위별 분석을 통해 지투자사업 서비스 제공 추이를 파악하고자 함.

□ 분석을 위한 항목별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사업 대상)**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기타, 복합
 - 영유아 대상 사업은 경북의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사업 1건만 해당됨.
 - 기타는 전체, 가족, 여성, 임산부, 근로자, 다문화, 기타 대상 포함
 - 복합은 장애아동, 아동·여성, 아동·성인, 노인·장애인 대상 등 두 개 이상의 대상을 포괄한 경우 포함
- **(사업군)**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신체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가족역량강화, 기타
 - 보건복지부의 지투자사업 안내(2013~2017)에 따른 사업유형별 사업군 분류 (〈표 2-3〉 참고)
- **(사업유형)** 표준모델, 자체개발모델
 - 보건복지부의 지투자사업 안내(2013~2017)에 따른 표준모델과 표준모델 외 사업 분류(〈표 2-2〉 참고)
- **(서비스 제공범위)** 시도, 시군구, 시군구 공동, 전국표준형
 - 시도는 시행 시군구 중 관할 시군구 '전체'를 기재한 경우

- 시군구는 관할 시군구 하나만 기재한 경우
- 시군구 공동은 관할 시군구 두 개 이상을 기재한 경우
- 전국표준형은 전국표준형으로 기재한 경우

□ 데이터 분류 원칙은 2016년, 2017년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한 기준정보의 분류 기준을 우선 적용함.

○ 다만, 분류정보가 없거나 임의분류가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각 연도별 사업 안내 분류기준(〈표 2-3〉)을 참고하여 새롭게 분류함.

- ‘사업 대상’, ‘사업군’, ‘서비스 제공범위’는 2013~2015년 기준정보 데이터에 구분 항목이 없어 추가 분류하고, 2016년~2017년은 기존의 기준정보 데이터 내용을 활용함.
- ‘표준모델·자체개발모델 여부’는 2013~2017년 기준정보 데이터에 구분 항목이 없어 사업명을 기준으로 추가 분류함.

〈표 3-1〉 분석 데이터 구성

구분	내용	비고
지역 기본 정보	- 17개 시도 구분 - 228개 시군구 구분	
서비스 내용	-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사업명	
사업 대상	- 사업대상을 7개로 구분 • ① 영유아, ② 아동·청소년, ③ 성인, ④ 노인, ⑤ 장애인, ⑥ 기타, ⑦ 복합	- 2013~2015년 추가 분류 - 2016~2017년 기존 기준정보 활용
사업군	- 사업군을 7개로 구분 • ① 아동재활, ② 아동역량개발, ③ 노인장애인사회참여지원, ④ 신체건강관리, ⑤ 정신건강관리, ⑥ 가족역량강화, ⑦ 기타	- 2013~2015년 추가 분류 - 2016~2017년 기존 기준정보 활용 - ※ 〈표 2-3〉 참고
서비스 제공범위	- 서비스 제공범위를 4개로 구분 • ① 시도, ② 시군구, ③ 시군구 공동, ④ 전국표준형	- 2013~2015년 추가 분류 - 2016~2017년 기존 기준정보 활용
표준모델·자체개발모델 여부	- 표준모델·자체개발모델 2개로 구분 • ① 표준모델, ② 자체개발모델	- 2013~2017년 추가 분류 ※ 〈표 2-2〉 참고

제2절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결과

1. 대상별 사업 제공 변화

□ 2013~2017년 5년간 대상별 전체 사업 추이는 2013년 773개 사업에서 2017년 425개 사업으로 연평균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동일한 추세로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5년간 연평균 21.1% 감소함.

– 다른 대상별 사업과 비교하여 변화폭이 크게 나타나며 특히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450개 사업에서 286개 사업으로 큰 폭으로 사업 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성인과 기타 대상 사업은 전체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사업 수 기준 각각 연평균 1.3%,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 대상별 사업 추이: 2013~2017

(단위: 개, %)

구분 ¹⁾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아동· 청소년	사업 수(개)	426	450	286	186	165	▽21.1
	비율(%)	(55.1)	(52.8)	(46.7)	(40.9)	(38.8)	
성인	사업 수(개)	19	20	18	19	18	△1.3
	비율(%)	(2.5)	(2.3)	(2.9)	(4.2)	(4.2)	
노인	사업 수(개)	116	136	103	92	82	▽8.3
	비율(%)	(15.0)	(15.9)	(16.8)	(20.2)	(19.3)	
장애인	사업 수(개)	52	56	53	42	47	▽2.5
	비율(%)	(6.7)	(6.6)	(8.6)	(9.2)	(11.1)	
기타 ²⁾	사업 수(개)	37	54	53	49	55	△10.4
	비율(%)	(4.8)	(6.3)	(8.6)	(10.8)	(12.9)	
복합 ³⁾	사업 수(개)	123	137	100	67	57	▽13.9
	비율(%)	(15.9)	(16.1)	(16.3)	(14.7)	(13.4)	
총합계	사업 수(개)	773	853	613	455	425	▽17.5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영유아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북의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사업 1건은 제외

2) '기타'는 전체, 가족, 여성, 임산부, 근로자, 다문화, 기타 대상 포함

3) '복합'은 장애아동, 아동·여성, 아동·성인, 노인·장애인 대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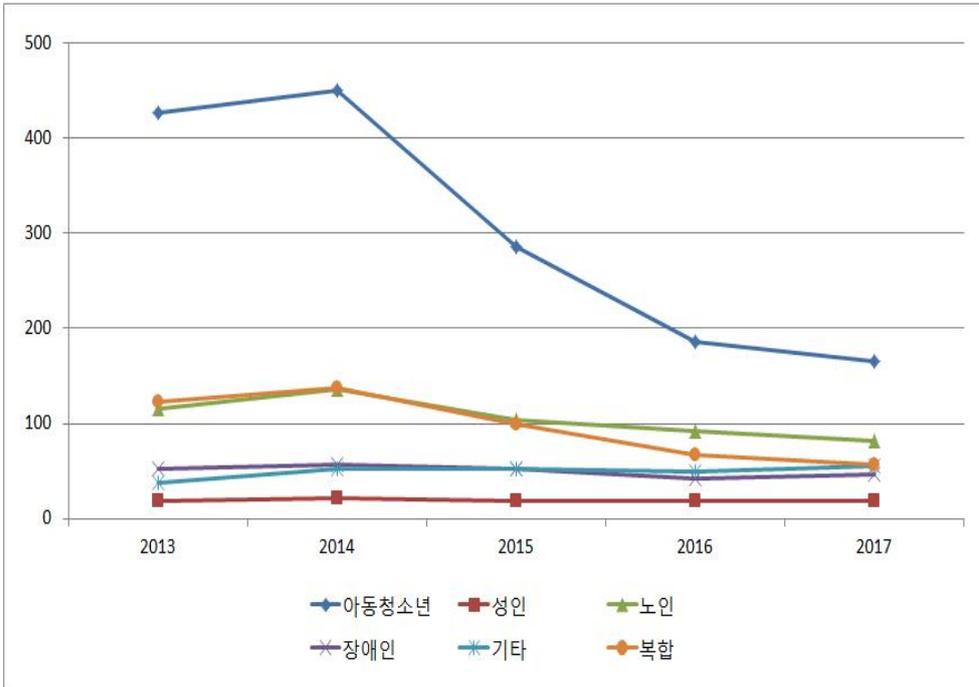
○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아동·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노인 대상 사업은 2013년 116개 사업에서 2017년 82개 사업으로 감소함.
- 장애인 대상 사업은 2013년 52개 사업에서 2017년 47개 사업으로 감소함.

□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사업 수의 비율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과 복합 사업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성인, 장애인, 기타 대상 사업의 사업 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대상별 사업 추이: 2013~2017

(단위: 개)



- 주 1) 영유아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북의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사업 1건은 제외
- 2) '기타'는 전체, 가족, 여성, 임산부, 근로자, 다문화, 기타 대상 포함
- 3) '복합'은 장애아동, 아동·여성, 아동·성인, 노인·장애인 대상 포함

□ <표 3-3>~<표3-8>은 2013~2017년의 대상별 사업 수 변화를 시도별로 나타냄.

○ (아동·청소년 대상) 전체 사업 수는 2013년 426개 사업에서 2017년 165개 사업으로 5년 동안 절반 이상 사업이 줄어들었으나 이는 2015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폐지와 사업코드 통합으로 인한 결과로 보임.¹⁾

-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소폭 증가하다가, 2015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크게 줄었으며 2017년에는 2013년의 38.7%의 수준을 유지함.
-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시도는 2013년~2017년 5년간 최소 9.6%(대전, 울산)~최대 39.2%(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세종은 2013년 2개 사업에서 2017년 4개 사업, 제주는 2013년 7개 사업에서 2017년 9개 사업으로 각각 18.9%, 6.5% 증가함.

<표 3-3> 시도별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추이: 2013-2017

(단위: 개, %)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서울	39	42	15	10	10	▽28.8
부산	29	29	12	6	7	▽29.9
대구	22	22	24	18	3	▽39.2
인천	17	20	10	7	9	▽14.7
광주	14	13	14	6	9	▽10.5
대전	15	16	12	11	10	▽9.6
울산	9	10	8	6	6	▽9.6
세종	2	2	3	3	4	△18.9
경기	38	39	12	8	8	▽32.3
강원	30	32	20	16	15	▽15.9
충북	40	42	37	8	16	▽20.5
충남	33	35	32	23	12	▽22.3
전북	45	50	14	11	11	▽29.7
전남	24	24	26	20	14	▽12.6
경북	41	45	29	18	14	▽23.6
경남	20	21	9	7	8	▽20.5
제주	7	7	8	8	9	△6.5
총합계	426	450	286	186	165	▽17.6

주: 2013~2015년 전국단위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은 제외

1) 2013년~2014년까지는 기준정보 관리를 서비스 시행 시군구 단위로 사업을 관리하였고 2015년부터는 사업코드가 통합되면서 사업단위로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시작함. 일례로 전북의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는 2013년에 9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어 사업 수가 9개로 카운트 되었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시군공동개발 사업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각각 1개의 사업으로 카운트 됨.

○ (성인 대상) 전체 사업 수는 2013년 19개에서 2017년 18개로 변동폭이 크지 않으나, 시도별로 최소 0개~최대 6개 수준으로 사업 수가 많지 않음.

- 2017년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6개 시도(부산, 인천, 광주, 세종, 충북, 전북, 제주)에서 성인 대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일부 지자체에서 성인 대상 사업을 기타로 구분하는 경우를 고려한다고 해도 타 대상사업에 비해 성인 대상 사업이 부족한 상황임.

〈표 3-4〉 시도별 성인 대상 사업 추이: 2013-2017

(단위: 개, %)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서울	3	4	2	2	2	▽9.6
부산	-	-	1	1	-	-
대구	2	1	3	3	3	△10.7
인천	-	-	-	-	-	-
광주	1	1	1	-	-	▽100.0
대전	6	6	4	3	1	▽36.1
울산	1	1	1	3	4	△41.4
세종	-	-	-	-	-	-
경기	2	2	1	1	1	▽15.9
강원	1	1	1	2	2	△18.9
충북	-	-	-	-	-	-
충남	-	-	-	-	1	-
전북	-	-	-	-	-	-
전남	1	1	1	1	1	0.0
경북	1	1	1	1	1	0.0
경남	1	2	2	2	2	△18.9
제주	-	-	-	-	-	-
총합계	19	20	18	19	18	▽1.3

○ (노인 대상) 전체 사업은 2013년 116개 사업에서 2017년 99개 사업으로 감소하였음.

- 2013년에서 2014년은 증가하였으나 2015년으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사업 수가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음.
- 2016년~2017년 세종과 제주에서는 노인 대상 사업이 없음.
 - 세종은 2013~2015년까지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2016년부터 폐지됨.
 - 제주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5년간 전무한 상황이나 복합 대상에 노인 및 장애인, 노인 및 아동 등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표 3-5〉 시도별 노인 대상 사업 추이: 2013-2017

(단위: 개, %)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서울	3	3	2	1	2	▽9.6
부산	14	15	5	3	3	▽32.0
대구	7	7	7	7	3	▽19.1
인천	10	12	5	5	5	▽15.9
광주	4	4	4	1	1	▽29.3
대전	7	7	5	5	4	▽13.1
울산	3	3	3	3	3	0.0
세종	1	1	1	-	-	▽100.0
경기	10	10	4	3	4	▽20.5
강원	5	11	11	10	10	18.9
충북	7	9	7	5	6	▽3.8
충남	7	9	10	12	9	△6.5
전북	11	13	7	6	6	▽14.1
전남	12	13	14	12	12	0.0
경북	12	12	14	14	9	▽6.9
경남	3	7	4	5	5	△13.6
제주	-	-	-	-	-	-
총합계	116	136	103	92	82	▽8.3

○ (장애인 대상) 전체 사업은 2013년 52개 사업에서 2017년 47개 사업으로 감소하였음.

- 다른 대상과 같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나, 2017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 광주와 제주에서는 장애인 대상 사업 추진이 미흡한 상황임.
 - 광주는 2013~2017년까지 장애인 대상 사업이 전무했으나 2017년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심리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도입함.
 - 제주는 노인 대상과 같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5년간 전무한 상황이나 복합 대상에 노인 및 장애인 등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표 3-6〉 시도별 장애인 대상 사업 추이: 2013-2017

(단위: 개, %)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서울	2	2	3	2	4	△18.9
부산	1	1	1	1	1	0.0
대구	3	3	4	4	4	△7.5
인천	5	5	6	4	5	0.0
광주	-	-	-	-	1	-
대전	2	2	4	2	3	△10.7
울산	2	2	3	3	2	0.0
세종	1	1	1	1	1	0.0
경기	4	5	4	4	3	▽6.9
강원	1	1	1	1	1	0.0
충북	7	8	9	5	6	▽3.8
충남	2	2	2	1	2	0.0
전북	8	11	5	4	3	▽21.7
전남	6	5	5	5	6	0.0
경북	2	2	2	2	2	0.0
경남	6	6	3	3	3	▽15.9
제주	-	-	-	-	-	-
총합계	52	56	53	42	47	▽2.5

- (기타 대상) 전체, 가족, 여성, 임산부, 근로자, 다문화가족 등의 대상을 포함하는 기타 대상 사업은 2013년 37개 사업에서 2017년 55개 사업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대상이 다양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3년 37개 사업에서 2014년 54개 사업으로 1년 사이 17개 사업이 추가되었고, 2015, 2016년에 4개 사업이 줄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기타 대상 사업은 사업 수는 적지만 시도별 증감률을 보면 서울과 울산, 충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2013년 1개 사업에서 2017년 8개 사업으로 68.2% 증가함.
 - 반면, 광주와 울산, 세종, 전남에서는 기타 대상 사업 추진이 활발하지 않음.

〈표 3-7〉 시도별 기타 대상 사업 추이: 2013-2017

(단위: 개, %)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서울	3	2	-	-	-	▽100.0
부산	3	3	2	1	4	△7.5
대구	1	2	1	2	2	△18.9
인천	3	5	5	6	6	△18.9
광주	5	7	6	4	5	0.0
대전	2	2	2	2	3	△10.7
울산	1	-	1	1	1	0.0
세종	1	1	1	1	1	0.0
경기	1	1	3	2	2	△18.9
강원	4	6	8	6	5	△5.7
충북	3	5	5	3	4	△7.5
충남	4	4	3	2	3	▽6.9
전북	1	3	6	8	8	△68.2
전남	2	4	2	2	2	0.0
경북	1	2	1	1	2	△18.9
경남	1	3	3	3	2	△18.9
제주	1	4	4	5	5	△49.5
총합계	37	54	53	49	55	△10.4

주: 기타 대상에는 가족, 근로자, 다문화가족, 여성, 임산부, 전체 대상 포함

- **(복합 대상)** 장애아동, 아동·여성, 아동·성인, 노인·장애인 대상을 포함하는 복합 대상 전체 사업은 2013년 123개 사업에서 2017년 57개 사업으로 연평균 17.5% 감소함.
 - 17개 시도 중 경남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3년 5개 사업에서 2017년 12개 사업으로 24.5% 증가함.
 - 반면 세종은 복합 대상 사업이 없고 광주 2013년에서 2017년 5년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수준임.
 - 복합 대상 사업 추이는 노인, 장애인 대상 사업과 유사한 추이를 보임.

〈표 3-8〉 시도별 복합 대상 사업 추이: 2013-2017

(단위: 개, %)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서울	13	16	12	12	2	▽37.4
부산	10	10	9	1	1	▽43.8
대구	5	5	5	3	4	▽5.4
인천	2	3	1	-	1	▽15.9
광주	8	9	11	6	8	0.0
대전	4	4	3	3	2	▽15.9
울산	3	3	2	2	2	▽9.6
세종	-	-	-	-	-	-
경기	16	15	1	2	2	▽40.5
강원	7	8	7	4	4	▽13.1
충북	12	10	8	4	5	▽19.7
충남	9	14	11	3	3	▽24.0
전북	5	9	2	2	1	▽33.1
전남	8	4	4	3	1	▽40.5
경북	12	15	10	9	6	▽15.9
경남	5	7	10	9	12	△24.5
제주	4	5	4	4	3	▽6.9
총합계	123	137	100	67	57	▽17.5

주: 복합 대상에는 장애아동, 아동·여성, 아동·성인, 노인·장애인 대상 포함

□ <표 3-9>와 <표 3-10>은 2017년 기준으로 대상별 현황을 시 단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도 단위(도,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임.

○ 시 단위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이 전체 사업의 최소 15.8%(대구)~최대 66.7%(세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 성인 대상의 사업은 부산, 인천, 광주, 세종의 경우 전무함.
- 장애인 대상 사업은 인천이 5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대구가 4개 사업, 대전이 3개 사업 순으로 나타남.

<표 3-9> 2017년 대상별 사업 수 및 비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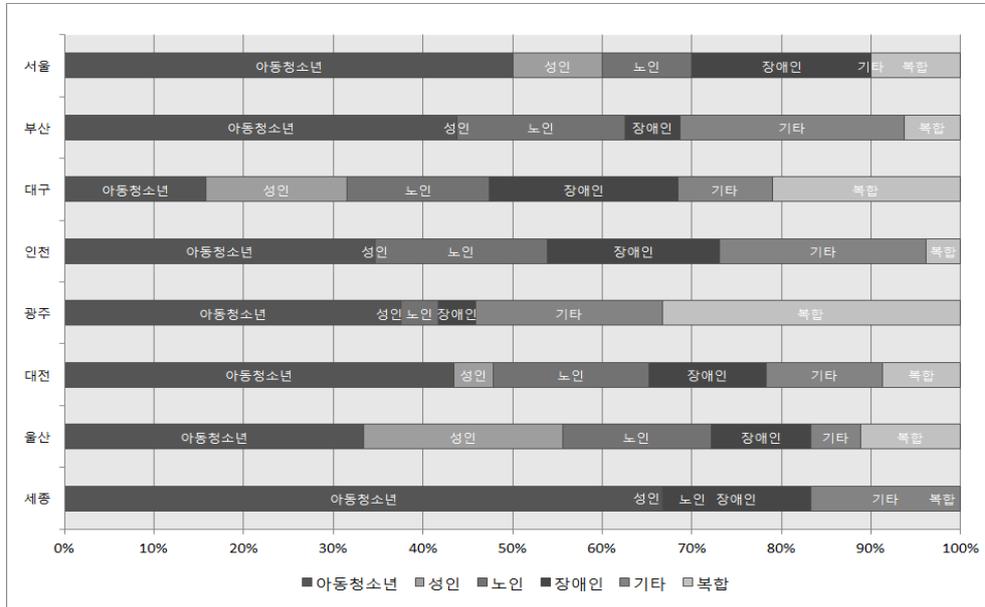
시도	구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기타 ¹⁾	복합 ²⁾	총합계
서울	사업 수(개)	10	2	2	4	-	2	20
	비율(%)	(50.0)	(10.0)	(10.0)	(20.0)	(0.0)	(10.0)	(100.0)
부산	사업 수(개)	7	-	3	1	4	1	16
	비율(%)	(43.8)	(0.0)	(18.8)	(6.3)	(25.0)	(6.3)	(100.0)
대구	사업 수(개)	3	3	3	4	2	4	19
	비율(%)	(15.8)	(15.8)	(15.8)	(21.1)	(10.5)	(21.1)	(100.0)
인천	사업 수(개)	9	-	5	5	6	1	26
	비율(%)	(34.6)	(0.0)	(19.2)	(19.2)	(23.1)	(3.8)	(100.0)
광주	사업 수(개)	9	-	1	1	5	8	24
	비율(%)	(37.5)	(0.0)	(4.2)	(4.2)	(20.8)	(33.3)	(100.0)
대전	사업 수(개)	10	1	4	3	3	2	23
	비율(%)	(43.5)	(4.3)	(17.4)	(13.0)	(13.0%)	(8.7)	(100.0)
울산	사업 수(개)	6	4	3	2	1	2	18
	비율(%)	(33.3)	(22.2)	(16.7)	(11.1)	(5.6)	(11.1)	(100.0)
세종	사업 수(개)	4	-	-	1	1	-	6
	비율(%)	(66.7)	(0.0)	(0.0)	(16.7)	(16.7)	(0.0)	(100.0)
시 단위 소계	사업 수(개)	58	10	21	21	22	20	152
	비율(%)	(38.2)	(6.6)	(13.8)	(13.8)	(14.5)	(13.2)	(100.0)

주 1) '기타'는 전체, 가족, 여성, 임산부, 근로자, 다문화, 기타 대상 포함

2) '복합'은 장애아동, 아동·여성, 아동·성인, 노인·장애인 대상 포함

[그림 3-2] 2017년 대상별 사업 비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



- 주 1) '기타'는 전체, 가족, 여성, 임산부, 근로자, 다문화, 기타 대상 포함
- 주 2) '복합'은 장애아동, 아동·여성, 아동·성인, 노인·장애인 대상 포함

○ 2017년 기준 도 단위(도, 특별자치도) 사업을 살펴보면, 시 단위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 사업의 최소 25.0%(경남)~ 최대 52.9%(제주) 비율을 차지함.
 - 경남은 복합 대상 사업이 12개(37.5%)로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8개, 25.0%)에 비해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 성인 대상의 사업은 충북, 전북, 제주의 경우 전무함.
- 노인 대상 사업은 전남이 12개, 장애인 대상 사업은 충북과 전남이 각각 6개로 사업 수가 가장 많았음.

〈표 3-10〉 2017년 대상별 사업 수 및 비율: 도, 특별자치도

(단위: 개, %)

시도	구분 ¹⁾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기타 ²⁾	복합 ³⁾	총합계
경기	사업 수(개)	8	1	4	3	2	2	20
	비율(%)	(40.0)	(5.0)	(20.0)	(15.0)	(10.0)	(10.0)	(100.0)
강원	사업 수(개)	15	2	10	1	5	4	37
	비율(%)	(40.5)	(5.4)	(27.0)	(2.7)	(13.5)	(10.8)	(100.0)
충북	사업 수(개)	16	-	6	6	4	5	37
	비율(%)	(43.2)	(0.0)	(16.2)	(16.2)	(10.8)	(13.5)	(100.0)
충남	사업 수(개)	12	1	9	2	3	3	30
	비율(%)	(40.0)	(3.3)	(30.0)	(6.7)	(10.0)	(10.0)	(100.0)
전북	사업 수(개)	11	-	6	3	8	1	29
	비율(%)	(37.9)	(0.0)	(20.7)	(10.3)	(27.6)	(3.4)	(100.0)
전남	사업 수(개)	14	1	12	6	2	1	36
	비율(%)	(38.9)	(2.8)	(33.3)	(16.7)	(5.6)	(2.8)	(100.0)
경북	사업 수(개)	14	1	9	2	2	6	35
	비율(%)	(40.0)	(2.9)	(25.7)	(5.7)	(5.7)	(17.1)	(100.0)
경남	사업 수(개)	8	2	5	3	2	12	32
	비율(%)	(25.0)	(6.3)	(15.6)	(9.4)	(6.3)	(37.5)	(100.0)
제주	사업 수(개)	9	-	-	-	5	3	17
	비율(%)	(52.9)	(0.0)	(0.0)	(0.0)	(29.4)	(17.6)	(100.0)
도 단위 소계	사업 수(개)	107	8	61	26	33	37	273
	비율(%)	(39.2)	(2.9)	(22.3)	(9.5)	(12.1)	(1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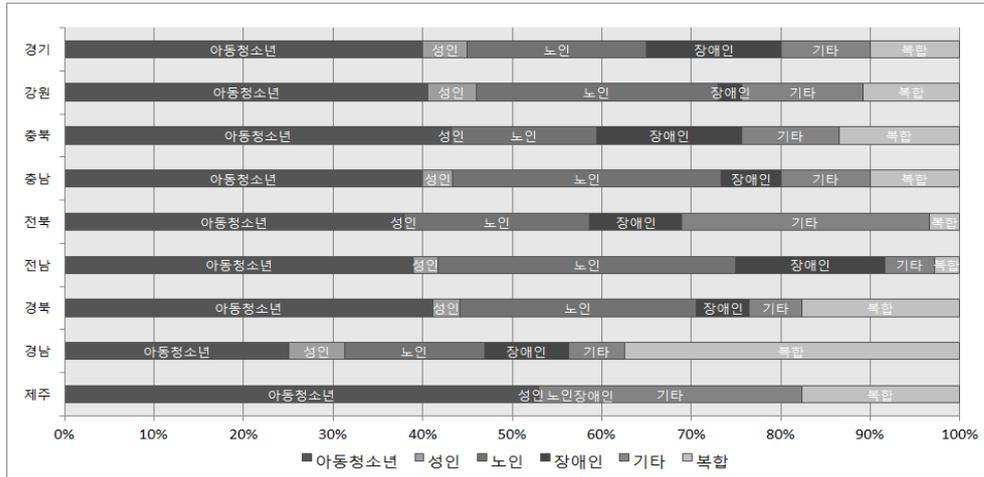
주 1) 영유아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북의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사업 1건은 시도 구분에서 제외

2) '기타'는 전체, 가족, 여성, 임산부, 근로자, 다문화, 기타 대상 포함

3) '복합'은 장애아동, 아동·여성, 아동·성인, 노인·장애인 대상 포함

[그림 3-3] 2017년 대상별 사업 비율: 도, 특별자치도

(단위: %)



주: 영유아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북의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사업 1건은 시도 구분에서 제외

2. 사업군별 제공 변화

□ <표 3-11>은 2013~2017년 5년간 사업군 분류에 따른 제공 변화를 나타냄.

○ 사업 수 비율은 연도에 따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신체건강관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아동역량개발 순으로 나타남. 5년간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군은 정신건강관리 사업임.

○ 아동재활 사업은 2013년에서 2014년 소폭 증가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 수가 감소하였으며 사업군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역량개발 사업군은 아동재활 사업과 변동 추이가 유사함.

- 반면 기타 사업은 연차별 증감폭이 큰 편이며 2013년 40개 사업에서 2017년 52개 사업으로 6.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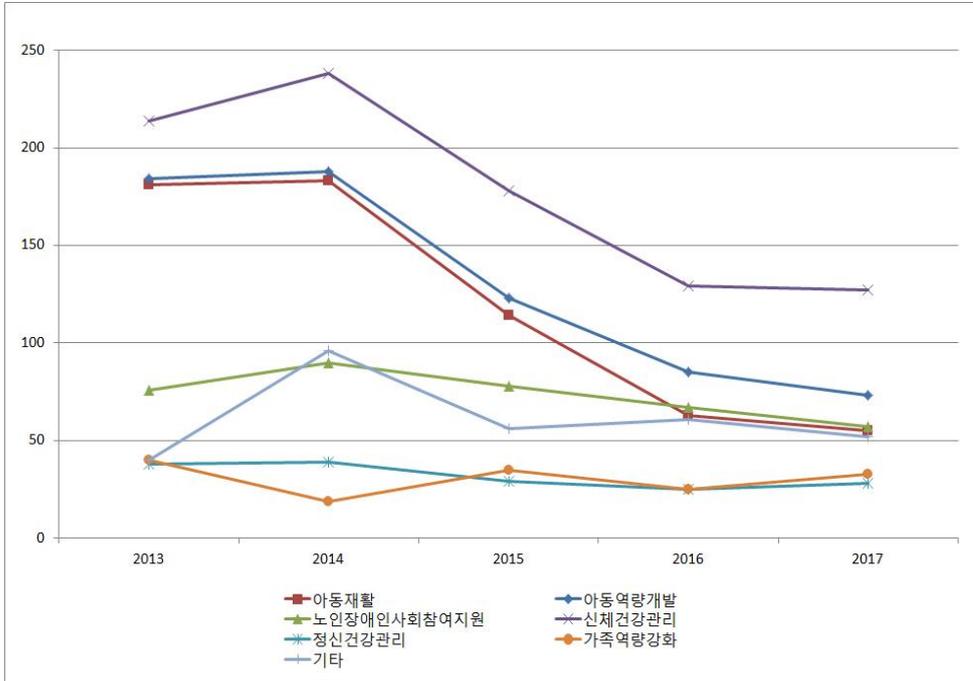
<표 3-11> 사업군별 사업 추이: 2013~2017

(단위: 개, %)

구분 ¹⁾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아동재활	사업 수(개)	181	183	114	63	55	▽25.8
	비율(%)	(23.4)	(21.5)	(18.6)	(13.8)	(12.9)	
아동역량 개발	사업 수(개)	184	188	123	85	73	▽20.6
	비율(%)	(23.8)	(22.0)	(20.1)	(18.7)	(17.2)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사업 수(개)	76	90	78	67	57	▽6.9
	비율(%)	(9.8)	(10.6)	(12.7)	(14.7)	(13.4)	
신체건강 관리	사업 수(개)	214	238	178	129	127	▽12.2
	비율(%)	(27.7)	(27.9)	(29.0)	(28.4)	(29.9)	
정신건강 관리	사업 수(개)	38	39	29	25	28	▽7.4
	비율(%)	(4.9)	(4.6)	(4.7)	(5.5)	(6.6)	
가족역량 강화	사업 수(개)	40	19	35	25	33	▽4.7
	비율(%)	(5.2)	(2.2)	(5.7)	(5.5)	(7.8)	
기타	사업 수(개)	40	96	56	61	52	△6.8
	비율(%)	(5.2)	(11.3)	(9.1)	(13.4)	(12.2)	
총합계	사업 수(개)	773	853	613	455	425	▽13.9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3-4] 사업군별 사업 추이: 2013~2017

(단위: 개)



□ <표 3-12>~<표3-18>은 2013~2017년 5년간 사업군별 사업 수의 변화를 시도별로 나타냄.

○ (아동재활 사업군) 전국적으로는 2013년 181개에서 2017년 55개 사업으로 연평균 25.8% 감소하였음.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2013년 22개 사업에서 2017년 3개 사업으로 39.2% 감소하였고, 경기 역시 2013년 18개 사업에서 2017년 3개 사업으로 36.1% 감소하여 변동폭이 큼.
- 대전, 울산, 세종, 경남은 5년간 사업 수의 변동 없음.
- 강원, 제주에서는 5년간 각각 18.9%, 10.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업 수 기준 변동폭은 크지 않음.

<표 3-12> 시도별 아동재활 사업군 추이: 2013-2017

(단위: 개, %)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서울	22	24	7	3	3	▽39.2
부산	12	11	2	2	3	▽29.3
대구	10	10	15	8	2	▽33.1
인천	6	5	2	2	3	▽15.9
광주	4	4	4	2	3	▽6.9
대전	3	3	3	3	3	0.0
울산	3	3	3	3	3	0.0
세종	2	2	2	2	2	0.0
경기	18	18	4	3	3	▽36.1
강원	1	1	1	1	2	△18.9
충북	22	19	19	3	4	▽34.7
충남	19	19	16	7	3	▽37.0
전북	23	26	6	3	4	▽35.4
전남	11	10	10	7	4	▽22.3
경북	18	20	12	6	4	▽31.3
경남	3	3	3	3	3	0.0
제주	4	5	5	5	6	△10.7
총합계	181	183	114	63	55	▽25.8

○ **(아동역량개발 사업군)** 전국적으로 2013년 184개에서 2017년 73개 사업으로 연평균 20.6% 감소하였음.

- 사업 수를 늘린 시도는 없었으며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거나 유지하는 정도에서 그침.
- 대구의 연평균 감소율은 100%로 2017년 기준 관련 사업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부산 35.2%, 전북 31.0% 순으로 감소 정도가 확인됨.
- 전남은 4개, 제주는 2개 사업으로 5년간 사업 수 변동 없음.

〈표 3-13〉 시도별 아동역량개발 사업군 추이: 2013-2017

(단위: 개, %)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서울	14	15	6	6	6	▽19.1
부산	17	16	8	3	3	▽35.2
대구	12	12	8	9	0	▽100.0
인천	6	10	8	5	6	0.0
광주	6	4	7	3	5	▽4.5
대전	9	9	7	4	4	▽18.4
울산	4	5	3	2	2	▽15.9
세종	-	-	1	1	1	-
경기	7	8	7	5	5	▽8.1
강원	22	22	16	12	12	▽14.1
충북	14	10	11	2	7	▽15.9
충남	12	12	12	11	4	▽24.0
전북	22	22	6	6	5	▽31.0
전남	4	6	5	5	4	0.0
경북	19	21	12	7	4	▽32.3
경남	13	13	3	2	3	▽30.7
제주	2	2	2	2	2	0.0
총합계	184	188	123	85	73	▽20.6

주: 2013~2015년 전국단위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은 시도별 구분에서 제외

○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군) 전국적으로 2013년 76개에서 2017년 57개 사업으로 연평균 6.9% 감소하였음.

- 인천과 경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업 수가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북과 대전에서 2013년 12개에서 2017년 4개 사업으로 연평균 감소폭 (24.0%)이 가장 컸으며, 부산,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제주 6개 시도는 증감률이 0.0%로 변동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3-14〉 시도별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군 추이: 2013-2017

(단위: 개, %)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서울	3	4	2	1	2	▽9.6
부산	1	1	1	1	1	0.0
대구	4	4	4	4	3	▽6.9
인천	2	4	3	3	3	△10.7
광주	6	7	9	4	5	▽4.5
대전	6	5	4	4	2	▽24.0
울산	4	5	4	4	4	0.0
세종	-	-	-	-	-	-
경기	1	1	1	2	1	0.0
강원	6	13	10	6	5	▽4.5
충북	5	4	5	5	5	0.0
충남	6	6	5	5	3	▽15.9
전북	6	10	8	7	6	0.0
전남	11	8	9	10	9	▽4.9
경북	12	13	9	8	4	▽24.0
경남	2	3	3	2	3	△10.7
제주	1	2	1	1	1	0.0
총합계	76	90	78	67	57	▽6.9

○ (신체건강관리 사업군) 전국적으로 2013년 214개에서 2017년 127개 사업으로 연평균 12.2% 감소하였음.

- 특히 경기에서 2013년 39개 사업에서 2017년에는 5개 사업으로 연평균 40.2%의 큰 감소폭을 보임. 다음으로 감소 정도가 큰 지역은 부산(28.5% 감소), 인천(27.4% 감소), 서울(26.9% 감소)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경남과 충남은 각각 연평균 14.2%, 4.7% 사업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5〉 시도별 신체건강관리 사업군 추이: 2013-2017

(단위: 개, %)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서울	14	16	13	13	4	▽26.9
부산	23	24	16	5	6	▽28.5
대구	10	10	11	9	7	▽8.5
인천	18	19	6	3	5	▽27.4
광주	10	10	10	5	7	▽8.5
대전	5	5	5	4	3	▽12.0
울산	4	3	4	4	3	▽6.9
세종	2	2	2	1	2	0.0
경기	39	39	7	5	5	▽40.2
강원	11	12	11	11	11	0.0
충북	19	22	20	9	13	▽9.1
충남	10	17	18	11	12	△4.7
전북	11	15	6	5	7	▽10.7
전남	11	11	11	8	9	▽4.9
경북	13	15	18	17	13	0.0
경남	10	15	16	15	17	△14.2
제주	4	3	4	4	3	▽6.9
총합계	214	238	178	129	127	▽12.2

○ (정신건강관리 사업군) 전국적으로는 2013년 38개에서 2017년 28개 사업으로 연평균 7.4% 감소하였음.

- 광주 증감률이 100.0%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전북 38.5%, 경남 29.3%, 충북 20.5% 감소함.
-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북은 사업 수 변동폭이 거의 없으며, 최소 0개 사업~최대 3개 사업 정도로 사업 수가 적어 연평균 증감률이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음.

〈표 3-16〉 시도별 정신건강관리 사업군 추이: 2013-2017

(단위: 개, %)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서울	4	2	2	1	2	▽15.9
부산	1	1	-	-	1	0.0
대구	1	1	2	2	2	△18.9
인천	2	2	3	3	3	△10.7
광주	1	1	1	-	-	▽100.0
대전	2	2	2	2	2	0.0
울산	-	-	-	1	1	-
세종	-	-	-	-	-	-
경기	3	3	2	2	3	0.0
강원	-	-	-	-	-	-
충북	5	6	5	1	2	▽20.5
충남	3	3	3	3	2	▽9.6
전북	7	9	2	2	1	▽38.5
전남	3	2	2	2	3	0.0
경북	2	2	2	2	2	0.0
경남	4	4	1	1	1	▽29.3
제주	-	1	2	3	3	-
총합계	38	39	29	25	28	▽7.4

○ (가족역량강화 사업군) 전국적으로 2013년 40개에서 2017년 33개 사업으로
연평균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강원과 전남의 경우 사업 수 감소폭이 큼. 2013년 대비 2017년 사업 수를 보면, 강원은 5개에서 0개 사업, 전남은 10개에서 3개 사업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2017년 기준 충남을 제외한 지역의 가족역량강화 사업 수는 5개 미만으로, 정신건강관리 사업군과 마찬가지로 사업 수가 적어 연평균 증감률이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음.

〈표 3-17〉 시도별 가족역량강화 사업군 추이: 2013-2017

(단위: 개, %)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률
서울	1	-	-	-	-	▽100.0
부산	2	-	1	-	2	0.0
대구	1	-	1	1	2	△18.9
인천	-	-	1	-	1	-
광주	4	-	4	3	4	0.0
대전	1	1	1	1	2	△18.9
울산	4	2	4	3	4	0.0
세종	-	-	-	-	-	-
경기	-	-	1	-	-	-
강원	5	1	1	1	-	▽100.0
충북	2	1	2	1	1	▽15.9
충남	5	4	4	4	6	△4.7
전북	-	-	1	2	2	-
전남	10	7	8	5	3	▽26.0
경북	3	2	3	2	4	△7.5
경남	1	1	1	-	-	▽100.0
제주	1	-	2	2	2	△18.9
총합계	40	19	35	25	33	▽4.7

- (기타 사업군) 전국적으로는 2013년 40개에서 2017년 52개 사업으로 연평균 6.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군 분류 중 유일하게 증가한 사업군임.
- 전북은 2013년 1개에서 2017년 4개 사업으로 연평균 증감률이 41.4%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사업 수 감소 추세를 보이는 지역은 서울, 대전으로, 서울은 2013년 5개에서 2017년 3개 사업으로 연평균 12.0% 감소하였으며 대전은 2013년 10개에서 2017년 7개 사업으로 연평균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세종, 경기도는 사업 수 변동이 없었으며, 광주, 충남, 부산, 제주는 2017년 기준 기타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없음.

〈표 3-18〉 시도별 기타 사업군 추이: 2013-2017

(단위: 개, %)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률
서울	5	8	4	3	3	▽12.0
부산	1	5	2	2	-	▽100.0
대구	2	3	3	4	3	△10.7
인천	3	5	4	6	5	△13.6
광주	1	8	1	-	-	▽100.0
대전	10	12	8	8	7	▽8.5
울산	-	1	-	1	1	-
세종	1	1	1	1	1	0.0
경기	3	3	3	3	3	0.0
강원	3	10	9	8	7	△23.6
충북	2	12	4	4	5	△25.7
충남	-	3	-	-	-	-
전북	1	4	5	6	4	△41.4
전남	3	7	7	6	4	△7.5
경북	2	4	1	3	4	△18.9
경남	3	7	4	6	5	△13.6
제주	-	3	-	-	-	-
총합계	40	96	56	61	52	6.8

□ <표 3-19>와 <표 3-20>은 단년도(2017년) 기준으로 사업군별 현황을 시 단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도 단위(도,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임.

○ 시 단위에서는 신체건강관리 사업군이 37개(2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동역량개발 사업군이 27개(17.8%),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과 기타 사업군이 20개(13.2%)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은 3개 사업군(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정신건강관리, 가족역량강화)에 사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서울은 가족역량강화 사업군, 부산은 기타사업군, 광주는 정신건강관리 사업군과 기타 사업군의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9> 2017년 사업군별 사업 수 및 비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개, %)

시도	구분	아동 재활	아동역량 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신체건강 관리	정신건강 관리	가족역량 강화	기타	총합계
서울	사업 수(개)	3	6	2	4	2	-	3	20
	비율(%)	(15.0)	(30.0)	(10.0)	(20.0)	(10.0)	(0.0)	(15.0)	(100.0)
부산	사업 수(개)	3	3	1	6	1	2	-	16
	비율(%)	(18.8)	(18.8)	(6.3)	(37.5)	(6.3)	(12.5)	(0.0)	(100.0)
대구	사업 수(개)	2	-	3	7	2	2	3	19
	비율(%)	(10.5)	(0.0)	(15.8)	(36.8)	(10.5)	(10.5)	(15.8)	(100.0)
인천	사업 수(개)	3	6	3	5	3	1	5	26
	비율(%)	(11.5)	(23.1)	(11.5)	(19.2)	(11.5)	(3.8)	(19.2)	(100.0)
광주	사업 수(개)	3	5	5	7	-	4	-	24
	비율(%)	(12.5)	(20.8)	(20.8)	(29.2)	(0.0)	(16.7)	(0.0)	(100.0)
대전	사업 수(개)	3	4	2	3	2	2	7	23
	비율(%)	(13.0)	(17.4)	(8.7)	(13.0)	(8.7)	(8.7)	(30.4)	(100.0)
울산	사업 수(개)	3	2	4	3	1	4	1	18
	비율(%)	(16.7)	(11.1)	(22.2)	(16.7)	(5.6)	(22.2)	(5.6)	(100.0)
세종	사업 수(개)	2	1	-	2	-	-	1	6
	비율(%)	(33.3)	(16.7)	(0.0)	(33.3)	(0.0)	(0.0)	(16.7)	(100.0)
시 단위 소계	사업 수(개)	22	27	20	37	11	15	20	152
	비율(%)	(14.5)	(17.8)	(13.2)	(24.3)	(7.2)	(9.9)	(13.2)	(100.0)

○ 도 단위 분석결과, 시 단위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신체건강관리 사업군이 90개 사업(3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
역량개발 사업군 46개(16.8%),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군 37개
(13.6%), 아동재활 사업군 33개(12.1%), 기타 사업군 32개(11.7%) 순으
로 나타남.
- 경기, 강원, 경남의 가족역량강화 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며, 강원의 정신건
장관리 사업군 역시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3-20〉 2017년 사업군별 사업 수 및 비율: 도, 특별자치도

(단위: 개, %)

시도	구분	아동 재활	아동역량 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신체건강 관리	정신건강 관리	가족역량 강화	기타	총합계
경기	사업 수(개)	3	5	1	5	3	-	3	20
	비율(%)	(15.0)	(25.0)	(5.0)	(25.0)	(15.0)	(0.0)	(15.0)	(100.0)
강원	사업 수(개)	2	12	5	11	-	-	7	37
	비율(%)	(5.4)	(32.4)	(13.5)	(29.7)	(0.0)	(0.0)	(18.9)	(100.0)
충북	사업 수(개)	4	7	5	13	2	1	5	37
	비율(%)	(10.8)	(18.9)	(13.5)	(35.1)	(5.4)	(2.7)	(13.5)	(100.0)
충남	사업 수(개)	3	4	3	12	2	6	-	30
	비율(%)	(10.0)	(13.3)	(10.0)	(40.0)	(6.7)	(20.0)	(0.0)	(100.0)
전북	사업 수(개)	4	5	6	7	1	2	4	29
	비율(%)	(13.8)	(17.2)	(20.7)	(24.1)	(3.4)	(6.9)	(13.8)	(100.0)
전남	사업 수(개)	4	4	9	9	3	3	4	36
	비율(%)	(11.1)	(11.1)	(25.0)	(25.0)	(8.3)	(8.3)	(11.1)	(100.0)
경북	사업 수(개)	4	4	4	13	2	4	4	35
	비율(%)	(11.4)	(11.4)	(11.4)	(37.1)	(5.7)	(11.4)	(11.4)	(100.0)
경남	사업 수(개)	3	3	3	17	1	-	5	32
	비율(%)	(9.4)	(9.4)	(9.4)	(53.1)	(3.1)	(0.0)	(15.6)	(100.0)
제주	사업 수(개)	6	2	1	3	3	2	-	17
	비율(%)	(35.3)	(11.8)	(5.9)	(17.6)	(17.6)	(11.8)	(0.0)	(100.0)
도 단위 소계	사업 수(개)	33	46	37	90	17	18	32	273
	비율(%)	(12.1)	(16.8)	(13.6)	(33.0)	(6.2)	(6.6)	(11.7)	(100.0)

3. 사업유형별 제공 변화

□ [그림 3-5]는 사업유형(표준모델, 비표준(자체개발모델))에 따른 연도별 제공 추이를 제시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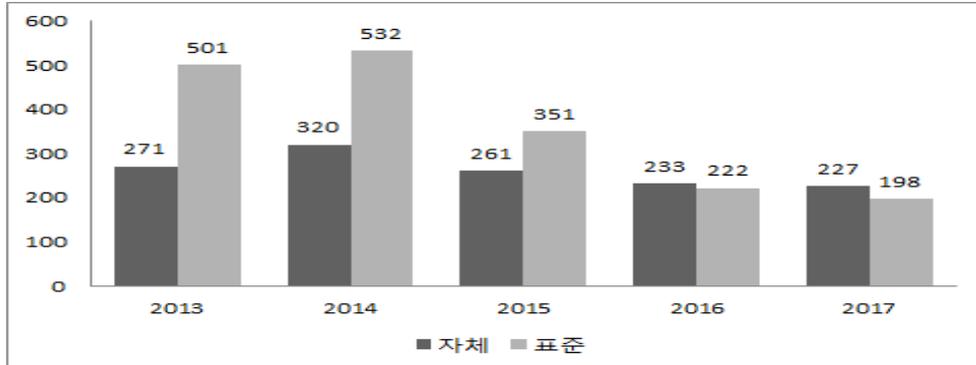
○ 표준모델 사업은 2013년 501개에서 2017년 198개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자체개발모델 사업은 2013년 271개에서 2017년 227개로 표준모델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하였음.

- 2014년 532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표준모델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부터 표준모델보다 자체개발모델 사업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을 기점으로 표준모델 사업 수가 급감한 것은 당시 진행된 사업코드 통합의 대상 사업이 표준모델 사업인 것에 기인할 수 있음. 또한 표준모델 사업 중 하나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림 3-5] 표준모델 vs 자체개발모델 사업 수: 2013~2017

(단위: 개)



○ 시도별로 살펴보면, 자체개발모델 사업 비율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임.

- 시 단위의 경우, 2013년~2016년은 표준모델의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역전되어 2017년부터는 자체개발모델이 55.9%, 표준모델이 44.1%로 자체개발모델의 비율이 높음(<표 3-21> 참조).

- 도 단위의 경우, 2013년~2015년은 표준모델 비율이 높았으나 2016년부터 자체개발모델 53.4%, 표준모델 46.6%로 자체개발모델의 비율이 높음 (<표 3-22> 참조).

<표 3-21> 시도별 자체개발모델·표준모델 사업 수 및 비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개,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체개발모델	표준모델	소계												
서울	14 (22.2)	49 (77.8)	63 (100.0)	17 (24.6)	52 (75.4)	69 (100.0)	9 (26.5)	25 (73.5)	34 (100.0)	8 (29.6)	19 (70.4)	27 (100.0)	9 (45.0)	11 (55.0)	20 (100.0)
부산	21 (36.8)	36 (63.2)	57 (100.0)	22 (37.9)	36 (62.1)	58 (100.0)	12 (40.0)	18 (60.0)	30 (100.0)	6 (46.2)	7 (53.8)	13 (100.0)	7 (43.8)	9 (56.3)	16 (100.0)
대구	9 (22.5)	31 (77.5)	40 (100.0)	9 (22.5)	31 (77.5)	40 (100.0)	8 (18.2)	36 (81.8)	44 (100.0)	10 (27.0)	27 (73.0)	37 (100.0)	10 (52.6)	9 (47.4)	19 (100.0)
인천	19 (51.4)	18 (48.6)	37 (100.0)	27 (60.0)	18 (40.0)	45 (100.0)	16 (59.3)	11 (40.7)	27 (100.0)	16 (72.7)	6 (27.3)	22 (100.0)	16 (61.5)	10 (38.5)	26 (100.0)
광주	18 (56.3)	14 (43.8)	32 (100.0)	20 (58.8)	14 (41.2)	34 (100.0)	22 (61.1)	14 (38.9)	36 (100.0)	11 (64.7)	6 (35.3)	17 (100.0)	15 (62.5)	9 (37.5)	24 (100.0)
대전	24 (66.7)	12 (33.3)	36 (100.0)	24 (64.9)	13 (35.1)	37 (100.0)	18 (60.0)	12 (40.0)	30 (100.0)	16 (61.5)	10 (38.5)	26 (100.0)	15 (65.2)	8 (34.8)	23 (100.0)
울산	9 (47.4)	10 (52.6)	19 (100.0)	9 (47.4)	10 (52.6)	19 (100.0)	9 (50.0)	9 (50.0)	18 (100.0)	10 (55.6)	8 (44.4)	18 (100.0)	11 (61.1)	7 (38.9)	18 (100.0)
세종	1 (20.0)	4 (80.0)	5 (100.0)	1 (20.0)	4 (80.0)	5 (100.0)	1 (16.7)	5 (83.3)	6 (100.0)	1 (20.0)	4 (80.0)	5 (100.0)	2 (33.3)	4 (66.7)	6 (100.0)
시 단위 합계	115 (39.8)	174 (60.2)	289 (100.0)	129 (42.0)	178 (58.0)	307 (100.0)	95 (42.2)	130 (57.8)	225 (100.0)	78 (47.3)	87 (52.7)	165 (100.0)	85 (55.9)	67 (44.1)	152 (100.0)
총합계	271 (35.1)	501 (64.9)	772 (100.0)	320 (37.6)	532 (62.4)	852 (100.0)	261 (42.6)	351 (57.4)	612 (100.0)	233 (51.2)	222 (48.8)	455 (100.0)	227 (53.4)	198 (46.6)	425 (100.0)

주: 1) 2013~2015년 전국단위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은 제외
 2) 보건복지부의 지투자사업 안내(2013~2017)에 따른 표준모델 외 사업(자체개발모델)과 표준모델을 기준 정보에 사업명 기준으로 분류함(<표 2-2> 참고).

〈표 3-22〉 시도별 자체개발모델·표준모델 사업 수 및 비율: 도, 특별자치도

(단위: 개,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체개발모델	표준모델	소계												
경기	9 (12.7)	62 (87.3)	71 (100.0)	11 (15.3)	61 (84.7)	72 (100.0)	11 (44.0)	14 (56.0)	25 (100.0)	8 (40.0)	12 (60.0)	20 (100.0)	7 (35.0)	13 (65.0)	20 (100.0)
강원	21 (43.8)	27 (56.3)	48 (100.0)	30 (50.8)	29 (49.2)	59 (100.0)	26 (54.2)	22 (45.8)	48 (100.0)	23 (59.0)	16 (41.0)	39 (100.0)	16 (43.2)	21 (56.8)	37 (100.0)
충북	17 (24.6)	52 (75.4)	69 (100.0)	22 (29.7)	52 (70.3)	74 (100.0)	17 (25.8)	49 (74.2)	66 (100.0)	13 (52.0)	12 (48.0)	25 (100.0)	21 (56.8)	16 (43.2)	37 (100.0)
충남	18 (32.7)	37 (67.3)	55 (100.0)	18 (28.1)	46 (71.9)	64 (100.0)	18 (31.0)	40 (69.0)	58 (100.0)	19 (46.3)	22 (53.7)	41 (100.0)	18 (60.0)	12 (40.0)	30 (100.0)
전북	24 (34.3)	46 (65.7)	70 (100.0)	31 (36.0)	55 (64.0)	86 (100.0)	19 (55.9)	15 (44.1)	34 (100.0)	22 (71.0)	9 (29.0)	31 (100.0)	20 (69.0)	9 (31.0)	29 (100.0)
전남	30 (56.6)	23 (43.4)	53 (100.0)	32 (62.7)	19 (37.3)	51 (100.0)	33 (63.5)	19 (36.5)	52 (100.0)	28 (65.1)	15 (34.9)	43 (100.0)	21 (58.3)	15 (41.7)	36 (100.0)
경북	21 (30.4)	48 (69.6)	69 (100.0)	24 (31.2)	53 (68.8)	77 (100.0)	23 (40.4)	34 (59.6)	57 (100.0)	20 (44.4)	25 (55.6)	45 (100.0)	19 (54.3)	16 (45.7)	35 (100.0)
경남	11 (30.6)	25 (69.4)	36 (100.0)	14 (30.4)	32 (69.6)	46 (100.0)	10 (32.3)	21 (67.7)	31 (100.0)	12 (41.4)	17 (58.6)	29 (100.0)	11 (34.4)	21 (65.6)	32 (100.0)
제주	5 (41.7)	7 (58.3)	12 (100.0)	9 (56.3)	7 (43.8)	16 (100.0)	9 (56.3)	7 (43.8)	16 (100.0)	10 (58.8)	7 (41.2)	17 (100.0)	9 (52.9)	8 (47.1)	17 (100.0)
도 단위 합계	156 (32.3)	327 (67.7)	483 (100.0)	191 (35.0)	354 (65.0)	545 (100.0)	166 (42.9)	221 (57.1)	387 (100.0)	155 (53.4)	135 (46.6)	290 (100.0)	142 (52.0)	131 (48.0)	273 (100.0)
총합계	271 (35.1)	501 (64.9)	772 (100.0)	320 (37.6)	532 (62.4)	852 (100.0)	261 (42.6)	351 (57.4)	612 (100.0)	233 (51.2)	222 (48.8)	455 (100.0)	227 (53.4)	198 (46.6)	4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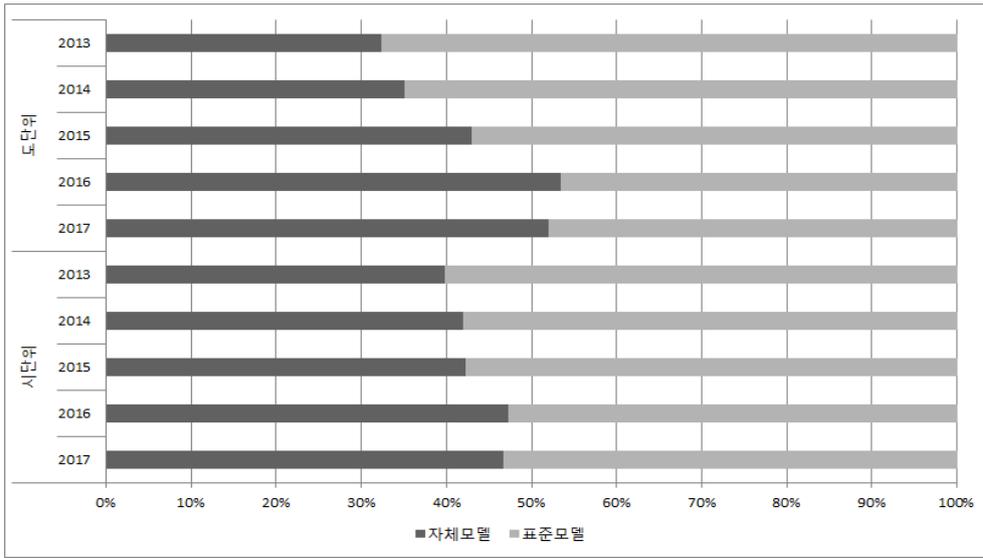
주: 1) 2013~2015년 전국단위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은 제외

2) 보건복지부의 지투자사업 안내(2013~2017)에 따른 표준모델 외 사업(자체개발모델)과 표준모델을 기준 정보에 사업명 기준으로 분류함(〈표 2-2〉 참고).

- 표준모델 사업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 경남, 경기(60% 이상), 낮은 지역은 전북, 대전(35% 이하)로 지역별 사업유형에 따른 제공 편차가 확인됨.

[그림 3-6] 시도 단위 표준모델 vs 자체개발모델 사업 추이: 2013~2017

(단위: 개)



4. 서비스 제공범위에 따른 제공 변화

- 서비스 제공범위에 따른 사업 수 변화를 살펴보면, 시군구 사업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시군구 공동 사업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시도 사업은 2013년 174개에서 2017년 128개로 감소함.
 - 시군구 사업은 2013년 572개 사업에서 2014년 598개로 소폭 증가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에는 148개 사업이 해당됨.
 - 시군구 공동 사업은 2013년 26개, 2014년 47개에서 2015년에는 113개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6년 소폭 감소하다가 2017년 124개로 증가함.
 - 전국표준형 사업은 2013년~2014년에는 전국단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건의 사업이 해당되었으나, 2015년부터 점차 확대되어 2017년 25개 사업이 전국표준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_전국표준 사업이 이에 해당됨.

□ 시도 단위로 살펴보면, 시 단위는 시도 사업, 도 단위는 시군구 사업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표 3-23〉 시도별 서비스 제공범위별 사업 수 및 비율: 2013~2017: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개,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도	시군구	시군구 공동	소계	시도	시군구	시군구 공동	소계	시도	시군구	시군구 공동	전국 표준	소계	시도	시군구	시군구 공동	전국 표준	소계	시도	시군구	시군구 공동	전국 표준	소계
서울	9 (14.3)	53 (84.1)	1 (1.6)	63 (100.0)	13 (18.8)	55 (79.7)	1 (1.4)	69 (100.0)	-	22 (64.7)	11 (32.4)	1 (2.9)	34 (100.0)	-	16 (59.3)	10 (37.0)	1 (3.7)	27 (100.0)	-	7 (35.0)	12 (60.0)	1 (5.0)	20 (100.0)
부산	15 (26.3)	38 (66.7)	4 (7.0)	57 (100.0)	16 (27.6)	38 (65.5)	4 (6.9)	58 (100.0)	16 (53.3)	11 (36.7)	2 (6.7)	1 (3.3)	30 (100.0)	12 (92.3)	-	-	1 (7.7)	13 (100.0)	11 (68.8)	2 (12.5)	1 (6.3)	2 (12.5)	16 (100.0)
대구	5 (12.5)	34 (85.0)	1 (2.5)	40 (100.0)	5 (12.5)	34 (85.0)	1 (2.5)	40 (100.0)	8 (18.2)	32 (72.7)	3 (6.8)	1 (2.3)	44 (100.0)	11 (29.7)	22 (59.5)	2 (5.4)	2 (5.4)	37 (100.0)	11 (57.9)	4 (21.1)	3 (15.8)	1 (5.3)	19 (100.0)
인천	15 (40.5)	21 (56.8)	1 (2.7)	37 (100.0)	20 (44.4)	22 (48.9)	3 (6.7)	45 (100.0)	1 (3.7)	6 (22.2)	19 (70.4)	1 (3.7)	27 (100.0)	3 (13.6)	4 (18.2)	14 (63.6)	1 (4.5)	22 (100.0)	3 (11.5)	5 (19.2)	16 (61.5)	2 (7.7)	26 (100.0)
광주	18 (56.3)	10 (31.3)	4 (12.5)	32 (100.0)	20 (58.8)	10 (29.4)	4 (11.8)	34 (100.0)	23 (63.9)	9 (25.0)	3 (8.3)	1 (2.8)	36 (100.0)	10 (58.8)	2 (11.8)	4 (23.5)	1 (5.9)	17 (100.0)	16 (66.7)	1 (4.2)	5 (20.8)	2 (8.3)	24 (100.0)
대전	34 (94.4)	2 (5.6)	-	36 (100.0)	35 (94.6)	2 (5.4)	-	37 (100.0)	28 (93.3)	1 (3.3)	-	1 (3.3)	30 (100.0)	24 (92.3)	1 (3.8)	-	1 (3.8)	26 (100.0)	22 (95.7)	-	-	1 (4.3)	23 (100.0)
울산	16 (84.2)	3 (15.8)	-	19 (100.0)	17 (89.5)	2 (10.5)	-	19 (100.0)	15 (83.3)	2 (11.1)	-	1 (5.6)	18 (100.0)	15 (83.3)	1 (5.6)	-	2 (11.1)	18 (100.0)	15 (83.3)	-	-	3 (16.7)	18 (100.0)
세종	5 (100.0)	-	-	5 (100.0)	5 (100.0)	-	-	5 (100.0)	5 (83.3)	-	-	1 (16.7)	6 (100.0)	1 (20.0)	3 (60.0)	-	1 (20.0)	5 (100.0)	5 (83.3)	-	-	1 (16.7)	6 (100.0)
시합계	117 (40.5)	161 (55.7)	11 (3.8)	289 (100.0)	131 (42.7)	163 (53.1)	13 (4.2)	307 (100.0)	96 (42.7)	83 (36.9)	38 (16.9)	8 (3.6)	225 (100.0)	76 (46.1)	49 (29.7)	30 (18.2)	10 (6.1)	165 (100.0)	83 (54.6)	19 (12.5)	37 (24.3)	13 (8.6)	152 (100.0)
총합계	174 (22.5)	572 (74.1)	26 (3.4)	772 (100.0)	207 (24.3)	598 (70.2)	47 (5.5)	852 (100.0)	146 (23.9)	337 (55.1)	113 (18.5)	16 (2.6)	612 (100.0)	119 (26.2)	219 (48.1)	95 (20.9)	22 (4.8)	455 (100.0)	128 (30.1)	148 (34.8)	124 (29.2)	25 (5.9)	425 (100.0)

주: 2013~2015년 전국단위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은 제외

〈표 3-24〉 시도별 서비스 제공범위별 사업 수 및 비율: 2013~2017: 도, 특별자치도

(단위: 개,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도	시군구	시군구 공동	소계	시도	시군구	시군구 공동	소계	시도	시군구	시군구 공동	전국 표준	소계	시도	시군구	시군구 공동	전국 표준	소계	시도	시군구	시군구 공동	전국 표준	소계
경기	11 (15.5)	53 (74.6)	7 (9.9)	71 (100.0)	11 (15.3)	53 (73.6)	8 (11.1)	72 (100.0)	6 (24.0)	5 (20.0)	13 (52.0)	1 (4.0)	25 (100.0)	2 (10.0)	3 (15.0)	14 (70.0)	1 (5.0)	20 (100.0)	1 (5.0)	3 (15.0)	15 (75.0)	1 (5.0)	20 (100.0)
강원	3 (6.3)	44 (91.7)	1 (2.1)	48 (100.0)	2 (3.4)	56 (94.9)	1 (1.7)	59 (100.0)	4 (8.3)	42 (87.5)	1 (2.1)	1 (2.1)	48 (100.0)	6 (15.4)	31 (79.5)	1 (2.6)	1 (2.6)	39 (100.0)	5 (13.5)	29 (78.4)	1 (2.7)	2 (5.4)	37 (100.0)
충북	3 (4.3)	66 (95.7)	-	69 (100.0)	14 (18.9)	59 (79.7)	1 (1.4)	74 (100.0)	11 (16.7)	49 (74.2)	5 (7.6)	1 (1.5)	66 (100.0)	10 (40.0)	12 (48.0)	1 (4.0)	2 (8.0)	25 (100.0)	14 (37.8)	18 (48.6)	3 (8.1)	2 (5.4)	37 (100.0)
충남	3 (5.5)	49 (89.1)	3 (5.5)	55 (100.0)	3 (4.7)	58 (90.6)	3 (4.7)	64 (100.0)	-	51 (87.9)	6 (10.3)	1 (1.7)	58 (100.0)	-	35 (85.4)	4 (9.8)	2 (4.9)	41 (100.0)	-	18 (60.0)	11 (36.7)	1 (3.3)	30 (100.0)
전북	3 (4.3)	67 (95.7)	-	70 (100.0)	3 (3.5)	71 (82.6)	12 (14.0)	86 (100.0)	3 (8.8)	14 (41.2)	16 (47.1)	1 (2.9)	34 (100.0)	1 (3.2)	16 (51.6)	13 (41.9)	1 (3.2)	31 (100.0)	1 (3.4)	11 (37.9)	16 (55.2)	1 (3.4)	29 (100.0)
전남	19 (35.8)	30 (56.6)	4 (7.5)	53 (100.0)	18 (35.3)	27 (52.9)	6 (11.8)	51 (100.0)	2 (3.8)	25 (48.1)	24 (46.2)	1 (1.9)	52 (100.0)	1 (2.3)	22 (51.2)	18 (41.9)	2 (4.7)	43 (100.0)	2 (5.6)	9 (25.0)	24 (66.7)	1 (2.8)	36 (100.0)
경북	-	69 (100.0)	-	69 (100.0)	-	74 (96.1)	3 (3.9)	77 (100.0)	-	48 (84.2)	8 (14.0)	1 (1.8)	57 (100.0)	-	33 (73.3)	10 (22.2)	2 (4.4)	45 (100.0)	-	20 (57.1)	13 (37.1)	2 (5.7)	35 (100.0)
경남	3 (8.3)	33 (91.7)	-	36 (100.0)	9 (19.6)	37 (80.4)	-	46 (100.0)	8 (25.8)	20 (64.5)	2 (6.5)	1 (3.2)	31 (100.0)	6 (20.7)	18 (62.1)	4 (13.8)	1 (3.4)	29 (100.0)	5 (15.6)	21 (65.6)	4 (12.5)	2 (6.3)	32 (100.0)
제주	12 (100.0)	-	-	12 (100.0)	16 (100.0)	-	-	16 (100.0)	16 (100.0)	-	-	-	16 (100.0)	17 (100.0)	-	-	-	17 (100.0)	17 (100.0)	-	-	-	17 (100.0)
도합계	57 (11.8)	411 (85.1)	15 (3.1)	483 (100.0)	76 (13.9)	435 (79.8)	34 (6.2)	545 (100.0)	50 (12.9)	254 (65.6)	75 (19.4)	8 (2.1)	387 (100.0)	43 (14.8)	170 (58.6)	65 (22.4)	12 (4.1)	290 (100.0)	45 (16.5)	129 (47.3)	87 (31.9)	12 (4.4)	273 (100.0)
총합계	174 (22.5)	572 (74.1)	26 (3.4)	772 (100.0)	207 (24.3)	598 (70.2)	47 (5.5)	852 (100.0)	146 (23.9)	337 (55.1)	113 (18.5)	16 (2.6)	612 (100.0)	119 (26.2)	219 (48.1)	95 (20.9)	22 (4.8)	455 (100.0)	128 (30.1)	148 (34.8)	124 (29.2)	25 (5.9)	425 (100.0)

주: 2013~2015년 전국단위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은 제외

제 4 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별 이용 변화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대상별 이용 변화 분석

제3절 사업유형별 이용 변화 분석

제4절 대상별, 사업유형별 결재금액 변화 분석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시도별 이용 변화 분석 <

제1절 분석 개요

□ 본 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적재되어 있는 2013~2017년 바우처 이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17개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이용 실태 변화를 분석하였음.

□ 구체적인 분석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상별 지투서비스 이용 변화 분석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총 5년간 지투서비스 이용 인구를 지역별(시·도 단위), 연도별로 나누어 확인하였으며, 이를 각 지역의 전체인구와 비교하여 지투사업의 이용 비율을 확인함.
- 지투사업의 이용인구를 대상별(영유아·아동·청소년·성인·노인·장애인)로 구분하여 해당지역 전체인구와 비교함.
- 대상별 인구구성비율과 지투 인구구성비율 차이를 비교하여, 지투사업 설계가 인구집단별 잠재적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함.
- 본 분석에서 사용된 연령대의 인구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년도 12월 기준,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는 국가통계포털의 등록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함.

○ 둘째, 사업유형별 지투서비스 이용 변화 분석

- 사업유형을 표준모델 사업과 기타사업(자체개발모델 사업)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서비스 이용 비율 변화를 분석함.

○ 셋째,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변화 분석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투 서비스 결제금액 변화를 대상별, 사업유형별로 분석하여 서비스 급여량의 차이를 살펴봄.

□ 분석에 활용된 바우처 결제정보 데이터 변수는 <표 4-1> 과 같음.

<표 4-1>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바우처 결제정보) 데이터 활용 변수

변수명	변수 정의	비고
대상자 ID	입력값	
사업연도	2013~2017년	
성별	남/여	
연령	사업연도 기준 만 나이	연령에 따른 대상 구분(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사업유형코드	서비스 유형별로 상이	
사업유형명	기준정보 등록 사업명	
표준모델구분	지침 표준모델 기준(연도별 상이)	<표 2-2> 의 표준모델 참고
시도구분	대상자 소재지 기준 (바우처 생성 소재지)	
시군구구분		
바우처 결제건수	사업연도 내 바우처 총 결제건수	
바우처 결제금액	사업연도 내 사업유형별 바우처 총 결제금액(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제2절 대상별 이용 변화 분석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체 이용인구 분석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이용인구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였음.

□ <표 4-2>와 <표 4-3>은 시도별 인구, 지투사업 이용인구 및 이용 비율을 나타낸 결과로, 전국적으로 지투사업 이용자 규모는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으로 매우 낮음.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 지역 지투사업의 이용인구 및 비율은 <표 4-2> 와 같음.
 - 2013년에 484,387명이 이용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한 해였으며, 2015년에는 254,522명이 이용하여 가장 적은 인원이 지투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인구 대비 지투사업의 이용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이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주, 대구, 부산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나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서울은 이용인구의 숫자는 높게 나타나나 이용 비율은 시 단위 지역들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서울의 많은 인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표 4-3> 는 도 단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여 총 인구대비 지투사업 이용 인구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냄.
 - 전반적으로 시 단위 지역에 비하여 도 단위 지역이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높음.
 - 제주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은 5년간 꾸준히 가장 높으며, 전북, 전남도 비교적 높은 편이나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경기도는 많은 이용인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경북은 5년간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6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방안 연구

〈표 4-2〉 총인구 및 지투자사업 이용인구 비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명,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서울	10,143,645	46,380	0.45	10,103,233	40,135	0.40	10,022,181	14,944	0.15	9,930,616	16,723	0.17	9,857,426	13,919	0.14
부산	3,527,635	34,760	0.99	3,519,401	32,775	0.93	3,513,777	28,791	0.82	3,498,529	32,599	0.93	3,470,653	32,526	0.94
대구	2,501,588	31,086	1.24	2,493,264	23,562	0.95	2,487,829	15,846	0.64	2,484,557	18,818	0.76	2,475,231	10,711	0.43
인천	2,879,782	26,766	0.93	2,902,608	20,965	0.72	2,925,815	15,229	0.52	2,943,069	23,414	0.80	2,948,542	21,865	0.74
광주	1,472,910	24,532	1.67	1,475,884	19,011	1.29	1,472,199	11,740	0.80	1,469,214	14,002	0.95	1,463,770	10,711	0.73
대전	1,532,811	33,103	2.16	1,531,809	24,528	1.60	1,518,775	19,337	1.27	1,514,370	21,272	1.40	1,502,227	18,651	1.24
울산	1,156,480	12,388	1.07	1,166,377	9,451	0.81	1,173,534	6,452	0.55	1,172,304	8,609	0.73	1,165,132	6,458	0.55
세종	122,153	1,360	1.11	156,125	1,413	0.91	210,884	622	0.29	243,048	729	0.30	280,100	841	0.30
시 단위 소계	23,337,004	210,375	1.20	23,348,701	171,840	0.95	23,324,994	112,961	0.63	23,255,707	136,166	0.76	23,163,081	115,682	0.63
총계	51,141,463	484,387	1.24	51,327,916	384,566	1.00	51,529,338	254,522	0.68	51,696,216	307,914	0.81	51,778,544	273,661	0.71

〈표 4-3〉 총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 도, 특별자치도

(단위: 명,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경기	12,234,630	76,151	0.62	12,357,830	56,189	0.45	12,522,606	35,142	0.28	12,716,780	45,149	0.36	12,873,895	44,627	0.35
강원	1,542,263	21,197	1.37	1,544,442	16,097	1.04	1,549,507	10,829	0.70	1,550,806	12,946	0.83	1,550,142	10,400	0.67
충북	1,572,732	19,982	1.27	1,578,933	11,728	0.74	1,583,952	9,263	0.58	1,591,625	12,467	0.78	1,594,432	11,536	0.72
충남	2,047,631	24,104	1.18	2,062,273	21,344	1.03	2,077,649	12,057	0.58	2,096,727	14,615	0.70	2,116,770	13,449	0.64
전북	1,872,965	26,112	1.39	1,871,560	22,408	1.20	1,869,711	14,541	0.78	1,864,791	20,136	1.08	1,854,607	20,261	1.09
전남	1,907,172	26,246	1.38	1,905,780	24,419	1.28	1,908,996	17,860	0.94	1,903,914	19,697	1.03	1,896,424	18,874	1.00
경북	2,699,440	38,173	1.41	2,700,794	27,655	1.02	2,702,826	16,166	0.60	2,700,398	18,990	0.70	2,691,706	15,338	0.57
경남	3,333,820	29,809	0.89	3,350,257	20,492	0.61	3,364,702	15,112	0.45	3,373,871	16,611	0.49	3,380,404	11,962	0.35
제주	593,806	12,238	2.06	607,346	12,394	2.04	624,395	10,591	1.70	641,597	11,137	1.74	657,083	11,532	1.76
도 단위 소계	27,804,459	274,012	1.29	27,979,215	212,726	1.05	28,204,344	141,561	0.73	28,440,509	171,748	0.86	28,615,463	157,979	0.79
총계	51,141,463	484,387	1.24	51,327,916	384,566	1.00	51,529,338	254,522	0.68	51,696,216	307,914	0.81	51,778,544	273,661	0.71

2. 대상별 인구대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인구 비율

□ 지투사업의 이용인원을 대상별로 나누어 이용인구비율을 분석하였음.

○ 대상은 이용자 연령과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영·유아(만 0-5세), 아동·청소년(만 6-18세), 성인(만 19-64세),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으로 구분함.

○ 대상별 이용인구 비율 분석 결과는 시 단위와 도 단위로 나누어 제시함.

□ <표 4-4> 는 시 단위 지역의 영유아 이용인구 비율을 나타냄.

○ 2013년 영유아 지투사업 이용인구는 207,6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2015년에는 135,798명에서 30,419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 영유아 인구의 지투사업 이용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 대구, 부산으로, 대전은 2013년(11.86%)에 가장 높은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보였음.

- 대구는 2013년 10.87%로 두 번째로 영유아 인구의 이용 비율이 높았으나 2014년에는 7.45%로 가장 높은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보였음.

-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부산이 가장 높은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보였음(2015: 3.55%, 2016: 4.11%, 2017: 4.24%).

○ 영유아 인구의 지투사업의 이용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로 5년간 일관되게 낮음.

- 반면 세종의 경우 2014년까지는 높은 사업 이용 비율을 보였으나(2013: 10.37%, 2014:7.30%), 그 이후로는 이용 비율이 낮아져 2016년과 2017년에는 가장 낮은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2016: 0.29%, 2017: 0.39%)

〈표 4-4〉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영유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명,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서울	489,543	26,225	5.36	480,047	20,298	4.23	472,648	2,603	0.55	453,439	2,553	0.56	429,218	2,316	0.54
부산	159,465	15,107	9.47	159,816	10,020	6.27	162,479	5,764	3.55	160,015	6,584	4.11	152,465	6,467	4.24
대구	123,728	13,340	10.78	122,409	9,122	7.45	122,626	1,181	0.96	120,756	2,252	1.86	115,998	2,470	2.13
인천	163,530	10,695	6.54	162,895	5,480	3.36	162,895	1,787	1.10	158,698	3,562	2.24	150,553	3,182	2.11
광주	85,828	6,815	7.94	84,480	5,744	6.80	83,026	672	0.81	80,055	669	0.84	76,483	509	0.67
대전	89,639	10,633	11.86	87,879	6,529	7.43	85,620	2,271	2.65	83,041	1,287	1.55	78,013	1,323	1.70
울산	69,574	6,194	8.90	70,124	3,233	4.61	70,709	1,277	1.81	69,468	1,632	2.35	66,455	1,134	1.71
세종	8,052	835	10.37	11,783	860	7.30	17,888	132	0.74	20,671	59	0.29	23,564	93	0.39
시 단위 소계	1,189,359	89,844	8.90	1,179,433	61,286	5.93	1,177,891	15,687	1.52	1,146,143	18,598	1.73	1,092,749	17,494	1.69
총계	2,769,255	207,667	9.36	2,741,835	135,798	6.28	2,739,901	30,419	1.51	2,680,088	34,663	1.68	2,568,516	32,132	1.63

- <표 4-5>는 도 단위 지역의 영유아 이용인구 비율을 나타냄.
- 도 단위 지역의 영유아 인구 지투사업 이용자 수는 2013년 117,82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 이후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5년 14,732명이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과 2017년의 증감 폭은 그리 크지 않았음.
-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2013년을 제외한 4년간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전체 이용자 수가 급감한 2015년 이후에도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2015: 5.94%, 2016: 5.74%, 2017: 5.62%).
- 전북 또한 영유아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높음. 2013년을 제외한 모든 년도에 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2014: 8.94%, 2015: 1.58%, 2016: 1.70%, 2017: 1.77%).
- 경북의 경우 2013년에는 가장 높은 지투사업 이용 비율(13.66%)을 보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0.59%와 0.67%로 낮은 수준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보임.
- 경기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사업의 이용인구수는 도 단위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낮은 이용 비율은 경기도의 많은 인구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표 4-5〉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영유아): 도, 특별자치도

(단위: 명,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경기	746,577	35,045	4.69	737,803	21,868	2.96	738,754	4,571	0.62	729,339	4,803	0.66	706,088	4,609	0.65
강원	73,455	10,329	14.06	72,309	5,823	8.05	71,392	477	0.67	69,029	702	1.02	65,614	667	1.02
충북	86,592	8,240	9.52	85,340	4,308	5.05	84,670	1,045	1.23	82,861	1,103	1.33	79,261	1,136	1.43
충남	118,938	10,058	8.46	117,484	8,479	7.22	117,546	995	0.85	115,819	1,392	1.20	112,339	1,167	1.04
전북	96,006	11,947	12.44	94,369	8,438	8.94	93,151	1,470	1.58	89,923	1,529	1.70	84,546	1,498	1.77
전남	95,456	5,541	5.80	94,151	4,293	4.56	94,460	733	0.78	91,910	983	1.07	87,010	951	1.09
경북	136,156	18,602	13.66	134,949	10,472	7.76	135,507	795	0.59	133,079	896	0.67	126,956	803	0.63
경남	191,336	13,584	7.10	190,029	6,655	3.50	189,730	2,459	1.30	184,865	2,526	1.37	177,307	1,749	0.99
제주	35,380	4,477	12.65	35,968	4,176	11.61	36,800	2,187	5.94	37,120	2,131	5.74	36,646	2,058	5.62
도 단위 소계	1,579,896	117,823	9.82	1,562,402	74,512	6.63	1,562,010	14,732	1.51	1,533,945	16,065	1.64	1,475,767	14,638	1.58
총계	2,769,255	207,667	9.36	2,741,835	135,798	6.28	2,739,901	30,419	1.51	2,680,088	34,663	1.68	2,568,516	32,132	1.63

- <표 4-6> 는 시 단위 지역의 아동·청소년 인구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나타냄.
- 2013년의 사업 이용인구가 75,3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 48,995명으로 가장 적은 수가 지투사업을 이용함.
- 아동·청소년 인구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2013년 5.40%(13,133명)의 이용 비율을 기록한 이후 전 년도에서 가장 높은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광주 2017년을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다만, 2017년에는 2.45%(5,326명)가 지투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대전, 부산, 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이용 비율을 나타냄.
- 부산은 2013년 2.62%(11,619명)으로 이용 비율이 낮은 편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높은 수준의 사업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3년 이후 아동·청소년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부산은 2015년 이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타 지역과 달리 아동·청소년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인구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이는 서울 지역의 인구수가 많은 것에 기인할 수 있으나, 이용인구의 숫자 역시 타 시 단위 지역에 비하여 크게 많지 않음.

〈표 4-6〉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아동·청소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명,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서울	1,281,620	14,777	1.15	1,228,627	13,717	1.12	1,173,153	6,447	0.55	1,122,623	7,120	0.63	1,081,093	6,791	0.63
부산	443,935	11,619	2.62	424,359	10,833	2.55	405,447	9,998	2.47	390,530	12,512	3.20	376,856	13,870	3.68
대구	372,691	11,686	3.14	355,790	8,958	2.52	339,382	7,662	2.26	325,740	8,554	2.63	314,837	5,754	1.83
인천	419,022	9,500	2.27	406,191	9,067	2.23	394,105	7,844	1.99	383,843	10,048	2.62	375,038	9,725	2.59
광주	253,579	9,998	3.94	244,343	8,386	3.43	234,548	6,067	2.59	225,420	7,282	3.23	217,369	5,326	2.45
대전	243,058	13,133	5.40	233,933	10,140	4.33	222,210	8,408	3.78	213,255	9,564	4.48	204,839	8,423	4.11
울산	181,838	4,192	2.31	174,932	4,147	2.37	168,376	2,127	1.26	162,508	3,091	1.90	157,402	2,102	1.34
세종	17,435	434	2.49	23,212	458	1.97	33,303	442	1.33	39,060	612	1.57	45,969	699	1.52
시 단위 소계	3,213,178	75,339	2.92	3,091,387	65,706	2.57	2,970,524	48,995	2.03	2,862,979	58,783	2.53	2,773,403	52,690	2.27
총계	7,370,691	176,929	2.97	7,130,507	149,552	2.62	6,893,407	117,713	2.17	6,695,799	146,320	2.75	6,531,675	135,200	2.54

- 〈표 4-7〉 은 도 단위 지역의 아동·청소년 인구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나타냄.
 - 도 지역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3,758,272명이며, 지투사업 이용인구는 2015년 68,718명으로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한 후 8만여 명을 유지하고 있음.
 - 영유아 대상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아동·청소년 연령대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임. 2013년 4.41%(4,309명)를 기록한 이래로 꾸준히 4%대의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제주지역의 아동·청소년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 다음으로 이용 비율이 높은 곳은 전북으로, 특히 2015년 이후 아동·청소년 인구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2015: 2.90%, 2016: 4.19%, 2017: 4.22%).
 - 강원은 2015년도 이후 도 단위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2013년(2.66%)과 2014년(2.46%)의 낮은 이용 비율과 달리 201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도 단위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경기 지역은 영유아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4-7〉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아동·청소년): 도, 특별자치도

(단위: 명,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경기	1,911,162	34,564	1.81	1,865,526	27,549	1.48	1,822,452	21,847	1.20	1,791,630	28,266	1.58	1,767,031	28,815	1.63
강원	217,826	5,784	2.66	209,953	5,158	2.46	202,373	5,774	2.85	195,374	6,833	3.50	188,577	5,796	3.07
충북	232,147	7,814	3.37	224,264	4,565	2.04	215,532	4,508	2.09	209,183	6,588	3.15	203,312	5,966	2.93
충남	296,151	8,363	2.82	289,628	6,968	2.41	282,600	4,210	1.49	277,887	5,569	2.00	274,606	5,602	2.04
전북	278,974	11,037	3.96	268,797	9,927	3.69	258,506	7,508	2.90	250,080	10,469	4.19	241,592	10,193	4.22
전남	268,253	8,637	3.22	257,802	7,937	3.08	248,299	5,704	2.30	239,741	7,137	2.98	232,265	6,736	2.90
경북	357,405	9,480	2.65	344,193	8,305	2.41	331,404	7,604	2.29	320,682	9,728	3.03	312,010	8,531	2.73
경남	497,818	11,602	2.33	482,788	8,940	1.85	466,690	7,726	1.66	454,038	8,834	1.95	444,781	6,785	1.53
제주	97,777	4,309	4.41	96,169	4,497	4.68	95,027	3,837	4.04	94,205	4,113	4.37	94,098	4,086	4.34
도 단위 소계	4,157,513	101,590	3.03	4,039,120	83,846	2.68	3,922,883	68,718	2.31	3,832,820	87,537	2.97	3,758,272	82,510	2.82
총계	7,370,691	176,929	2.97	7,130,507	149,552	2.62	6,893,407	117,713	2.17	6,695,799	146,320	2.75	6,531,675	135,200	2.54

- <표 4-8> 은 시 단위 지역의 성인인구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나타냄.
 - 타 연령대에 비하여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투사업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인구 이용 비율 역시 낮은 수준이나, 이용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연령대와는 달리 성인인구의 이용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보임.
 - 2013년도 15,038명, 2017년에는 17,018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음.
 - 성인인구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높은 곳은 대전과 광주임.
 - 대전은 2013년을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보였으며, 꾸준하게 0.3%대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 광주의 경우 2013년에는 0.39%(3,819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인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높은 수준의 이용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 울산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3년에는 성인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낮았으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2017년에는 0.29%(2,363명)의 이용 비율로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인인구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세종은 성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60%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0.1% 이하의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어, 서울과 함께 성인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 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인대상 특화사업이 부족한 세종지역의 특성 상, 이것이 해당지역의 낮은 사업 이용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표 4-8〉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성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명,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서울	7,210,774	1,887	0.03	7,178,030	1,973	0.03	7,113,944	2,523	0.04	7,058,655	2,973	0.04	6,987,214	2,110	0.03
부산	2,456,819	2,762	0.11	2,443,110	3,829	0.16	2,431,221	3,321	0.14	2,411,920	3,733	0.15	2,375,805	3,669	0.15
대구	1,715,923	1,663	0.10	1,711,528	1,614	0.09	1,709,699	2,176	0.13	1,709,160	2,234	0.13	1,696,937	1,586	0.09
인천	2,014,759	1,438	0.07	2,035,571	1,498	0.07	2,055,910	1,640	0.08	2,076,273	2,614	0.13	2,077,927	2,363	0.11
광주	981,629	3,819	0.39	987,239	1,948	0.20	988,236	1,709	0.17	991,167	1,961	0.20	989,056	1,657	0.17
대전	1,049,463	2,998	0.29	1,051,668	2,647	0.25	1,045,417	3,094	0.30	1,046,506	3,752	0.36	1,038,708	3,221	0.31
울산	813,547	429	0.05	824,071	305	0.04	831,244	726	0.09	831,560	1,510	0.18	824,642	2,363	0.29
세종	78,708	42	0.05	101,353	66	0.07	137,294	46	0.03	159,120	57	0.04	183,716	49	0.03
시 단위 소계	16,321,622	15,038	0.14	16,332,570	13,880	0.11	16,312,965	15,235	0.12	16,284,361	18,834	0.15	16,174,005	17,018	0.15
총계	34,750,531	26,151	0.11	34,934,967	25,294	0.10	35,120,929	28,037	0.11	35,324,677	33,811	0.13	35,322,247	29,845	0.12

- <표 4-9> 는 도 단위 지역 성인인구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나타냄.
 - 도 지역의 성인 지투사업 이용인구는 2013년 11,113명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수 대비 낮은 수준의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도 지역 중 상대적으로 성인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과 전북임.
 - 충남은 2014년을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성인인구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북의 경우 전체 성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1%대의 이용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강원은 2013년(0.12%)과 2014년(0.13%)에는 비교적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높으나, 증가하는 인구에 비하여 사업 이용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특히, 2017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400여명이 감소하여 가장 높은 감소비율을 기록하였음.
 - 반면 제주의 경우 2013년 123명(0.03%)만이 성인대상 지투사업을 이용하여 이용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2017년 607명(0.17%)으로 증가하였음. 지역 내 성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지역의 성인 지투사업 이용 비율 증가는 주목할 만함.

〈표 4-9〉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성인): 도, 특별자치

(단위: 명,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경기	8,381,368	2,122	0.03	8,500,056	2,250	0.03	8,642,518	3,120	0.04	8,821,336	4,548	0.05	8,932,941	4,151	0.05
강원	1,001,443	1,251	0.12	1,006,250	1,283	0.13	1,014,071	1,203	0.12	1,020,251	1,540	0.15	1,015,975	1,087	0.11
충북	1,031,805	979	0.09	1,040,429	729	0.07	1,048,937	940	0.09	1,058,891	1,184	0.11	1,059,425	1,001	0.09
충남	1,312,347	1,799	0.14	1,324,354	1,535	0.12	1,336,289	1,867	0.14	1,352,913	2,215	0.16	1,366,879	1,736	0.13
전북	1,185,221	1,020	0.09	1,185,768	1,368	0.12	1,184,530	1,535	0.13	1,183,585	1,889	0.16	1,177,187	1,798	0.15
전남	1,168,898	886	0.08	1,170,019	790	0.07	1,174,400	616	0.05	1,173,347	600	0.05	1,168,698	517	0.04
경북	1,753,462	1,372	0.08	1,754,300	1,352	0.08	1,756,281	997	0.06	1,754,220	772	0.04	1,740,059	620	0.04
경남	2,213,021	1,561	0.07	2,228,423	1,878	0.08	2,244,263	2,226	0.10	2,254,690	1,801	0.08	2,253,856	1,310	0.06
제주	381,344	123	0.03	392,798	229	0.06	406,675	298	0.07	421,083	428	0.10	433,222	607	0.14
도 단위 소계	18,428,909	11,113	0.08	18,602,397	11,414	0.08	18,807,964	12,802	0.09	19,040,316	14,977	0.10	19,148,242	12,827	0.09
총계	34,750,531	26,151	0.11	34,934,967	25,294	0.10	35,120,929	28,037	0.11	35,324,677	33,811	0.13	35,322,247	29,845	0.12

- <표 4-10> 는 시 단위 지역 노인인구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나타냄.
 - 시 지역의 노인 지투사업 이용인구는 2013년 30,154명에서 2017년 32,95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39,951명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여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시 지역의 노인인구가 5년간 대략 14%가 증가(2013: 2,612,845명 2017: 3,122,924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투사업 이용인구는 9%가량 증가에 그치고 있어 향후 시 단위 지역 노인대상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간 노인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이며, 광주와 울산도 비교적 높은 편임.
 - 울산의 경우 2015년 2.25%(2,322명)로 두 번째로 높은 이용 비율을 보인 지역이었으나 이후 급격하게 이용 비율이 줄어들어 2017년에는 1.12%(1,306명)으로 하락함.
 - 서울과 세종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하여 노인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특히 세종은 2015년 이후 노인 이용자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15: 2명, 2016: 1명, 2017: 0명).
- <표 4-11> 는 도 단위 지역 노인인구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나타냄.
 - 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체 이용인구의 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증가하였음(2013: 42,486명, 2017:48,004명).
 - 노인연령대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와 전남임.
 - 2013년과 2017년을 비교하였을 때 제주(2013: 2.94%, 2017: 5.13%)와 전북(2013: 0.67, 2017: 1.93)은 1%이상 이용 비율이 증가한 반면 경북(2013: 1.93%, 2017: 1.05)는 가장 감소폭이 큰 지역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하여 이용 비율이 낮았으나(2013: 0.37%, 2017: 0.48%), 이용인구의 증가는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4-10〉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노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명,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서울	1,161,708	3,491	0.30	1,216,529	4,147	0.34	1,262,436	3,371	0.27	1,295,899	4,077	0.31	1,359,901	2,702	0.20
부산	467,416	5,272	1.13	492,116	8,093	1.64	514,630	9,708	1.89	536,064	9,770	1.82	565,527	8,520	1.51
대구	289,246	4,397	1.52	303,537	3,868	1.27	316,122	4,827	1.53	328,901	5,778	1.76	347,459	4,927	1.42
인천	282,471	5,133	1.82	297,951	4,920	1.65	312,905	3,958	1.26	324,255	7,190	2.22	345,024	6,595	1.91
광주	151,874	3,900	2.57	159,822	2,933	1.84	166,389	3,292	1.98	172,572	4,090	2.37	180,862	3,219	1.78
대전	150,651	6,339	4.21	158,329	5,212	3.29	165,528	5,564	3.36	171,568	6,669	3.89	180,667	5,684	3.15
울산	91,521	1,573	1.72	97,250	1,766	1.82	103,205	2,322	2.25	108,768	2,376	2.18	116,633	1,306	1.12
세종	17,958	49	0.27	19,777	29	0.15	22,399	2	0.01	24,197	1	0.00	26,851	0	0.00
시 단위 소계	2,612,845	30,154	1.69	2,745,311	30,968	1.50	2,863,614	33,044	1.57	2,962,224	39,951	1.82	3,122,924	32,953	1.39
총계	6,250,986	72,640	1.61	6,520,607	73,922	1.55	6,775,101	78,333	1.63	6,995,652	93,320	1.85	7,356,106	80,957	1.55

〈표 4-11〉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노인): 도, 특별자치도

(단위: 명,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경기	1,195,523	4,420	0.37	1,254,445	4,522	0.36	1,318,882	5,604	0.42	1,374,475	7,532	0.55	1,467,835	7,052	0.48
강원	249,539	3,833	1.54	255,930	3,833	1.50	261,671	3,375	1.29	266,152	3,871	1.45	279,976	2,850	1.02
충북	222,188	2,949	1.33	228,900	2,126	0.93	234,813	2,770	1.18	240,690	3,792	1.58	252,434	3,433	1.36
충남	320,195	3,884	1.21	330,807	4,362	1.32	341,214	4,985	1.46	350,108	5,439	1.55	362,946	4,944	1.36
전북	312,764	2,108	0.67	322,626	2,675	0.83	333,524	4,008	1.20	341,203	6,249	1.83	351,282	6,772	1.93
전남	374,565	11,182	2.99	383,808	11,399	2.97	391,837	10,807	2.76	398,916	10,977	2.75	408,451	10,670	2.61
경북	452,417	8,719	1.93	467,352	7,526	1.61	479,634	6,770	1.41	492,417	7,594	1.54	512,681	5,384	1.05
경남	431,645	3,062	0.71	449,017	3,019	0.67	464,019	2,701	0.58	480,278	3,450	0.72	504,460	2,118	0.42
제주	79,305	2,329	2.94	82,411	3,492	4.24	85,893	4,269	4.97	89,189	4,465	5.01	93,117	4,781	5.13
도 단위 소계	3,638,141	42,486	1.52	3,775,296	42,954	1.60	3,911,487	45,289	1.70	4,033,428	53,369	1.89	4,233,182	48,004	1.71
총계	6,250,986	72,640	1.61	6,520,607	73,922	1.55	6,775,101	78,333	1.63	6,995,652	93,320	1.85	7,356,106	80,957	1.55

- <표 4-12> 는 시 단위 지역 장애인 인구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나타냄.
 - 지투사업을 이용한 장애인의 수는 2013년 8,180명에서 2017년 7,96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일정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는 않음.
 - 전반적으로 대전, 인천, 울산의 경우를 제외한 지역의 장애인 지투사업 이용 인원수가 감소하였음.
 - 장애인 인구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2013: 1.81%, 2017: 1.99%)이며, 인천(2013: 1.09%, 2017: 1.37%) 역시 높은 수준의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울산의 이용 비율은 2013년에는 0.68%에 불과하였으나,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1.74%로 높아짐.
 - 세종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장애인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표 4-13> 는 도 단위 지역 장애인 인구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을 나타냄.
 - 도 지역 장애인의 지투사업 이용인원은 9,039명에서 11,69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12,83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해당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시 지역과 달리 도 지역 장애인의 지투사업 이용 비율은 지역별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제주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2013: 1.02%, 2014: 0.95%, 2015: 1.02%), 2016년부터 급격하게 이용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충남은 타 지역에 비하여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2013: 0.91%, 2017: 1.05%).
 - 경기, 전북은 이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강원과 경남은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이용 비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임.
 - 반면, 경북은 이용 비율과 이용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표 4-12〉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장애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명,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서울	403,435	1,887	0.47	398,908	2,005	0.50	393,245	1,918	0.49	391,027	1,972	0.50	391,753	1,605	0.41
부산	169,750	1,426	0.84	168,663	865	0.51	168,084	553	0.33	168,950	788	0.47	171,384	957	0.56
대구	116,567	1,195	1.03	115,983	964	0.83	115,694	908	0.78	117,111	788	0.67	119,766	765	0.64
인천	133,778	1,461	1.09	133,855	1,650	1.23	134,191	1,629	1.21	135,623	2,159	1.59	138,304	1,892	1.37
광주	68,372	566	0.83	68,288	384	0.56	68,079	337	0.50	68,569	411	0.60	69,233	429	0.62
대전	71,441	1,296	1.81	71,198	1,137	1.60	70,890	1,310	1.85	71,425	1,532	2.14	72,180	1,434	1.99
울산	48,950	332	0.68	49,014	259	0.53	49,326	346	0.70	49,533	684	1.38	50,205	872	1.74
세종	7,202	17	0.24	7,943	25	0.31	9,079	10	0.11	9,845	13	0.13	10,623	14	0.13
시 단위 소계	1,019,495	8,180	0.87	1,013,852	7,289	0.76	1,008,588	7,011	0.75	1,012,083	8,347	0.94	1,023,448	7,968	0.93
총계	2,501,112	17,219	0.77	2,494,460	17,529	0.73	2,490,406	17,750	0.74	2,511,051	21,184	0.85	2,545,637	19,667	0.80

〈표 4-13〉 대상별 전체 인구 및 지투서비스 이용인구 비율(장애인): 도, 특별자치도

(단위: 명,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이용 인구	비율 (%)
경기	506,464	2,632	0.52	508,330	3,534	0.70	512,882	3,977	0.78	522,437	5,624	1.08	533,259	5,468	1.03
강원	99,660	321	0.32	98,970	365	0.37	98,324	326	0.33	98,928	502	0.51	99,959	317	0.32
충북	93,563	764	0.82	93,612	719	0.77	93,536	714	0.76	94,688	826	0.87	95,844	877	0.92
충남	124,561	1,130	0.91	124,721	1,083	0.87	124,801	1,360	1.09	126,406	1,628	1.29	128,503	1,345	1.05
전북	132,006	979	0.74	130,932	1,168	0.89	129,769	1,176	0.91	130,345	1,304	1.00	131,303	1,340	1.02
전남	144,324	727	0.50	143,128	735	0.51	141,837	596	0.42	141,578	561	0.40	142,174	618	0.43
경북	168,836	1,066	0.63	168,650	1,139	0.68	168,089	894	0.53	169,643	709	0.42	172,533	466	0.27
경남	179,530	1,087	0.61	179,276	1,185	0.66	179,070	1,354	0.76	180,665	1,490	0.82	183,510	1,116	0.61
제주	32,673	333	1.02	32,989	312	0.95	33,510	342	1.02	34,278	193	0.56	35,104	152	0.43
도 단위 소계	1,481,617	9,039	0.67	1,480,608	10,240	0.71	1,481,818	10,739	0.73	1,498,968	12,837	0.77	1,522,189	11,699	0.68
총계	2,501,112	17,219	0.77	2,494,460	17,529	0.73	2,490,406	17,750	0.74	2,511,051	21,184	0.85	2,545,637	19,667	0.80

□ <표 4-14> 는 대상별 인구구성비 대비 지투사업 이용인구 구성비의 차이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냄.

○ 대상별 인구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 영·유아(2013: 5.41%, 2017: 4.96%) 및 아동·청소년(2013: 14.41, 2017: 12.61)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2013: 12.22%, 2017:14.21%).
- 성인 인구구성비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구구성비는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음.

○ 대상별 지투사업 이용인구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 영·유아의 경우 2013년(43.10%)과 2014년(35.66%)에 전체 참여인구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2015년 이후 11%대로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투사업 참여인구 대비 해당 연령대 참여 비율이 2013년 36.57%에서 2017년 48.69%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성인 및 노인 연령대의 지투이용인구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 장애인의 지투사업 이용인구의 비율은 2013년 3.54%에서 2017년 7.0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인구대비 비율과 지투사업 참여인구 대비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 차이값이 양수가 나오는 경우는 전체 인구대비 비율에 비하여 지투사업의 비율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이값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 실제 인구비율에 비하여 지투사업 내에서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영·유아의 경우 2013년 -37.69%까지 나던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2015년 이후 -6%가량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영유아에 집중되던 지투사업이 다양한 연령대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 차이가 연도에 따라 심화되고 있음.
- 성인의 경우 전체 인구 중 68%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투이

용자 내 비율이 10%가량에 불과하여 성인대상 지투사업의 확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노인의 경우 전체 인구 중 비율과 지투이용자 내 비율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나 그 차이 역시 커지고 있어 지투이용자 내에서 이용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짐.
- 장애인의 경우 지투사업 내 해당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짐.

〈표 4-14〉 대상별 인구구성비 대비 지투사업 이용인구 구성비 차이

(단위: %)

연도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인구 구성비	지투사업 이용인구 구성비	차이	인구 구성비	지투사업 이용인구 구성비	차이	인구 구성비	지투사업 이용인구 구성비	차이
2013	5.41	43.10	-37.69	14.41	36.57	-22.16	67.95	5.39	62.56
2014	5.34	35.66	-30.32	13.89	38.89	-25	68.06	6.45	61.61
2015	5.32	11.99	-6.67	13.38	46.25	-32.87	68.16	11.02	57.14
2016	5.18	11.28	-6.1	12.95	47.49	-34.54	68.33	10.98	57.35
2017	4.96	11.59	-6.63	12.61	48.69	-36.08	68.22	10.59	57.63
평균	5.24	22.72	-17.48	13.45	43.58	-30.13	68.14	8.89	59.26

연도	노인			장애인		
	인구 구성비	지투사업 이용인구 구성비	차이	인구 구성비	지투사업 이용인구 구성비	차이
2013	12.22	14.94	-2.72	4.89	3.54	1.35
2014	12.7	19.00	-6.3	4.86	5.49	-0.63
2015	13.15	30.74	-17.59	4.83	6.96	-2.13
2016	13.53	30.25	-16.72	4.86	6.86	-2
2017	14.21	29.13	-14.92	4.92	7.07	-2.15
평균	13.16	24.81	-11.65	4.87	5.98	-1.11

제3절 사업유형별 이용 변화 분석

- <표 4-15> 는 사업유형(표준모델, 자체개발모델)에 따른 이용자수의 연도별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임.
 - 2013~2017년 지침에 제시된 표준모델 사업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지자체 자체개발모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에서 기타로 구분되어진 사업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음.

- 분석 결과 2013년과 2014년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표준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로 2013년에는 262,492명(54.0%), 2014년에는 167,756명(42.7%)이 이용하였으나 2015년 폐지되었음.

- 2015년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사업모델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였으며 48,782명(19.1%)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본 모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가 36,996명(14.5%)이 이용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31,012명, 12.2%).
 - 이러한 양상은 2016년과 2017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를 36,755명(13.2%)이 이용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표준사업으로 나타남.

- 기 작성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을 제외한 타 연령대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모델사업의 대부분은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또한, 자체개발모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자체개발모델 사업 이용자수의 경우 2013년 23,084명으로 전체 사업 중 4.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6년에는 63,493명으로 그 비율이 20.6%까지 증가하였음.

- 이러한 변화는 지투사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취지에 맞추어 사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표준모델사업 중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타 대상 관련 사업들의 비율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표 4-15〉 표준모델과 자체개발모델 사업 이용규모 변화

(단위: 명, %)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표준 모델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3,294(0.7)	2,836(0.7)	4,609(1.8)	4,960(1.6)	5,195(1.9)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21,805(4.5)	23,735(6.0)	25,398(10.0)	36,906(12.0)	36,755(13.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40,293(8.3)	42,641(10.8)	48,782(19.1)	62,926(20.4)	60,165(21.7)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2,777(0.6)	2,526(0.6)	2,688(1.1)	3,236(1.0)	2,686(1.0)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21,502(4.4)	22,955(5.8)	13,379(5.2)	21,469(7.0)	17,324(6.2)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17,660(3.6)	12,788(3.2)	8,038(3.2)	5,048(1.6)	2,525(0.9)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2,620(0.5)	3,426(0.9)	2,725(1.1)	3,026(1.0)	2,965(1.1)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20,801(4.3)	24,592(6.3)	31,012(12.2)	40,076(13.0)	34,627(12.5)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3,313(0.7)	3,770(1.0)	4,034(1.6)	5,110(1.7)	5,301(1.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2,913(0.6)	2,436(0.6)	3,668(1.4)	5,552(1.8)	6,215(2.2)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31,600(6.5)	31,123(7.9)	36,966(14.5)	42,753(13.9)	34,185(12.3)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2,439(0.5)	2,252(0.6)	1,828(0.7)	1,974(0.6)	1,621(0.6)
	장애인 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	6,506(1.3)	4,844(1.2)	11,227(4.4)	5,914(1.9)	5,437(2.0)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8,057(1.7)	5,381(1.4)	4,716(1.8)	6,205(2.0)	6,011(2.2)
	성인(청년) 심리지원서비스					2,358(0.5)
	고령자소외예방서비스	10,722(2.2)	11,564(2.9)	14,102(5.5)		
	부모학교 서비스	3,444(0.7)	5,107(1.3)			
	아동돌봄서비스	788(0.2)	652(0.2)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262,493(54.0)	167,756(42.7)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5,893(2.3)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서비스			213(0.1)			
표준모델 합계		463,027(95.3)	370,384(94.2)	219,278(86.0)	245,155(79.4)	223,370(80.1)
자체개발모델 합계		23,084(4.7)	22,691(5.8)	35,641(14.0)	63,493(20.6)	55,651(19.9)

- 지투사업의 표준모델과 자체개발모델간의 사업이용자수 변화를 세분화하여 살펴 보고자 지역 및 연도별 차이를 <표 4-16> 과 <표 4-17> 에서 확인하였음.
 - 전반적으로 자체개발모델에 비하여 표준모델 사업의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체개발모델의 이용자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표 4-16> 는 시 단위 지역의 표준모델과 자체개발모델 사업 이용자수의 연도별 변화를 확인한 결과임.
 - 시 단위 지역 중 자체개발모델 이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였으며, 2013년 14.5%(3,590명)에서 2017년에 37.1%(3,971명)까지 증가하였음.
 - 자체개발모델 이용자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인천으로 2013년 3.4%(919명)에서 2017년에 9.4%(2,071명)까지 증가하였음.
 - 2013년과 2014년은 부산(2013: 7.7% 2014: 6.0%)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 단위 지역의 자체개발모델 이용자 비율이 증가하였음.
 - 2014년과 2015년 사이에는 모든 지역의 자체개발모델 이용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양상은 2015년과 2016년의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나 세종은 2015년(32.3%, 201명)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2016년과 2017년의 비교에서는 대부분의 시 단위 지역의 자체개발모델 이용자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울산(5.6%증가)와 대구(0.7%증가)의 경우 자체개발 모델 이용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표 4-17> 에서는 도 단위 지역의 표준모델과 자체개발모델 사업 이용자수의 연도별변화를 확인하였음.
 - 도 단위 지역 중 자체개발모델 이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2013년 10.5%(1,184명)에서 2017년에 31.2%(3,601명)가 이용하여 20.7%p의 증가율을 보임.

- 자체개발모델 이용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로 2013년 0.9%(655명)의 이용 비율을 보였으며 2017년에도 4.8%(2,161명)의 이용에 그치고 있음.
- 시 단위 지역과 달리 도 단위 지역에서는 자체개발모델 이용자 비율이 지역 별로 다르게 나타남.
 - 2013년과 2014년의 비교에서는 강원(0.3%), 충북(1.3%), 충남(1.1%)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 자체개발모델 이용자 비율이 증가하였음.
 - 2014년부터 2016년의 경우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자체개발모델 이용자 비율이 증가하였음.
 - 2016년과 2017년의 비교에서는 제주(1.4% 감소), 충북(1.7% 감소), 충남(0.2% 감소)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자체개발모델 이용자 비율이 증가하였음.

〈표 4-16〉 지역별 표준모델과 자체개발모델 사업 이용자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명,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체개발 모델	표준모델								
서울	2,374	44,428	2,547	37,687	2,637	12,343	3,465	13,302	2,753	11,192
	(5.1)	(94.9)	(6.3)	(93.7)	(17.6)	(82.4)	(20.7)	(79.3)	(19.7)	(80.3)
부산	2,704	32,239	1,987	30,907	7,351	21,526	11,157	21,487	10,090	22,476
	(7.7)	(92.3)	(6.0)	(94.0)	(25.5)	(74.5)	(34.2)	(65.8)	(31.0)	(69.0)
대구	970	30,377	1,167	22,426	1,613	14,253	4,217	14,633	3,411	11,379
	(3.1)	(96.9)	(4.9)	(95.1)	(10.2)	(89.8)	(22.4)	(77.6)	(23.1)	(76.9)
인천	919	25,992	1,519	19,494	1,610	13,670	3,116	20,428	2,071	19,850
	(3.4)	(96.6)	(7.2)	(92.8)	(10.5)	(89.5)	(13.2)	(86.8)	(9.4)	(90.6)
광주	3,590	21,097	3,219	15,797	3,719	8,049	5,235	8,781	3,971	6,744
	(14.5)	(85.5)	(16.9)	(83.1)	(31.6)	(68.4)	(37.4)	(62.6)	(37.1)	(62.9)
대전	3,472	29,949	3,032	21,573	4,797	14,594	7,160	14,172	5,871	12,826
	(10.4)	(89.6)	(12.3)	(87.7)	(24.7)	(75.3)	(33.6)	(66.4)	(31.4)	(68.6)
울산	342	12,172	684	8,773	719	5,761	2,877	5,742	2,521	3,947
	(2.7)	(97.3)	(7.2)	(92.8)	(11.1)	(88.9)	(33.4)	(66.6)	(39.0)	(61.0)
세종	48	1,317	80	1,343	201	421	78	652	155	686
	(3.5)	(96.5)	(5.6)	(94.4)	(32.3)	(67.7)	(10.7)	(89.3)	(18.4)	(81.6)
시 단위 소계	14,419	197,571	14,235	158,000	22,647	90,617	37,305	99,197	30,843	89,100
	(7.3)	(92.7)	(9.0)	(91.0)	(25.0)	(75.0)	(37.6)	(62.4)	(34.6)	(65.4)
총계	23,084	463,027	22,691	370,384	35,641	219,278	63,493	245,133	55,651	222,370
	(4.7)	(95.3)	(5.8)	(94.2)	(14.0)	(86.0)	(20.6)	(79.4)	(20.0)	(80.0)

〈표 4-17〉 지역별 표준모델과 자체개발모델 사업 이용자수: 도, 특별자치도

(단위: 명,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체개발 모델	표준모델								
경기	655	75,825	576	56,675	2,915	32,281	1,957	43,285	2,161	42,540
	(0.9)	(99.1)	(1.0)	(99.0)	(8.3)	(91.7)	(4.3)	(95.7)	(4.8)	(95.2)
강원	804	20,533	571	15,548	1,301	9,530	2,233	10,725	1,783	8,621
	(3.8)	(96.2)	(3.5)	(96.5)	(12.0)	(88.0)	(17.2)	(82.8)	(17.1)	(82.9)
충북	1,806	18,261	1,518	18,175	1,828	7,438	3,360	9,309	2,856	8,680
	(9.0)	(91.0)	(7.7)	(92.3)	(19.7)	(80.3)	(26.5)	(73.5)	(24.8)	(75.2)
충남	1,000	23,230	839	20,520	729	11,331	2,252	12,388	2,039	11,416
	(4.1)	(95.9)	(3.9)	(96.1)	(6.0)	(94.0)	(15.4)	(84.6)	(15.2)	(84.8)
전북	563	25,686	717	21,713	1,074	13,471	3,997	16,141	4,346	15,917
	(2.1)	(97.9)	(3.2)	(96.8)	(7.4)	(92.6)	(19.8)	(80.2)	(21.4)	(78.6)
전남	1,528	24,773	1,494	22,937	1,589	16,279	5,369	14,338	5,159	13,717
	(5.8)	(94.2)	(6.1)	(93.9)	(8.9)	(91.1)	(27.2)	(72.8)	(27.3)	(72.7)
경북	409	37,920	363	27,301	616	15,552	1,655	17,335	1,506	13,832
	(1.1)	(98.9)	(1.3)	(98.7)	(3.8)	(96.2)	(8.7)	(91.3)	(9.8)	(90.2)
경남	716	29,168	695	19,802	1,166	13,958	1,730	14,903	1,357	10,616
	(2.4)	(97.6)	(3.4)	(96.6)	(7.7)	(92.3)	(10.4)	(89.6)	(11.3)	(88.7)
제주	1,184	10,060	1,683	10,713	1,776	8,821	3,637	7,512	3,601	7,931
	(10.5)	(89.5)	(13.6)	(86.4)	(16.8)	(83.2)	(32.6)	(67.4)	(31.2)	(68.8)
도 단위 소계	8,665	265,456	8,456	213,384	12,994	128,661	26,190	145,936	24,808	133,270
	(3.3)	(96.7)	(4.0)	(96.0)	(10.1)	(89.9)	(17.9)	(82.1)	(18.6)	(81.4)
총계	23,084	463,027	22,691	370,384	35,641	219,278	63,493	245,133	55,651	222,370
	(4.7)	(95.3)	(5.8)	(94.2)	(14.0)	(86.0)	(20.6)	(79.4)	(20.0)	(80.0)

제4절 대상별, 사업유형별 결재금액 변화 분석

1. 대상별 서비스 결재금액 분석

□ <표 4-18>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상별 지투서비스 결재금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냄.²⁾

- 지투서비스의 결재금액 규모가 가장 큰 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 2013년 약 961억 원(49.3%)에서 2017년 약 112,1억 원(50.0%)임. 그러나 연도별 변화에서는 2013년에 비하여 2017년에 주목할 만한 증감은 보이지 않음.
- 2013년과 2017년을 비교하였을 때 결재금액과 비율 모두에서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2013: 389억 원(19.9%) → 2017: 24,8억 원(11.08%)).
- 반면, 영·유아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의 경우 전체 서비스 결재금액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 특히 노인의 경우 2013년 21.64%에서 2017년 27.35%로 결재금액의 증가율이 가장 높음.

<표 4-18> 대상별 지투서비스 결재금액 변화 추이

(단위: 원, %)

연도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2013	38,903,417,997 (19.9)	96,108,456,861 (49.3)	17,884,540,071 (9.2)	42,232,571,521 (21.6)	14,496,677,148 (7.4)
2014	30,972,209,900 (15.9)	96,605,667,911 (49.6)	20,075,988,304 (10.3)	46,995,464,546 (24.1)	14,891,862,652 (7.7)
2015	18,024,708,237 (9.7)	95,540,464,279 (51.5)	22,494,904,829 (12.1)	49,431,330,350 (26.7)	16,162,061,416 (8.7)
2016	25,066,386,252 (10.3)	123,630,203,751 (51.0)	27,843,910,660 (11.5)	66,128,419,140 (27.3)	21,363,489,090 (8.8)
2017	24,837,791,592 (11.1)	112,074,292,737 (50.0)	25,978,206,170 (11.6)	61,329,963,140 (27.4)	20,576,123,284 (9.2)

2) 결재금액은 정부보조금과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합산된 금액으로 시도별 지투서비스 예정산 값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유의

- 〈표 4-19〉, 〈표 4-20〉은 2013년 기준 총 결재금액 대비 대상자별 결재금액의 비율을 시, 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임.
- 결재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전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결재금액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성인 대상 결재금액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었음.
- 서울(75.4%), 울산(75.8%), 세종(84.3%), 경기(82.7%), 충북(73.7%), 경남(77.1%)등의 지역에서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대상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별 지원비율의 편차가 있는 지역으로 나타남.
- 반면, 광주, 대전, 강원,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성인과 노인 연령대의 결재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상별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전남의 경우 아동·청소년(43.3%)과 노인(40.1%)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아동·청소년 연령대의 결재금액이 전체 60%를 넘어 아동·청소년에 편중된 경향을 보임.
- 장애인 대상군의 전체 결재금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11.5%), 서울(11.0%)에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2.7%)과 강원(2.9%)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4-19〉 2013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원, %)

지역	전체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서울	14,525,684,521	4,167,665,081	6,783,447,954	1,459,096,880	2,115,474,606	1,603,606,180
	(100.0)	(28.7)	(46.7)	(10.0)	(14.6)	(11.0)
부산	14,011,195,091	2,919,875,611	5,983,467,649	1,718,953,000	3,388,898,831	1,122,360,014
	(100.0)	(20.8)	(42.7)	(12.3)	(24.2)	(8.0)
대구	12,571,951,092	2,488,123,624	6,276,786,046	1,009,896,331	2,797,145,091	823,342,920
	(100.0)	(19.8)	(49.9)	(8.0)	(22.3)	(6.6)
인천	9,384,005,922	2,001,853,861	4,398,797,559	838,164,548	2,145,189,954	1,079,346,192
	(100.0)	(21.3)	(46.9)	(8.9)	(22.9)	(11.5)
광주	12,119,863,313	1,340,485,962	6,835,414,032	1,779,599,168	2,164,364,151	441,406,000
	(100.0)	(11.1)	(56.4)	(14.7)	(17.9)	(3.6)
대전	17,812,642,256	2,066,599,500	7,914,098,718	2,545,895,368	5,286,048,670	1,254,955,314
	(100.0)	(11.6)	(44.4)	(14.3)	(29.7)	(7.1)
울산	4,578,839,254	1,302,574,509	2,168,064,720	309,710,000	798,490,025	220,490,000
	(100.0)	(28.5)	(47.4)	(6.8)	(17.4)	(4.8)
세종	526,507,250	169,746,250	274,081,000	63,150,000	19,530,000	16,680,000
	(100.0)	(32.2)	(52.1)	(12.0)	(3.7)	(3.2)

주: 전체 금액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결제금액의 합임. 장애인은 연령집단과 중복될 수 있음.

〈표 4-20〉 2013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재금액: 도, 특별자치도

(단위: 원, %)

지역	전체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경기	29,422,000,844	7,014,650,835	17,306,165,760	1,774,550,469	3,326,633,780	2,608,094,500
	(100.0)	(23.8)	(58.8)	(6.0)	(11.3)	(8.9)
강원	7,046,691,320	1,468,454,250	2,573,540,252	964,942,499	2,039,754,319	207,523,099
	(100.0)	(20.8)	(36.5)	(13.7)	(29.0)	(2.9)
충북	8,902,808,824	1,934,886,467	4,625,953,758	677,266,758	1,664,701,841	574,603,800
	(100.0)	(21.7)	(52.0)	(7.6)	(18.7)	(6.5)
충남	9,979,369,387	1,880,441,409	4,021,634,170	1,178,333,873	2,898,959,935	891,681,873
	(100.0)	(18.8)	(40.3)	(11.8)	(29.1)	(8.9)
전북	11,588,641,580	2,214,847,195	7,086,775,826	1,017,574,422	1,269,444,136	1,174,921,422
	(100.0)	(19.1)	(61.2)	(8.8)	(11.0)	(10.1)
전남	13,946,433,350	1,344,514,570	6,040,763,103	974,122,420	5,587,033,255	901,205,420
	(100.0)	(9.6)	(43.3)	(7.0)	(40.1)	(6.5)
경북	11,313,595,610	2,509,420,060	4,760,451,697	436,920,981	3,606,802,872	307,004,581
	(100.0)	(22.2)	(42.1)	(3.9)	(31.9)	(2.7)
경남	11,824,877,270	3,100,305,048	6,018,101,422	1,032,549,350	1,673,921,449	859,035,830
	(100.0)	(26.2)	(50.9)	(8.7)	(14.2)	(7.3)
제주	5,573,879,568	978,973,761	3,040,913,200	103,814,000	1,450,178,607	410,420,000
	(100.0)	(17.6)	(54.6)	(1.9)	(26.0)	(7.4)

주: 전체 금액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결재금액의 합임. 장애인은 연령집단과 중복될 수 있음.

- 〈표 4-21〉, 〈표 4-22〉는 2014년 기준 총 결재금액 대비 대상자별 결재금액의 비율을 시, 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임.
- 서울(72.9%), 울산(70.9%), 세종(87.0%), 경기(79.2%), 충북(73.7%), 경남(70.5%)등의 지역이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대상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별 지원비율의 편차가 있는 지역으로 나타남.
 - 충북의 경우 2013년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대상을 합한 비율이 73.7%였으나, 2014년 56.3%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고른 대상별 비율을 보이고 있었음
 - 부산(47.4%), 대전(43.6%)의 경우 성인과 노인대상 결재금액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른 결재금액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세종은 노인대상 결재금액이 약 884만 원(1.6%), 제주는 성인대상 결재금액이 약 1억 2166만 원(1.8%)에 불과하여 불균형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장애인 대상군의 전체 결재금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13.9%), 경기(12.0%)에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2.2%)과 세종(2.9%)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4-21〉 2014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재금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원, %)

지역	전체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서울	15,028,785,967	3,742,591,138	7,220,104,034	1,605,511,761	2,460,579,034	1,685,528,111
	(100.0)	(24.9)	(48.0)	(10.7)	(16.4)	(11.2)
부산	15,806,339,097	2,704,773,259	5,602,540,398	2,598,754,649	4,900,270,791	503,970,309
	(100.0)	(17.1)	(35.4)	(16.4)	(31.0)	(3.2)
대구	13,033,230,492	2,066,382,600	6,255,428,988	1,589,695,004	3,121,723,900	800,345,124
	(100.0)	(15.9)	(48.0)	(12.2)	(24.0)	(6.1)
인천	10,837,488,596	1,443,896,950	5,802,570,221	1,076,013,209	2,515,008,216	1,500,980,190
	(100.0)	(13.3)	(53.5)	(9.9)	(23.2)	(13.9)
광주	10,471,233,702	1,185,694,750	5,957,949,342	1,368,622,010	1,958,967,600	226,674,473
	(100.0)	(11.3)	(56.9)	(13.1)	(18.7)	(2.2)
대전	15,582,779,249	1,494,268,750	7,293,248,337	2,502,107,100	4,293,155,062	1,155,648,350
	(100.0)	(9.6)	(46.8)	(16.1)	(27.6)	(7.4)
울산	5,315,260,417	980,304,020	2,791,804,685	225,008,012	1,318,143,700	202,210,012
	(100.0)	(18.4)	(52.5)	(4.2)	(24.8)	(3.8)
세종	539,102,250	162,264,000	306,678,250	61,325,000	8,835,000	14,890,000
	(100.0)	(30.1)	(56.9)	(11.4)	(1.6)	(2.8)

주: 전체 금액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결재금액의 합임. 장애인은 연령집단과 중복될 수 있음.

〈표 4-22〉 2014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재금액: 도, 특별자치도

(단위: 원, %)

지역	전체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경기	29,658,837,231	5,556,812,729	17,961,107,130	2,140,479,347	4,000,438,025	3,570,829,978
	(100.0)	(18.7)	(60.6)	(7.2)	(13.5)	(12.0)
강원	7,968,116,711	984,723,250	3,112,478,449	1,203,277,996	2,667,637,016	287,615,000
	(100.0)	(12.3)	(39.1)	(15.1)	(33.5)	(3.6)
충북	5,461,914,974	964,421,965	2,776,604,929	498,770,500	1,222,117,580	469,599,500
	(100.0)	(17.7)	(50.8)	(9.1)	(22.4)	(8.6)
충남	10,837,116,207	1,818,094,516	4,286,389,166	1,238,605,499	3,494,027,026	1,027,204,499
	(100.0)	(16.8)	(39.6)	(11.4)	(32.2)	(9.5)
전북	11,292,289,752	1,733,701,363	6,649,204,280	1,238,003,840	1,671,380,269	1,103,155,090
	(100.0)	(15.4)	(58.9)	(11.0)	(14.8)	(9.8)
전남	13,763,327,439	1,197,992,564	5,881,018,003	755,258,000	5,929,058,872	780,557,500
	(100.0)	(8.7)	(42.7)	(5.5)	(43.1)	(5.7)
경북	10,714,667,178	1,662,289,500	5,190,251,341	445,244,045	3,416,882,292	352,607,545
	(100.0)	(15.5)	(48.4)	(4.2)	(31.9)	(3.3)
경남	11,518,773,327	2,022,384,750	6,108,121,526	1,407,651,014	1,980,616,037	914,586,975
	(100.0)	(17.6)	(53.0)	(12.2)	(17.2)	(7.9)
제주	6,820,068,066	1,251,613,796	3,410,168,833	121,661,315	2,036,624,122	295,460,000
	(100.0)	(18.4)	(50.0)	(1.8)	(29.9)	(4.3)

주: 전체 금액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결재금액의 합임. 장애인은 연령집단과 중복될 수 있음.

- <표 4-23> , <표 4-24> 는 2015년 기준 총 결재금액 대비 대상자별 결재금액의 비율을 시, 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임.
- 영유아 대상의 결재금액 비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타 연령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음.
- 전년도의 결과와 달리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대상의 비율이 70%를 넘는 지역은 세종(89.5%)이 유일하여 대상별 지원비율의 편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특히 세종은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84.7%로 타 연령대에 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업이 집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인 대상 결재금액의 비율은 연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전(19.1%), 서울(17.5%), 대구(17.5%), 경남(16.7%)에서 특히 성인대상 결재금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남의 경우 노인대상 결재금액의 비율이 46.4%로 나타나 노인대상 지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반면 경기(15.6%)와 경남(17.7%)는 타 지역에 비하여 노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 대상군의 전체 결재금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15.4%), 인천(14.4%), 경기(13.4%)에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2.5%), 광주(3.2%)과 세종(1.4%)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4-23〉 2015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원, %)

지역	전체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서울	11,592,879,250	1,284,835,800	5,835,446,113	2,028,630,548	2,443,966,789	1,781,612,848
	(100.0)	(11.1)	(50.3)	(17.5)	(21.1)	(15.4)
부산	16,997,649,057	2,823,790,138	6,156,117,763	2,410,597,097	5,607,144,059	424,554,606
	(100.0)	(16.6)	(36.2)	(14.2)	(33.0)	(2.5)
대구	11,922,620,383	865,491,610	5,883,301,163	2,085,787,511	3,088,040,099	864,941,204
	(100.0)	(7.3)	(49.4)	(17.5)	(25.9)	(7.23)
인천	11,223,965,319	1,135,212,477	6,392,804,862	1,151,066,544	2,544,881,436	1,612,109,434
	(100.0)	(10.1)	(57.0)	(10.3)	(22.7)	(14.4)
광주	8,720,261,550	462,904,071	4,866,052,371	1,226,472,628	2,164,832,480	277,121,500
	(100.0)	(5.3)	(55.8)	(14.1)	(24.8)	(3.2)
대전	15,081,758,370	1,210,704,182	6,663,826,796	2,884,577,297	4,322,650,095	1,291,779,501
	(100.0)	(8.0)	(44.2)	(19.1)	(28.7)	(8.6)
울산	4,294,766,551	826,670,662	1,570,353,157	539,414,180	1,358,328,552	307,731,316
	(100.0)	(19.3)	(36.6)	(12.6)	(31.6)	(7.2)
세종	659,383,711	31,996,000	558,290,211	66,217,500	2,880,000	9,432,000
	(100.0)	(4.9)	(84.7)	(10.0)	(0.4)	(1.4)

주: 전체 금액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결제금액의 합임. 장애인은 연령집단과 중복될 수 있음.

〈표 4-24〉 2015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제금액: 도, 특별자치도

(단위: 원, %)

지역	전체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경기	25,765,575,920	2,637,115,301	16,676,529,780	2,431,615,923	4,020,314,916	3,442,838,023
	(100.0)	(10.2)	(64.7)	(9.4)	(15.6)	(13.4)
강원	7,500,351,840	326,820,995	4,196,006,087	722,460,742	2,255,064,016	312,629,132
	(100.0)	(4.4)	(55.9)	(9.6)	(30.1)	(4.2)
충북	8,212,783,739	840,703,050	4,525,116,121	795,961,939	2,051,002,629	659,307,590
	(100.0)	(10.2)	(55.1)	(9.7)	(25.0)	(8.0)
충남	9,744,250,164	773,748,956	3,834,696,617	1,443,185,039	3,692,619,552	1,190,103,289
	(100.0)	(7.9)	(39.4)	(14.8)	(37.9)	(12.2)
전북	12,286,165,816	988,889,013	7,020,824,869	1,574,719,545	2,701,732,389	1,347,409,913
	(100.0)	(8.1)	(57.1)	(12.8)	(22.0)	(11.0)
전남	12,166,662,432	604,379,712	5,277,658,218	635,778,352	5,648,846,150	682,902,727
	(100.0)	(5.0)	(43.4)	(5.2)	(46.4)	(5.6)
경북	10,703,289,447	539,979,075	6,552,558,929	486,379,412	3,124,372,031	479,023,282
	(100.0)	(5.0)	(61.2)	(4.5)	(29.2)	(4.5)
경남	10,930,657,189	1,876,862,450	5,300,281,298	1,821,529,202	1,931,984,239	1,185,577,300
	(100.0)	(17.2)	(48.5)	(16.7)	(17.7)	(10.8)
제주	6,688,386,947	794,604,745	3,230,599,921	190,511,366	2,472,670,915	292,987,754
	(100.0)	(11.9)	(48.3)	(2.9)	(37.0)	(4.4)

주: 전체 금액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결제금액의 합임. 장애인은 연령집단과 중복될 수 있음.

- 〈표 4-25〉, 〈표 4-26〉은 2016년 기준 총 결재금액 대비 대상자별 결재금액의 비율을 시, 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임.
-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결재금액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충남(46.7%)의 경우 이들 연령대의 비율이 유일하게 50%이하로 떨어진 지역으로 나타남.
 - 충남의 경우 성인(15.4%)과 노인(37.9%) 비율의 합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른 연령대별 결재금액 분포를 보임.
 - 전남과 제주의 경우 아동·청소년과 노인의 결재금액 비율이 각각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연령대에 대한 비율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음.
 - 성인의 경우, 대전(18.4%), 서울(16.3%), 울산(16.2%), 충남(15.4%)에서 해당 연령대의 결재금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 대상군의 전체 결재금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14.4%), 경기(16.0%)에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3.4%), 광주(2.9%), 세종(1.9%), 제주(2.2%)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표 4-27〉, 〈표 4-28〉은 2017년 기준 총 결재금액 대비 대상자별 결재금액의 비율을 시, 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임.
- 결재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대상별 지원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세종, 경기, 강원으로 해당 지역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결재금액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의 결재금액 비율은 최소 35.3%(울산)~최대 84.9%(세종)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대구,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아동·청소년과 노인 대상 결재금액 비율이 높은 편으로 지원이 양분화 되는 경향을 보임.
 - 울산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결재금액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고른 편으로 대상별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25〉 2016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재금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원, %)

지역	전체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서울	13,384,637,634	1,490,749,979	6,998,147,080	2,180,459,329	2,715,281,246	1,928,921,884
	(100.0)	(11.1)	(52.3)	(16.3)	(20.3)	(14.4)
부산	19,827,357,336	3,624,896,108	7,603,099,631	2,664,568,123	5,934,793,474	667,161,400
	(100.0)	(18.23)	(38.4)	(13.4)	(29.9)	(3.4)
대구	13,531,179,134	1,067,939,058	6,161,084,918	1,779,177,775	3,982,977,383	890,231,763
	(100.0)	(8.2)	(47.4)	(13.7)	(30.7)	(6.9)
인천	15,669,317,679	1,979,849,136	8,030,536,671	1,611,252,758	4,047,679,114	1,739,904,973
	(100.0)	(12.6)	(51.3)	(10.3)	(25.8)	(11.1)
광주	12,763,937,596	594,784,801	6,743,081,958	1,791,153,270	3,634,917,567	370,310,260
	(100.0)	(4.7)	(52.8)	(14.0)	(28.5)	(2.9)
대전	18,657,697,083	1,309,282,032	8,336,044,862	3,423,649,255	5,588,720,934	1,459,332,298
	(100.0)	(7.0)	(44.7)	(18.4)	(30.0)	(7.8)
울산	6,292,845,790	1,363,617,280	2,085,804,123	1,018,662,516	1,824,761,871	654,813,341
	(100.0)	(21.7)	(33.2)	(16.2)	(29.0)	(10.4)
세종	618,378,500	46,296,000	513,349,500	58,553,000	180,000	11,808,000
	(100.0)	(7.5)	(83.0)	(9.5)	(0.0)	(1.9)

주: 전체 금액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결재금액의 합임. 장애인은 연령집단과 중복될 수 있음.

〈표 4-26〉 2016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재금액: 도, 특별자치도

(단위: 원, %)

지역	전체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경기	38,984,703,781	4,086,552,616	24,243,466,510	4,369,850,941	6,284,833,714	6,251,510,895
	(100.0)	(10.5)	(62.2)	(11.2)	(16.1)	(16.0)
강원	10,226,877,339	554,357,900	5,821,203,237	902,923,992	2,948,392,210	485,781,400
	(100.0)	(5.4)	(56.9)	(8.8)	(28.8)	(4.8)
충북	10,740,240,201	1,107,297,773	5,881,826,733	1,056,063,326	2,695,052,369	842,253,806
	(100.0)	(10.3)	(54.8)	(9.8)	(25.1)	(7.8)
충남	12,738,797,714	1,093,206,302	4,852,669,786	1,966,426,097	4,826,495,529	1,613,499,306
	(100.0)	(8.6)	(38.1)	(15.4)	(37.9)	(12.7)
전북	16,684,099,338	1,336,141,473	9,031,858,711	1,911,679,817	4,404,419,337	1,507,140,665
	(100.0)	(8.0)	(54.1)	(11.5)	(26.4)	(9.0)
전남	14,465,463,498	851,372,991	6,526,573,096	590,049,556	6,497,467,855	614,479,776
	(100.0)	(5.9)	(45.1)	(4.1)	(44.9)	(4.3)
경북	14,526,907,114	747,831,186	8,940,347,096	576,535,600	4,262,193,232	582,630,960
	(100.0)	(5.2)	(61.5)	(4.0)	(29.3)	(4.0)
경남	14,421,338,457	2,255,138,543	7,856,961,875	1,545,813,164	2,763,424,875	1,546,252,729
	(100.0)	(15.6)	(54.5)	(10.7)	(19.2)	(10.7)
제주	9,135,141,648	1,017,073,074	4,004,148,006	397,092,139	3,716,828,429	197,455,639
	(100.0)	(11.1)	(43.8)	(4.4)	(40.7)	(2.2)

주: 전체 금액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결재금액의 합임. 장애인은 연령집단과 중복될 수 있음.

〈표 4-27〉 2017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재금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원, %)

지역	전체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서울	11,541,547,841	1,254,066,234	6,001,178,905	1,885,739,002	2,400,563,700	1,724,564,062
	(100.0)	(10.9)	(52.0)	(16.3)	(20.8)	(14.9)
부산	19,383,940,425	3,741,465,188	8,069,381,296	2,369,574,082	5,203,519,859	837,114,632
	(100.0)	(19.3)	(41.6)	(12.2)	(26.8)	(4.3)
대구	12,624,233,608	2,134,111,440	4,997,134,601	1,562,881,421	3,930,106,146	822,823,495
	(100.0)	(16.9)	(39.6)	(12.4)	(31.1)	(6.5)
인천	17,890,551,491	2,186,679,099	8,842,676,175	1,915,171,400	4,946,024,817	1,995,110,770
	(100.0)	(12.2)	(49.4)	(10.7)	(27.6)	(11.2)
광주	10,164,702,147	492,303,850	5,322,430,502	1,738,341,140	2,611,626,655	459,700,090
	(100.0)	(4.8)	(52.4)	(17.1)	(25.7)	(4.5)
대전	16,803,106,937	1,460,160,807	7,224,760,119	3,101,123,254	5,017,062,757	1,550,650,604
	(100.0)	(8.7)	(43.0)	(18.5)	(29.9)	(9.2)
울산	4,728,718,467	1,000,346,100	1,669,230,326	1,176,843,750	882,298,291	650,897,250
	(100.0)	(21.2)	(35.3)	(24.9)	(18.7)	(13.8)
세종	812,868,800	91,960,000	690,284,800	30,624,000	-	13,248,000
	(100.0)	(11.3)	(84.9)	(3.8)	(0.0)	(1.6)

주: 전체 금액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결재금액의 합임. 장애인은 연령집단과 중복될 수 있음.

〈표 4-28〉 2017년 대상자별 지투서비스 결재금액: 도, 특별자치도

(단위: 원, %)

지역	전체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경기	40,476,082,532	4,405,551,847	24,762,136,690	4,318,693,243	6,989,700,752	5,944,231,343
	(100.0)	(10.9)	(61.2)	(10.7)	(17.3)	(14.7)
강원	8,634,733,029	524,839,800	5,218,436,579	654,461,840	2,236,994,810	331,266,400
	(100.0)	(6.1)	(60.4)	(7.6)	(25.9)	(3.8)
충북	8,460,729,541	1,018,699,200	4,227,539,852	906,256,643	2,308,233,846	850,847,635
	(100.0)	(12.0)	(50.0)	(10.7)	(27.3)	(10.1)
충남	12,040,518,615	1,019,322,800	4,460,633,170	1,659,404,237	4,901,158,408	1,430,078,087
	(100.0)	(8.5)	(37.0)	(13.8)	(40.7)	(11.9)
전북	17,556,376,339	1,341,645,495	9,104,149,562	1,789,951,292	5,320,629,990	1,495,189,492
	(100.0)	(7.6)	(51.9)	(10.2)	(30.3)	(8.5)
전남	14,267,322,635	879,666,391	6,411,240,448	579,462,253	6,396,953,543	727,857,771
	(100.0)	(6.2)	(44.9)	(4.1)	(44.8)	(5.1)
경북	11,310,576,133	695,246,050	6,632,133,632	574,889,455	3,408,306,996	487,464,600
	(100.0)	(6.1)	(58.6)	(5.1)	(30.1)	(4.3)
경남	9,866,705,127	1,623,157,789	5,468,308,536	1,172,061,044	1,603,177,758	1,155,229,969
	(100.0)	(16.5)	(55.4)	(11.9)	(16.2)	(11.7)
제주	7,657,539,974	968,569,504	2,972,637,558	542,728,106	3,173,604,806	119,849,086
	(100.0)	(12.6)	(38.8)	(7.1)	(41.4)	(1.6)

주: 전체 금액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결재금액의 합임. 장애인은 연령집단과 중복될 수 있음.

2. 사업유형별 서비스 결재금액 분석

- 〈표 4-29〉에서는 사업 유형(표준모델, 자체개발모델)에 따른 대상별 결재금액 및 그 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표준모델의 결재금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전체 결재금액 중 표준모델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율은 2013년 91.9%에서 2017년 82.7%로 감소하였음.
- 연령대 별로 나누어 확인해보면 전체 연령대와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이는 연령대는 영유아(2013: 97.81%, 2017: 89.95%), 성인(2013: 79.48%, 2017: 59.85%), 노인(2013: 87.34%, 2017: 68.39%)으로 나타남.
- 반면 아동·청소년 연령대의 경우 연도별로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13: 93.83%, 2017: 94.28%), 장애인의 경우 반대로 연도에 따라 표준모델의 결재금액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2013: 84.34%, 2017: 88.43%).
- 이러한 연령대 및 대상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표준모델이 전체 지투자사업 결재금액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표준모델 중심의 사업 제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표 4-29〉 표준모델과 자체개발모델의 대상별 결재금액

(단위: 원, %)

대상	연도	표준모델		자체개발모델	
		결재금액(원)	비율(%)	결재금액(원)	비율(%)
전체	2013	179,330,350,400	91.9	15,798,636,050	8.1
	2014	178,120,903,900	91.5	16,528,426,750	8.5
	2015	165,316,953,800	89.1	20,174,453,910	10.9
	2016	198,434,378,000	81.8	44,234,541,870	18.2
	2017	185,496,765,700	82.7	38,723,487,950	17.3
영유아	2013	38,050,685,780	97.8	852,732,217	2.2
	2014	30,265,002,900	97.7	707,207,000	2.3
	2015	16,341,855,600	90.7	1,682,852,637	9.3
	2016	22,720,882,980	90.6	2,345,503,272	9.4
	2017	22,342,675,110	90.0	2,495,116,482	10.1
아동·청소년	2013	90,177,139,960	93.8	5,931,316,901	6.2
	2014	90,849,570,550	94.0	5,756,097,361	6.0
	2015	88,916,625,360	93.1	6,623,838,919	6.9
	2016	116,506,775,900	94.2	7,123,427,851	5.8
	2017	105,660,413,000	94.3	6,413,879,737	5.7
성인	2013	14,215,292,480	79.5	3,669,247,591	20.5
	2014	15,496,526,170	77.2	4,579,462,134	22.8
	2015	16,771,477,250	74.6	5,723,427,579	25.4
	2016	15,247,826,330	54.8	12,596,084,330	45.2
	2017	15,547,162,380	59.9	10,431,043,790	40.2
노인	2013	36,887,232,180	87.3	5,345,339,341	12.7
	2014	41,509,804,290	88.3	5,485,660,256	11.7
	2015	43,286,995,580	87.6	6,144,334,770	12.4
	2016	43,958,892,720	66.5	22,169,526,420	33.5
	2017	41,946,515,190	68.4	19,383,447,950	31.6
장애인	2013	12,225,891,840	84.3	2,270,785,308	15.7
	2014	12,690,677,760	85.2	2,201,184,892	14.8
	2015	13,830,135,000	85.6	2,331,926,416	14.4
	2016	19,291,374,770	90.3	2,072,114,320	9.7
	2017	18,194,473,630	88.4	2,381,649,654	11.6

제 5 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획 및 성과관리 현황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획 < & 성과관리 현황 분석 <

제1절 분석 개요

- 본 장에서는 시도별 지투자사업의 기획 과정과 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제시함.
- 현황 파악을 위해 17개 시도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지 개발을 위해 시도 지원단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FGI를 진행함.
 - 10월4일(전북 지원단), 10월17일(대전, 충남, 충북 지원단)
 - FGI 분석 결과 및 연구진 회의를 바탕으로 시도별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기획 및 성과관리 현황을 파악을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함.
 - 설문지는 사업기획, 성과관리, 구조조정과 관련한 내용 포함 [부록 1 참조]
 - 개발된 설문지는 공문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담당자에 배포하였고, 이메일을 통한 회신을 요청하였음. 설문 응답은 시도 담당자 및 지원단이 논의하여 시도의 대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 자료 수집은 약 1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검토과정을 통해 확실하지 않은 응답은 유선 상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치고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³⁾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였음.
 - 자료는 Excel에 입력 후, SPSS자료로 전환하여 분석하였음.

3) 시도 담당자 변경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항목의 경우에 제한

제2절 분석 결과

1. 사업기획

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획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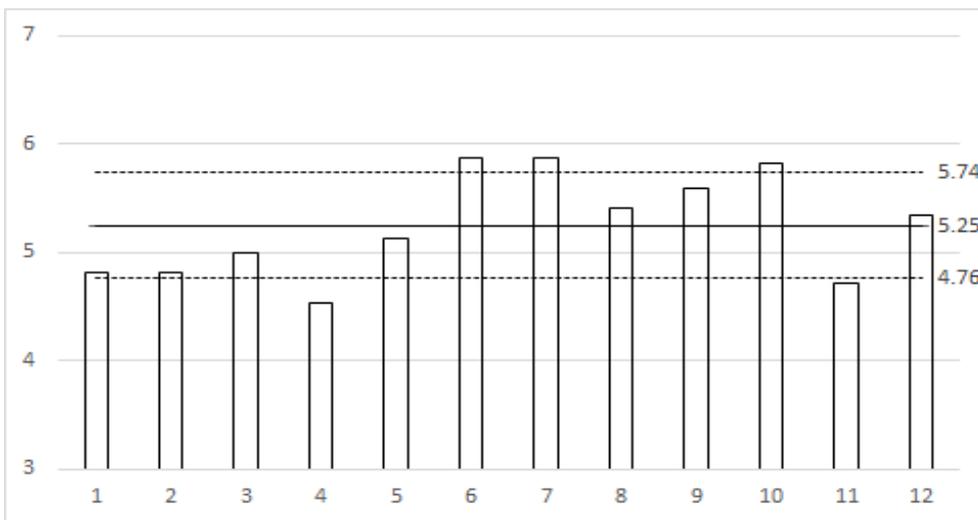
- 지투사업의 사업기획에 대한 인식을 12개의 질문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는 <표 5-1> 과 같으며, [그림 5-1] 은 이를 시각화 하고 있음.
- <표 5-1> 에 제시된 질문을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질문에 대한 동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지투사업의 사업기획에 대한 모든 항목의 응답의 평균은 5.25점(SD=0.49)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질문 중 6개 항목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었고, 나머지 6개 항목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전체 질문에 대한 응답 중 2개 항목이 1표준편차 이하($m < 4.76$)의 응답평균 점수를 보여주었음.
 - “4. 우리지역은 매년 지역의 욕구조사에 기반 하여 사업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평균은 4.53점(SD=1.55)으로 모든 항목 중 수준이 가장 낮았음.
 - “1. 우리지역은 지투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와 “2. 우리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욕구의 다양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4번 문항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 두 문항 또한 평균 이하의 응답수준(1번 $m=4.82$, $SD=1.01$; 2번 $m=4.82$, $SD=0.95$)을 보여주었음.
 - “11. 지역사회서비스 표준모델이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이 좋다.”

의 질문에 대한 응답평균은 4.71점(SD=1.49)으로 모든 항목 중 두 번째로 수준이 낮았음.

- 즉, 지자체 사업기획과 관련하여 시도에서는 지역의 욕구조사기반 사업기획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표준모델은 다양하게 분화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질문에 대한 응답 중 3개 항목이 1표준편차 이상($m > 5.74$)의 응답평균 점수를 보여주었음.
 - “6. 우리지역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잠재적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서비스가 개발·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평균은 5.88점(SD=0.86), “7. 우리지역은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평균은 5.88점(SD=0.60)으로 전체 질문에 대한 응답 중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음.
 - “신규사업의 기획·개발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복지부의 적극적인 표준모델 개발이 뒷받침 되는 것이 중요하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평균은 5.82점(SD=1.01)로 위 두 질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음.
 - 즉, 지자체 사업기획과 관련하여 시도에서는 잠재적 수요자의 욕구와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부에서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종합해보면, 시도에서는 발굴되지 않은 잠재육구의 존재와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육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육구의 사업반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부 측에서 지역사회 육구파악을 위한 표준화된 육구조사방법을 개발하여 시도에 교육 및 안내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복지부의 적극적인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으나, 현재의 개발되어 있는 표준모델이 더 다양하게 세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표준모델의 종류를 다양화하거나 양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표준모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기획에 대한 인식(n=17)



〈표 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기획에 대한 인식(n=17)

질문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우리지역은 지투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3	6	4.82	1.01
2. 우리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욕구의 다양성(ex. 인구분포, 특수한 욕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3	6	4.82	0.95
3. 우리지역은 지역 내 공급 가능 기관과 제공인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4	6	5.00	0.61
4. 우리지역은 매년 지역의 욕구조사에 기반 하여 사업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1	6	4.53	1.55
5. 우리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지투사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3	7	5.12	1.05
6. 우리지역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잠재적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서비스가 개발·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7	5.88	0.86
7. 우리지역은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7	5.88	0.60
8. 우리지역은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3	7	5.41	1.12
9.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3	7	5.59	1.23
10. 신규사업의 기획·개발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복지부의 적극적인 표준모델 개발이 뒷받침 되는 것이 중요하다.	4	7	5.82	1.01
11. 지역사회서비스 표준모델이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이 좋다.	2	6	4.71	1.49
12.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것보다 기존사업을 점검·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7	5.35	1.41
항목 평균	4.33	6.00	5.25	0.49

나. 계획 수립 및 확정 시 고려사항

- <표 5-2> 는 지투사업 계획 수립과 확정 시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질문의 응답을 위해 여섯 가지 항목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게 제시하였음.
 - 응답 의견이 제시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기타의견으로 응답
-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한 항목을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표준화 점수를 계산하였음.
- 지투사업 계획 수립과 확정 시 고려하는 사항의 1순위로는 지역사회의 수요 및 공급역량이 가장 많았고(n=7), 2순위로는 대상별 서비스 제공의 형성(n=5), 3순위로는 서비스의 실적목표와 달성도(n=5)가 가장 많았음.
- 1순위의 두 가지 기타의견으로 욕구중심 서비스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가 제시되었음.
- 표준화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수요 및 공급역량(31점), 대상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23점), 서비스 효과성(13점) 순으로 나타남.

<표 5-2> 지투사업 계획 수립과 확정 시 고려사항(n=17)

(단위: 개, %)

항목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	표준화 점수
1. 지역사회의 수요 및 공급역량	7(41.2)	4(23.5)	2(11.8)	31
2. 대상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3(17.6)	5(29.4)	4(23.5)	23
3. 서비스의 실적목표와 달성도	0(0.0)	2(11.8)	5(29.4)	9
4. 서비스 만족도	1(5.9)	1(5.9)	3(17.6)	8
5. 서비스 효과성(이용자 변화)	2(11.8)	3(17.6)	1(5.9)	13
6. 지투사업의 목적 부합성	2(11.8)	2(11.8)	2(11.8)	12
7. 기타	2(11.8)	0(0.0)	0(0.0)	6

다. 사업 발굴·기획·개발을 위한 절차

□ 지투사업 발굴·기획·개발을 위한 체계화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시도 중 13개 시도가 체계화된 절차가 있다고 응답하였음(<표 5-3>).

○ 4개 시도는 체계화된 절차가 없음.

□ 체계화된 절차가 있다고 응답한 시도를 대상으로 현재의 절차가 신규사업 개발에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음, 4점: 보통, 7점: 매우 그러함)를 통해서 질문한 결과 평균 5.39점(SD=0.77)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표 5-4>).

○ 최소값이 4인 것을 미루어보아 절차의 효과성은 최소한 보통수준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5-3> 지투사업 발굴·기획·개발을 위한 체계화된 절차

(단위: 개, %)

질문항목	있음	없음
체계화된 절차 마련 여부	13(76.5)	4(23.5)

<표 5-4> 지투사업 발굴·기획·개발을 위한 절차의 효과성(n=13)

질문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절차의 효과성	4	6	5.39	0.77

□ 각 시도의 사업 발굴·기획·개발을 위한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5-5>, <표 5-6>에 제시되어 있음.

〈표 5-5〉 시도의 지투자사업 발굴·기획·개발을 위한 절차 종합(체계화된 경우)

시도	내 용
1	① 자치구를 통한 신규사업 의견 수렴(연 2회) ② 일반시민 및 제공기관 대상 신규사업 아이디어 수렴(연중) - 일반시민 및 제공기관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는 지원단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채택여부 결정(연간 1회 진행) - 시도 및 지원단 공동 심의 ③ 신규사업 자체 개발 후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사업 표준안 마련
2	① 시민·이용자·제공기관 등의 전달체계를 통해 신규사업 수요조사(연중 상시) ②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문헌연구, 지역사회문제 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수요분석(연중 상시) ③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신규아이디어 발굴(하반기) ④ 제공기관 발전협의회·서비스별 전문위원 등 전문가 FGI 등을 통해 신규사업 개발의 타당성 확보(하반기) ⑤ 서비스 영역별 품질개선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하반기) ⑥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연말)
3	① 신규사업 개발 계획: 지역 수요분석(육구조사 등), 기본계획수립 ② 자체 및 공모전 실시 ③ 신규사업 개발(공모 선정사업 또는 자체사업) - TFT 구성 운영, 유관기관회의, 전문가 자문 등 ④ 심의위원회 시행: 사업계획서 등 검토, 자체 승인여부검토 ⑤ 복지부 승인 ⑥ 서비스 시행 및 사후관리: 사업설명회, 제공기관 컨설팅, 현장 모니터링 실시
4	○ 시기: 하반기 신규사업 공모 및 아이디어 공모 ○ 방법: 신규사업 공모 → 사업계획서 분석 → 군구 의견 취합 → 유관기관 등 전문가 회의 자문 → 신규사업 심의위원회 → 복지부 심의결과 아이디어 공모 → 아이디어 심의위원회 → 선정된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 시 심의위원회 위원회 ○ 구성: 시 심의위원 회의 구성(시, 지원단장, 분야별 전문위원 등)
5	① 문헌연구(2~3월) ② 육구조사(4~5월) ③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또는 기존 사업 재구조화할 사업 선정(5~6월) ④ 신규사업 내용 설계에 대한 관련자 초점집단면접, 자문위원 구성(6~8월) ⑤ 서비스 잠재 이용자 수요자(9월) ⑥ 사업관련 자문위원(10월) ⑦ 신규사업 표준안 작성(11~12월)
6	○ 심의위원회 구성 중에 있음 (11월 심의예정: 신규사업 심의 및 승인/기존사업 변경사항 승인)
7	○ 서비스별 실무협의회, 시군 의견조회 및 간담회 등으로 사전 조사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심의위원회: 7명(당연직, 학계, 현장 등)

시도	내 용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 및 심사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을 통하여 사업화 추진(연중) ○ 지원단이 직접 개발: 부문별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하여 분야별 필요서비스를 도출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군 설명회 등으로 현장의견 수렴(연중) ○ 시군이 직접 개발: 시군별 필요서비스 개발 시 지원단이 직접 시군을 방문하여 1:1 컨설팅을 제공(연중) ○ 공통: 신규사업 추진 시 지원단 컨설팅 우선 이수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의 현 이슈 및 개입되어야 할 주요 문제 선정(지원단) ② 대응할 수 있는 아이템 공모(지원단 운영위원, 자문위원, 제공기관 공모) ③ 관련 기관 방문, 수요와 공급 자원 파악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필요 유무 등 사업의 가능성 분석 ④ 도·시·군 간담회에서 신규사업 시행 및 예산책정이 가능한 시군 파악 ⑤ 도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⑥ 시범서비스로 1년간 진행 후 지속적 운영 여부 및 지역 확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매해 10월 공모, 11월 선정심의, 12월 신규사업 공고 ○ 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6인(학계 및 전문가, 지원단장) ○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신규사업 공모 (시군구) ① 담당자 개발→지원단 컨설팅→도 제출 <li style="padding-left: 40px;">② 제공기관에 신규사업 공모 안내→제공기관 신규사업 제안서 시군 제출→담당자 유사·중복사업 검토 후 도 제출 (도) 제출된 제안서 국내 유사중복사업 검토 (지원단) 유사중복사업 제외한 제안서에 대한 검토 후 심의자료 지원 (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신규사업 선정 (지원단) 선정된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컨설팅(기준정보 확정)→복지부 보고 (도) 신규사업 공고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모 또는 자체 계획 수립 ② 시군 수요조사 ③ 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④ 복지부 승인 요청(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회(상하반기) 신규사업 및 기준정보 의견수렴 후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음.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 개발 방법: 신규사업 공모전 실시, 시도 자체 ○ 신규사업 개발 과정: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관련 전문가 자문, TF팀 회의 ○ 신규사업 개발 TF팀: 시도 사업담당자, 지원단, 행정시 ○ 신규사업 개발 근거: 도민 대상 지역사회서비스 욕구조사, 제공기관 대상 수요 조사 등

〈표 5-6〉 시도의 지투사업 발굴·기획·개발을 위한 절차 종합(체계화되지 않은 경우)

시도	내 용
1	○ 공식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고, 매년 지투사업의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진행
2	○ 이용자 욕구조사 → 신규사업 아이디어공모 → 제공기관 의견수렴 → 전문가 회의 → 신규사업 기획 → 사업설명회 → 신규사업 개발
3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주기: 2017년도를 제외하고 개발 기획 ○ 신규 서비스 개발 절차 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아이템 발굴 → 사업화(전문가 FGI, 세미나 등을 통해) ② 제공기관-시·군을 통해 사업 제안 →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화
4	○ 시군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적평가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제안, 도 단위 워크숍 및 우수 제공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기획·개발 기반 마련

□ 〈표 5-5〉 와 〈표 5-6〉 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5-7〉 과 같음.

○ 1번부터 13번까지의 시도는 체계화된 절차가 있다고 응답한 시도이며, 14번부터 17번까지의 시도는 체계화된 절차가 없다고 응답한 시도임.

□ 신규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17개 시도 중 12개의 시도(70.6%)에서 욕구조사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1개 시도(64.7%)에서 공모전 등을 수행하고 있었음.

□ 신규 사업 심의 주체를 살펴보면, 전체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64.7%)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음.

○ 체계화된 절차가 있다고 응답한 13개 시도 중에서는 10개 시도(76.9%)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1개 시도는 추진 중에 있었음.

○ 반면, 체계화된 절차가 없다고 응답한 4개 시도 중에서는 1개 시도(25.0%)만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음.

□ 대부분의 시도가 지투사업 발굴·기획·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수행시기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였으며, 특히 체계화된 절차가 없다고 응답한 시도는 모두 수행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음.

〈표 5-7〉 시도의 지투자사업 발굴·기획·개발을 위한 절차 요약

(단위: 개, %)

시도	아이디어 제공 및 개발					심의주체			수행 시기 명시
	시민/공모전	시군구	제공 기관	시도·지 원단 /육구 조사	전문가	시도	지원단	심의 위원회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합계	10 (64.7)	9 (52.9)	7 (41.2)	12 (70.6)	10 (58.8)	4 (23.5)	4 (23.5)	11 (64.7)	4 (23.5)

주: 1) <표 5-6>, <표 5-7>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는 해당 내용이 있으나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로 합계에 포함하지 않음.

2) 1~13은 체계화된 절차가 있다고 응답한 시도, 14~17은 체계화된 절차가 없다고 응답한 시도임

라. 사업의 조정 및 폐지를 위한 기준

□ 지투자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시도 중 10개의 시도가 체계화된 절차가 있다고 응답하였음(〈표 5-8〉).

○ 7개 시도는 체계화된 절차가 없음.

〈표 5-8〉 지투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기준

(단위: 개, %)

질문항목	있음	없음
조정 및 폐지 결정 기준	10(58.8)	7(41.2)

□ 각 시도의 지투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5-9〉에 제시되어 있음.

○ 8개의 응답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게 하였음.

□ 지투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기준이 있는 10개 시도의 응답을 살펴보면, 기타 의견을 제외하고 전년도 서비스 이용률을 기준으로 조정 및 폐지를 시행한다는 의견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부의 지침에 따른다는 의견이 4건, 전년도 예산의 집행률을 기준으로 조정 및 폐지를 시행한다는 의견과 서비스 유사·중복 고려가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음.

〈표 5-9〉 지투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세부 기준

(단위: 개)

응답항목	빈도	세부내용
① 전년도 예산의 집행률	3	- 최근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시군 별) - 집행률 80% 미만 사업 조정 및 폐지
② 전년도 서비스 이용률	6	- 이용률 85% 기준 - 최근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시군 별)
③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1	- 서비스 만족도 80% 기준
④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2	- 예산대비 고용창출 비율
⑤ 사회서비스 제공의 사회적 가치	1	- 이용자의 변화 및 효과성
⑥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부재	1	
⑦ 복지부의 지침	4	
⑧ 서비스 유사·중복	3	
⑨ 기타	3	- 단순 상품(기계, 장난감) 대여서비스 폐지 - 조사연구(16개 세부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실시, 제공기관 및 TF팀 의견 수렴

주: 1) 중복응답 가능

2) ⑧서비스 유사·중복은 설문지 보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타 의견으로 다수 제시되어 별도의 항목으로 생성

- 사업의 조정 및 폐지를 위한 기준이 있다고 응답한 시도를 대상으로 현재의 기준이 사업의 조정 및 폐지에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음, 4점: 보통, 7점: 매우 그러함)를 통해서 질문한 결과 평균 4.67점(SD=1.58)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5-10〉).
- 최소값이 2인 것을 미루어보아 기준은 있으나 효과가 매우 없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이 있음을 유의

〈표 5-10〉 지투자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기준의 효과성(n=10)

질문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조정 및 폐지 기준의 효과성	2	6	4.67	1.58

- 지투자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기준이 없는 시도의 절차를 살펴보면, <표 5-9>와 상당히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명확한 기준선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표 5-11〉 지투자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기준이 없는 경우의 절차(n=7)

세부내용
- 명확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진 않지만,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여 이루어짐
① 사업의 목적 적절성: 기존 계획했던 사업의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아 부정사례가 많은 사업
②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여 중복수혜가능성이 있는 사업(통폐합)
③ 이용자 수요가 없는 사업(구조조정)
④ 집행률 및 일자리 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고 있음
-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아래 사항을 고려
① 공급기관 부족 및 이용자 신청률 저조 사업
② 민원 및 부정수급 사례 다수 발생 사업
③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저하 사업
- 현재까지는 사업 폐지한 적이 없어서 기존 절차가 없음.
추후 이용자 이용률이 급격히 낮아질 경우 고려할 예정
- 사업 및 사안에 따라 제공기관, 시·군 담당자 의견 수렴 후 조정 절차 진행
- 아래 사항을 고려
① 유사 내용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는 제공기관 간담회,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미리 공지·논의 후 통합
② 지투 외 타 부처의 유사서비스에 대해 축소 후 폐지
③ 제공기관이 없을 때 사업 폐지
④ 서비스가 보편적 대상이고 내용이 일반적인데도 수요가 없을 시 폐지
- 시군 수요조사 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시군별 유사사업 간 통합은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용자가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폐지여부를 내부검토 후 서비스 제공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 사업별 예산배분을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14개의 시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개의 시도가 없다고 응답하였음(〈표 5-12〉).

〈표 5-12〉 사업별 예산배분을 위한 객관적 기준

(단위: 개, %)

질문항목	있음	없음
예산배분의 객관적 기준	14(82.4)	3(17.6)

□ 예산배분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14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예산배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총 8개의 응답범주를 통하여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하였음(〈표 5-13〉).

- 그 결과 예산 집행률과 서비스 이용률이 각각 12건(85.7%)으로 예산배분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예산 집행률과 서비스 이용률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대기자 수를 고려한다는 의견도 8건(57.1%)으로 높게 나타남.
- 그 외 서비스 제공기관 수를 고려한다는 의견이 3건(21.4%), 이용자의 만족도를 고려한다는 의견이 2건(14.3%), 일자리 창출효과를 고려한다는 의견과 복지부의 지침을 따른다는 의견이 각각 1건(7.1%)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3〉 예산배분을 위한 기준(n=14)

(단위: 개, %)

응답항목	빈도(%)	세부내용
① 예산 집행률	12(85.7)	
② 서비스 이용률	12(85.7)	
③ 서비스 대기자 수	8(57.1)	
④ 이용자의 만족도	2(14.3)	
⑤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1(7.1)	
⑥ 서비스 제공기관 수	3(21.4)	
⑦ 복지부의 지침	1(7.1)	
⑧ 기타	1(7.1)	- 구군별 인구대비 이용자수, 기초수급자수, 출생률, 장애인수 등

주: 중복응답 가능

□ 예산배분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3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예산배분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총 6개의 응답범주를 통하여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하였음(〈표 5-14〉).

○ 그 결과, 세 개의 시도 모두 연도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n=3, 100.0%), 기준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n=2), 그리고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n=1)과 행정업무의 가중하다는 의견(n=1)이 제시되었음.

〈표 5-14〉 지투자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기준이 없는 이유(n=3)

(단위: 개, %)

응답항목	빈도(%)
①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음	1(33.3)
② 연도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3(100.0)
③ 기준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2(66.7)
④ 행정업무의 가중함	1(33.3)
⑤ 특별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0(0.0)
⑥ 기타	0(0.0)

주: 중복응답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인식을 5개의 질문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는 〈표 5-15〉와 같음.
 - 〈표 5-15〉에 제시된 질문을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질문에 대한 동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1. 우리지역은 서비스 제공대상별 예산 비율에 있어 특정대상으로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에 대한 응답은 평균 5.00점(SD=1.32)으로 예산의 분포의 특정대상 편중이 보통이상의 수준(m> 4)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단, 최소값(min=2)과 최대값(max=7)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 우리지역은 서비스 제공대상 별 예산 비율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에 대한 응답은 평균 4.82점(SD=1.07)로 전국 시도는 대상 별 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이상의 수준(m> 4)으로 노력해온 것을 알 수 있음.
 - 단, 최소값(min=2)과 최대값(max=7)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인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3. 서비스 제공대상 별 예산 비율의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에 대한 응답은 평균 5.71점(SD=0.92)으로 예산 비율의 합리적 조정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최소값(min=4)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시도가 합리적인 예산비율의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4. 우리지역의 시군구는 예산 편성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은 평균 5.06점(SD=0.83)으로 시도의 노력에 시군구의 협조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최소값(min=4)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시도가 합리적인 예산비율의 조정에 어

려움을 겪고 있음.

□ “5. 서비스 제공대상 별 예산 비율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에 대한 응답은 평균 4.65점(SD=1.87)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의 제정에 대하여 시도가 보통이상(m) 4)의 수준으로 동의 하고 있으나, 이 의견은 시도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min=1, max=7)

□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국의 시도는 제공 대상 별 예산 비율이 특정 대상으로 한 편중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한편, 시도의 노력에 시군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편으로 나타났으며, 예산 편중에 대한 시도의 어려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을 통해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견은 시도 간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1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인식(n=17)

질문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1. 우리지역은 서비스 제공대상별 예산 비율에 있어 특정 대상으로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2	7	5.00	1.32
2. 우리지역은 서비스 제공대상별 예산 비율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	7	4.82	1.07
3. 서비스 제공대상별 예산 비율의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4	7	5.71	0.92
4. 우리지역의 시군구는 예산 편성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편이다.	4	6	5.06	0.83
5. 서비스 제공대상 별 예산 비율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1	7	4.65	1.87

□ 서비스 제공대상별 예산 편성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 대상에 예산 배분 상한기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5-16〉 와 같음.

○ 시도가 인식하는 예산 배분 상한선 평균은 35.47%(SD=17.99%)인 것으로 나

타났음.

- 예산 배분 상한선에 대한 인식은 최소 12.5%에서 70.0%까지로 인식의 범위가 넓었음.

〈표 5-16〉 특정 서비스 제공 대상에 대한 예산 배분 상한선에 대한 인식(n=17)

(단위: %)

질문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특정 대상 예산 배분 상한선 기준	12.5	70.0	35.47	17.99

2. 성과관리

- 17개 시도 중 성과지표 설정·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3개 시도(76.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시도는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7〉 성과지표 설정·관리(n=17)

(단위: 개, %)

질문항목	하고 있음	하지 않음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13(76.5)	4(23.5)

-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68.8%)가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개 시도(31.3%)는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8〉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평가 여부(n=17)

(단위: 개, %)

질문항목	하고 있음	하지 않음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평가	11(68.8)	5(31.3)

-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11개 시도 중에서 성과평가의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시도는 9개로 나타났고, 2개 시도는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음(<표 5-19>).

<표 5-19> 성과평가의 결과의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 여부(n=11)

(단위: n(%))

질문항목	하고 있음	하지 않음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평가	9(81.8)	2(11.8)

-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성과평가를 진행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두 곳으로 나타났고, 사업의 성과를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n=1), 설정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n=1)이라는 의견이 있었음(<표 5-20>).

<표 5-20>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n=5)

(단위: 개, %)

응답항목	빈도 (%)
① 사업의 성과를 정의하기 어려워서	1(25.0)
② 설정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서	1(25.0)
③ 성과 관리보다 사업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0(0.0)
④ 성과평가를 진행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2(50.0)
⑤ 기타	0(0.0)

- 저성과 사업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58.8%)가 저성과 사업 기준이 있었으며, 7개 시도(41.2%)는 저성과 사업의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5-21>).

〈표 5-21〉 저성과 사업의 판단 기준 유무(n=17)

(단위: 개, %)

질문항목	있음	없음
저성과 사업의 판단 기준 유무	10(58.8)	7(41.2)

□ 저성과 사업의 분류기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서비스 이용률이 7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 집행률과 이용자 만족도가 각각 3건(20%)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표 5-22〉).

〈표 5-22〉 저성과 사업의 분류기준(n=10)

(단위: 개, %)

응답항목	빈도 (%)
① 예산 집행률	3(20.0)
② 서비스 이용률	7(46.7)
③ 이용자 만족도	3(20.0)
④ 서비스 효과성	1(6.7)
⑤ 일자리 창출효과	1(6.7)
⑥ 기타	0(0.0)
응답항목 합계	15(100.0)

□ 저성과 사업의 판단기준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저성과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n=5, 100.0%).

〈표 5-23〉 저성과 사업 판단기준이 없는 이유(n=7)

(단위: n(%))

응답항목	빈도 (%)
① 저성과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모호	5(100.0)
② 설정한 성과의 측정의 어려움	0(0.0)
③ 성과 관리보다 사업운영이 중요	0(0.0)
④ 기타	0(0.0)
무응답	2(-)

3. 구조조정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17개 시도의 인식을 7점 척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 평균 5.41점(SD=1.12)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매우 동의함”까지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질문에 대한 동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
- 최소값과 최대값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시도에서 표준모델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4〉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n=17)

질문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4	7	5.41	1.12

- 〈표 5-25〉 는 17개의 지투 표준모델 중 개편이 필요한 모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질문의 응답을 위해 현재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개편이 필요한 모델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게 제시하였음.
-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한 항목을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표준화 점수를 계산하였음.
- 개편이 필요한 표준모델에 대하여 1순위, 2순위, 3순위의 응답빈도를 합한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②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가 6건으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⑥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⑦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⑧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가 각각 5건으로 나타났음.
- 표준화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②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가 13점으로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⑧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가 12점, ①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⑦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가 각각 9점으로 나타났음.

□ 응답 건수합계와 표준화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②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서비스(6건, 13점)가 가장 개편이 필요한 모델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⑧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5건, 12점), 세 번째로 ⑦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5건, 9점)가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5〉 개편이 필요한 표준모델(n=17)

항목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	건수 합계	표준화 점수
①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3	0	0	3	9
②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3	1	2	6	13
③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0	2	0	2	4
④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1	2	1	4	8
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1	2	1	4	8
⑥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1	0	4	5	7
⑦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1	2	2	5	9
⑧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3	1	1	5	12
⑨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0	0	0	0	0
⑩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0	1	0	1	2
⑪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0	2	1	3	5
⑫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1	0	1	2	4
⑬ 장애인 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처방서비스	0	0	0	0	0
⑭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1	2	1	4	8
⑮ 성인(청년) 심리지원서비스	0	0	0	0	0
⑯ 보원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0	0	1	1	1
⑰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서비스	0	0	0	0	0
무응답	2	2	2	-	-
합 계	17	17	17	45	90

□ 〈표 5-26〉 은 각 표준모델이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우선적으로 가장 개편이 필요한 모델로 꼽혔던 ②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를 살펴보면, 서비스 기준정보 위반, 부정수급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n=5).
 - 그 외, 지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n=1)이 있었고, 기타의견으로 사업 운영의 불투명성, 학원비 절감용으로 사용되는 사례의 발견, 유사사업의 존재, 음악 학원처럼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설명이 있었음.
- 두 번째로 개편이 필요한 모델로 꼽혔던 ⑧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델이라는 의견(n=3)과 서비스 기준정보 위반, 부정수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관리가 어렵다는 의견(n=3)이 제시되었음.
 - 그 외 기타의견으로 이용자가 타시도 진출 시 관리가 어렵고, 사업 운영이 불투명하고, 지투사업 외 유사사업이 지역 내 존재한다는 설명이 있었음.
- 세 번째로 개편이 필요한 모델로 꼽혔던 ⑦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가 개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n=3)이 제시되었음.

〈표 5-26〉 개편이 필요한 이유

항목	이유
①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② 다른 표준모델과 서비스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어 정체성이 모호함 ⑤ 서비스 기준정보 위반, 부정수급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 관리가 어려움 (기타) 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서비스 단가 및 회기 조정이 필요
②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⑤ 서비스 기준정보 위반, 부정수급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 관리가 어려움(n=5) ③ 지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델임(n=1) (기타)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기타) 사업 운영의 불투명성 (기타) 학원비 절감용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기타) 지투사업 외 유사사업이 지역 내 존재 (기타) 음악 학원처럼 서비스 제공
③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② 다른 표준모델과 서비스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어 정체성이 모호함 ④ 표준모델의 기준정보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의 사업운영 재량을 침해함 (기타) 발달재활서비스 및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 중복영역 분리 필요
④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① 선택한 표준모델에 대한 지역사회의 욕구가 저조함(n=2) ② 다른 표준모델과 서비스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어 정체성이 모호함 (기타) 제공인력 자격기준: 기본서비스 자격기준 중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서울시 I will 센터 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과정 이수자'의 자격조건 완화가 필요. (기타) 서비스 내용이 너무 많아 핵심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재설계가 필요함
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③ 지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델임 ④ 표준모델의 기준정보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의 사업운영 재량을 침해함 ⑤ 서비스 기준정보 위반, 부정수급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 관리가 어려움(n=2) (기타) 반 시장 가격에 비해 서비스 가격이 비쌌음 (기타) 타 복지서비스와 중복 (기타) 고연령 제한 없는 서비스이므로 횡수 및 시간 축소 필요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발생
⑥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① 선택한 표준모델에 대한 지역사회의 욕구가 저조함 ② 다른 표준모델과 서비스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어 정체성이 모호함 ③ 지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델임(n=2) ④ 표준모델의 기준정보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의 사업운영 재량을 침해함(n=2) ⑤ 서비스 기준정보 위반, 부정수급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 관리가 어려움

항목	이유
	(기타) 이용자 등급별 인원수에 따른 신속한 돌봄인력 지원어려움 (기타) 1회성 서비스로 전화신청 후 서비스 당일 타인이 대리 이용사례 (기타) 위험부담이 큰 사업 (기타) 지자체의 선심성 행사(노인)로 추진될 우려
⑦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③ 지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델임(n=3)
⑧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③ 지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델임(n=3) ⑤ 서비스 기준정보 위반, 부정수급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 관리가 어려움(n=3) (기타) 이용자가 타시도 진출 시 관리 어려움. (기타) 사업 운영의 불투명성 (기타) 지투사업 외 유사사업이 지역 내 존재
⑨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⑩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④ 표준모델의 기준정보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의 사업운영 재량을 침해함
⑪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① 선택한 표준모델에 대한 지역사회의 욕구가 저조함 ⑤ 서비스 기준정보 위반, 부정수급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 관리가 어려움 (기타) 단순 학원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 (기타) 사업 운영의 불투명성 (기타)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발생
⑫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기타) 다문화센터 서비스와 유사 중복 (기타)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는 학습위주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음
⑬ 장애인 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	-
⑭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③ 지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델임(n=2) ⑤ 서비스 기준정보 위반, 부정수급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 관리가 어려움(n=2) (기타) 학원비 절감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스포츠 바우처와 중복 - 서비스 대상 확대 필요 : 아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경우에도 건강관리가 필요하므로 대상을 만 5세-18세 아동·청소년까지 확대 필요(대상확대에 따라 서비스명을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서비스로 변경 필요)
⑮ 성인(청년) 심리지원서비스	-
⑯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 서비스	③ 지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델임
⑰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서비스	-

□ 현재 지역에서 운영 중인 모든 지투사업(표준·자체개발모델)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17개 시도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도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88.2%)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표 5-27〉 현재 운영 중인 지투 사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n=17)

(단위: 개, %)

질문항목	있음	없음
구조조정의 필요성	15(88.2)	2(11.8)

□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다른 사업과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함(n=11, 28.21%)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집행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조정(n=8, 20.51%), 부정수급이 많은 사업에 대한 관리의 필요(n=8, 20.51%), 그리고 특정 대상 또는 기능 중심의 사업 편중(n=7, 17.95%)이 제시되었음.

〈표 5-28〉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n=15)

(단위: 개, %)

항목	빈도(%)
① 특정 대상 또는 기능을 중심으로 사업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7(17.95)
②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해서	3(7.69)
③ 수요 욕구가 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해서	1(2.56)
④ 집행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업 조정이 필요해서	8(20.51)
⑤ 부정수급이 많은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서	8(20.51)
⑥ 다른 사업과의 서비스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28.21)
⑦ 기타	1(2.56)
응답 합계	39(100.0)

-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투사업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달성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 부족과 제공기관의 저항이 가장 많이 꼽혔음.
- 구조조정의 근거 부족이 10건(52.63%)으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제공기관의 저항이 9건(47.37%)으로 그 뒤를 이었음.
- 구조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공기관의 저항 및 반발에는 구조조정의 근거 부족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투사업의 건전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지침 상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및 근거 제시가 필수적임.

〈표 5-29〉 구조조정 시 가장 어려운 부분(n=17)

(단위: 개, %)

항목	빈도(%)
① 구조조정의 근거 부족(지침의 구체성 결여)	10(52.63)
② 제공기관의 저항	9(47.37)
③ 시도의 집행 부담	0(0.0)
④ 시군구와의 갈등	0(0.0)
⑤ 서비스 이용자의 민원	0(0.0)
⑥ 기타	0(0.0)

제 6 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실행방안

제1절 지투사업 구조조정 필요성

제2절 지투사업 구조조정 실행방안

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구조조정 실행방안 <

제1절 지투사업 구조조정 필요성

□ 본 연구는 지역 수요와 서비스 효과성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지투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지투사업의 공급·이용 실태 및 포괄보조 도입 이후 지자체에서 지투사업을 기획, 조정, 성과관리 해온 과정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공통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지투사업의 기획 관련 문제점

○ (욕구 파악 미진) 시도에서는 발굴되지 않은 잠재욕구의 존재와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지역의 욕구조사에 기반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업 대상 편중화) 기준정보 분석 결과 2013년 이후 사업 대상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 대상(아동·청소년) 중심의 사업 제공에 치중되는 경향이 확인됨.

- 아동·청소년 사업 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령의 인구구성비 대비 지투서비스 이용 인구구성비의 차이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특히 청년 및 중장년층 대상 사업 제공은 매우 미진한 상황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사업이 부재함.

- 사업 기획 단계에서 대상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고려하지만 사업 제공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은 낮은 편임.

- 지자체에서는 특정 대상에 대한 예산 편중화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불

균형 조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용 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그 변화가 두드러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 광역화) 사업 수 감소와 함께 서비스 제공범위의 확대(시군구 공동, 시도) 현상이 동시에 나타남.

- 서비스 제공범위가 하나의 시군구인 사업 비율은 74%(`13년)에서 39%(`17년)으로 감소, 이는 2013~2017년 사업 광역화를 독려했던 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결과로 보임.

- 사업 광역화는 사회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공급 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표준화로 인한 서비스 품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특정 사업의 규모화로 인해 사업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함.

○ (사업 다양성) 2013년 이후 표준모델과 비표준모델(자체개발모델) 사업 수 비율을 보면 표준모델 사업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13년 65% → `17년 47%)로 이는 사업 내용이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표준모델사업의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80% 이상으로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하여 실제 사업 제공은 표준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표준모델사업의 이용자 편중 현상은 도 단위가 시 단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3개 표준모델 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의 이용자 비율이 47.2%로 매우 높은 편으로 이는 사업 대상의 편중화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임.

□ 지투사업의 조정 및 성과 관리 관련 문제점

○ (사업 조정 및 폐지 기준의 모호성) 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기준이 있는 시도는 10개로 서비스 이용률, 복지부 지침(유사중복), 전년도 예산 집행률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시도는 3개(인천, 강원, 전북)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지역은 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명시적인 기준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 예산 배분 기준이 있는 시도는 14개로 주로 예산 집행률, 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대기자 수 등의 실적 및 수요 자료를 활용하지만 역시 명확한 기준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 (사업별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미흡) 13개 시도가 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11개 시도가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평가를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성과평가 결과의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반영은 9개 시도에서만 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의 효과성이 반영된 사업 기획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사업 구조조정 장애요인) 시도는 서비스 중복, 실적 저조 사업의 조정, 부정수급 관리, 대상자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 부족과 제공기관의 저항으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 대상의 편중화 해소,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업 내용의 다양화를 위해 지역별 일정수준의 사업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 조정 및 관리의 체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지자체에 부여된 권한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사업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수준의 개입 방안이 필요함.

○ 시·도 서비스의 기준정보 신규, 변경, 폐지는 최종적으로 복지부가 승인하나 시·군·구 서비스 기준정보 승인은 시·도의 권한임.

○ 즉, 개별사업의 기획, 조정, 관리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제2절 지투사업 구조조정 실행방안

- 본 절에서는 지투사업 구조조정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사업 기획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자 함.
- 구조조정 실행방안은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체계(안) 및 구조조정 실행절차(안), 예산편성 운영방식(안), 표준모델 개선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1.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체계(안) 마련

가. 구조조정 평가체계 검토

□ 필요성

- 현재 지투사업 평가체계에는 단위사업별 존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미비한 실정으로 중장기적으로 전체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

□ 평가모형 및 평가기준 설계

- 사업의 존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모형은 사업 추진 전 과정에 걸쳐 평가하는 CIPP 모형을 재구성해 적용함(Stufflebeam, 2007; 남궁근, 2014, p. 707~708에서 재인용).
 - CIPP 모형은 사업의 자원투입이 산출에 도달하는 과정을 모형화한 것으로, 사업목적이나 우선순위에 관련된 맥락(Context), 실행계획과 인력 및 예산 계획에 관한 투입(Input), 집행계획 평가인 과정(Process), 그리고 성과평가에 해당되는 산출(Output)으로 구성됨.
 - 지투서비스 존치평가는 CIPP모형을 따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체계에 의거해 설계

- CIPP의 평가 분야 가운데 성과평가는 가장 중점을 두고 평가할 분야이며, 여기서 성과측정을 위해 어떤 세부 기준을 설정할지가 핵심적 사안임.
 - 통상 정책평가의 기준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구분이 가능함.
 - ① 당초 제시한 정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와 관련된 효과성 평가
 - ② 산출 또는 성과와 투입된 자원을 대비하는 정도 능률성 평가
 - ③ 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사회집단 간, 지역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인 형평성 평가
 - ④ 정책산출 및 성과가 외부집단의 요구, 선호, 가치를 얼마나 만족시켜 주었는지의 정도인 대응성 평가
 - ⑤ 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한 것이며 가치 있는지와 관련된 필요성 평가로 구분(남궁근, 2014, p. 713~714; 유훈, 2015, p. 333~334)
- 일반적으로 성과측정은 산출(output)이 아닌 앞서 제시된 결과(outcome)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투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행실적인 산출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지투사업은 사업군과 서비스 제공대상이 다양해 이를 관통하는 단일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움.
 - 또한 단위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단위사업의 우열을 판별하기에는 평가정보의 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우려

나. 사업 구조조정 평가체계(안)

- (설계원칙) 포괄성, 유연성, 자율성이라는 핵심 원칙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수립함.
 - (포괄성) 이미 구조조정 기준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포괄적인 준거틀을 제시함.
 - (유연성) 지자체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 실제 평가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제시함.

- (자율성) 집권적·일률적 평가를 지양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함.
- (평가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함.
 - 신설 사업인 경우 2년 동안 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기준) 사업기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사업기획
 - 타부처 사업 혹은 지역의 복지사업과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이용자가 중복되는지에 대한 평가(유사중복성)
 -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부응하고 시장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와 차별화된 사회서비스로서의 성격이 명확한지와,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합목적성)
 - 사업집행
 - 부정행위, 안전사고, 서비스 품질 관리 등 관련 규정과 기준정보를 준수하여 사업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 사업 예산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과정 평가
 - 사업성과
 - 서비스 이용률과 예산 집행률 등 실적 지표 중심으로 사업의 최종 성과 달성정도 평가
 - 사업 효과성(이용자 변화), 만족도, 일자리 창출효과 등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계속 지원 필요성을 평가
- (평가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5대 등급으로 준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이행 조치 방안을 마련함.

- 세부기준별 배점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권고기준을 참고하여 분야별 총 배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함.
- 등급(안)은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70점), 미흡(70~60점), 매우 미흡(60점 미만)으로 설정
- 평가등급이 ‘매우미흡’ 이하인 사업은 단계적 폐지 혹은 즉시폐지, 통폐합 등 조치
- 평가등급이 ‘미흡’인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업 모니터링 강화, 컨설팅 지원 등 집중 관리방안 마련

〈표 6-1〉 존치평가를 위한 사업평가기준(안)

분야	세부 기준					배점 (권고)
사업기획 (40)	1-1. 중앙정부-지자체의 타 복지사업 및 지투자사업 내 다른 사업과 목적, 내용, 지원대상이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25
	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인가? -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가?					15
사업집행 (20)	2-1. 부정행위, 안전사고, 서비스 품질관리 등 관련 규정과 기준정보를 준수하여 사업이 제공되었는가?					10
	2-2. 사업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가?					10
사업성과 (4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사업 실적)					25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사업 효과)					15
존치평가	정상추진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통폐합	집중관리	

2. 구조조정 실행절차(안)

□ 존치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추진함.

- 존치평가 기준 수립 → 전년도 사업에 대한 존치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 →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의 과정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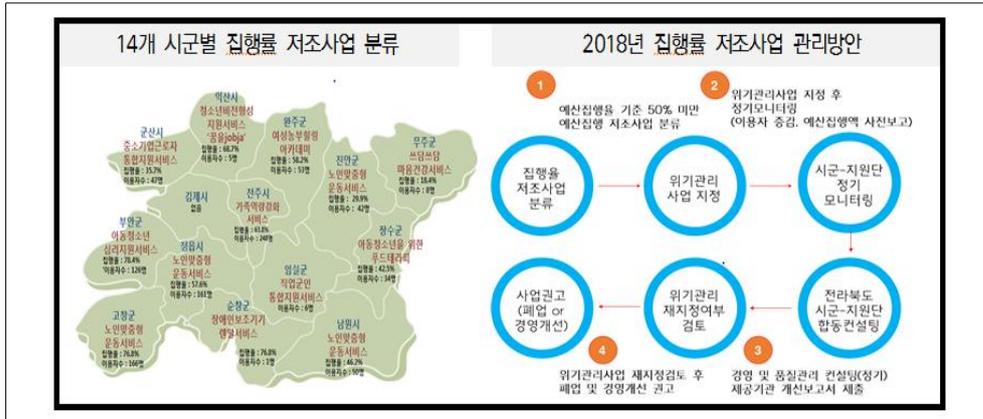
- 준치평가 주체는 「시(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로, 위원회는 준치평가의 기준을 확정하고, 평가를 수행
 - 유사·중복의 경우 시도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유사중복사업 검토 위원회」를 구성해 유사·중복 정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사전 검토 자료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함([그림 6-2] 참조)
- 준치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시도, 시군구 합동 회의를 통해 결정함.
 - 단계적 폐지, 즉시 폐지, 통폐합이 결정된 사업의 경우 합동 회의에서 폐지 절차 및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 대상 사업별 준치평가 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함.

□ 미흡사업 집중관리 방안

- 준치평가에서 미흡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협력하여 집중관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전북이 시행하고 있는 「집행률 저조사업 관리방안」은 집중관리 방안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주요한 시사점 제공함([그림 6-1]).
 - 이용자 증감 혹은 예산집행액 등과 관련된 정기 모니터링의 강화
 - 시도와 시군구가 함께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영과 품질관리 합동컨설팅
 - 서비스 제공기관의 개선노력 보고서 제출 의무화

[그림 6-1] 전북의 집행률 저조사업 관리방안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별 집중관리 필요 서비스 지정관리]<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저조사업을 구분하고 집중관리 사업 지정· 집중관리 필요 서비스 지정기준: '17년 기준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중 가장 낮은 사업○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절차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컨설팅, 2단계 시군 합동 사례회의, 3단계 조정안 제시



자료: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별 상반기 진단보고서(전북),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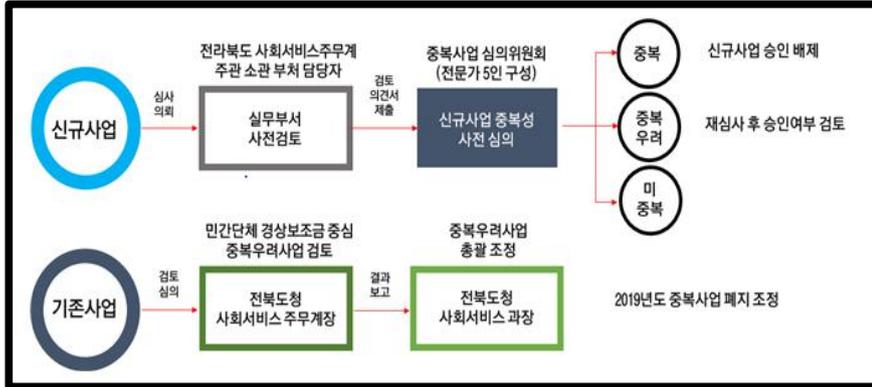
□ 유사·중복 방지 검토 및 관리 방안

- 유사·중복의 사업 기획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하며, 전북이 시행하고 있는 「유사·중복 예방조치 계획」 사례를 제시함.
- 시도의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유사중복사업 검토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 조정
- 다음연도 사업 기획 전에 시군구에 기존 심의 중복사업 현황 등을 공유하고, 유사·중복 사전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중복사업 신청을 최소화

[그림 6-2] 전북의 유사·중복 예방조치 계획 사례

- **[실국별 유사·중복 검토 및 조정]** 전북 복지여성보건국 주관으로 실국별 연령 및 소득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 사업목적의 중복 및 유사성 검토 후 조정·전북 자활사회서비스팀(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주무팀), 9개 실국 담당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유사중복사업 검토 위원회 구성(한시)→2018년 중복사업 검토→중복사업 확인 시 하반기 사업조정 추진(중복정도를 기준으로 폐지 혹은 사업내용 변경 추진)
- **[신규 사업 신청 이전 기존 심의 중복사업 현황 공유]** 신규 사업 신청기간 이전 14개 시군에 중복사업 유형(2016~2017년) 사전 공지를 통해 시군 차원에서 중복사업이 사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유인

- 중복사업 유형 분류(대상별, 사업목적별)에 따른 중복사업 검토결과(2016~2017년) 자료 제시→14개 시·군 사전 유사중복사업 유형 파악을 통한 중복사업 신청 최소화
- 14개 시·군 신규사업 신청 시 중복사업 자체 사전검토 여부 의무제출(중복사업 사전검토 양식 제시)
- 기존사업은 사회서비스 주무계를 주관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사업 중심으로 중복성 검토 후 차후연도 사업조정 반영



자료: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별 상반기 진단보고서(전북), 내부자료

3. 예산편성 운영방식(안)

가. 예산배분 방안 검토

□ 필요성

- 지투사업에서 특정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의 예산배분의 쏠림 현상 등 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제고

□ 예산 조정 주요 방안

- 이론적으로 예산 운영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다양한 투입변수를 반영한 통계적 재원배분모형을 수립해 사업군 혹

은 서비스 제공대상별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조정하는 방안

- 둘째, 특정 대상 사업군 혹은 서비스 제공대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
- 셋째, 특정 사업군 혹은 서비스 제공대상에 배분하는 예산의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

□ 예산배분 상한기준 설정의 의의

- 본 연구에서는 상기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특정 서비스 제공대상의 상한 한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채택함.
 - 통계적 재원배분모형은 보조금 총액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예산배분에 있어 지자체의 재량성을 제약할 우려
 - 특정 사업군을 위해 예산을 별도로 할당해 놓는 방식은 예산 배분이 현저히 적은 사업이 있을 때 효과적이나 현재 지투사업의 전반적인 예산 배분 현황은 이에 부합하지 않음.
 - 특정 서비스 대상군의 예산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은 예산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크며, 구체적인 사업 조정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존재

나. 예산배분 상한기준 설정(안)

□ 자율성과 신축성의 원칙

- 서비스 제공대상별 각각에 대해 조정 기준을 일률적·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양함.
- 특정 서비스 제공대상을 위한 예산편성의 상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지자체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함.
- 예산배분 상한기준 내에서 예산운영을 자율화하되, 지자체별 지투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탄력적 운영을 위해 자율운영 범위를 추가로 설정

□ 기준 설정

- (1안) 서비스 제공대상의 예산 배분 상한 기준은 최대 30%하되, 자율운영 범위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30±15%로 설정
 - 시도 설문조사 결과, 지투사업 조정 및 폐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시도에 있어, 특정 서비스 제공 대상에 대한 적정 예산 상한선은 평균 28.12%이며, 표준편차는 14.495임.
- (2안) 서비스 제공대상의 예산 배분 상한 기준은 최대 27%하되, 자율운영 범위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27±12%로 설정
 - 상기 시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외한 응답으로 산출한 평균은 27%이며, 표준편차는 11.51임.
- (비교) 1안과 2안에서 각각 최소수준과 평균수준 2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기대되는 예산조정 효과를 제시함.
 - 예산조정 효과 산출을 위해 <표 4-27> , <표4-28> 에 제시한 대상별 결재금액 비율(2017년 기준)을 대리 변수로 활용하였으므로, 예산액을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예산 조정 효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유의
 - 1안에서 45% 상한 기준을 설정하면 10개 시도에서 평균 12.6% 예산 조정이 필요하며, 30%를 적용하면 17개 시도에서 평균 22.6% 예산 조정 필요
 - 2안에서 39% 상한 기준을 설정하면 16개 시도에서 평균 13.1% 예산 조정이 필요하며, 27%를 적용하면 17개 시도에서 평균 26.9% 예산 조정이 필요

<표 6-2> 예산배분 상한기준 설정안 비교

구분	시나리오	조정 필요 시도	예산 조정 효과		
			평균	최대	최소
1안 (30±15%)	최소조정(45%)	10개 시도	12.6%	39.9%	4.4%
	평균조정(30%)	17개 시도	22.6%	54.9%	5.3%
2안 (27±12%)	최소조정(39%)	16개 시도	13.1%	45.9%	0.6%
	평균조정(27%)	17개 시도	26.9%	57.9%	8.3%

4. 지투사업 표준모델 개선 방향

가. 표준모델 개선 필요성

- 지투사업의 합리적 기획과 조정을 위해서는 표준모델 사업의 재검토가 필수적임.
 - 표준모델 사업의 이용자 규모가 전체 사업의 80%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모델 사업의 개선이 지자체의 사업 기획, 조정, 관리 및 운영 효율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 표준모델은 지역개발형 사업이 지닌 문제점(사업 내용의 지나친 세분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지역 간 편차)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중앙정부 주도로 표준화하여 제공하여왔으나, 그간 표준모델에 대한 개편 요구는 지자체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표준모델의 개편은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발굴되지 않은 잠재적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사업 개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임.

나. 표준모델 개선 방안

- 첫째,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표준모델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
 - 지투사업 실무담당자와의 간담회 및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17개의 표준모델 사업 중 개편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로 나타남.
 - 세 가지 사업 모두 지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서비스 기준정보의 위반,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으로 개편 필요성이 지적됨.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목적 및 대상에 있어 차별성이 없고, 단순 악기강습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구조조정 대상 사업인 단순학습지도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 동 사업은 타 표준모델과의 서비스 대상 및 내용 중복 해결을 위한 지침 변경, 타 부처 유사사업의 검토(예: 문체부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를 통한 사업 규모의 단계적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의 경우 주 목적이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지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투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비판과 노인과 장애인의 신체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성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사업 규모를 유지 또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지가 공존하는 사업임.
 - 그러나 동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불투명성은 지투사업 내에서 심각하게 제기 되어 온 문제임.
 -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로당 수요가 많아 제공기관과 경로당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실상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급 인력이 장애인인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행정기록이 관리되지 않는 문제 등이 거론
 - 동 사업은 사실상 공급자 보호형 사업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지투사업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님.
 -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전국표준형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지투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전국에 있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외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을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어 옴.
 - 표준모델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경우 전국표준형 사업이므로 사업 관리를 중앙단위에서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이용이 저조한 표준모델 사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새롭게 나타나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표준모델 사업의 개발 필요
- 표준모델 사업의 전체 사업 대비 이용 비율이 낮은 표준모델사업은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다문화가

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로 나타남.

- 전체 사업 대비 해당 사업의 수요가 적은 것이 사업 지원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의 지역사회 욕구가 일정 수준 이하로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면 표준모델 사업으로 제공해야 할 당위성은 낮아질 수 있음.
 - 표준모델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수요가 있어서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사업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임.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는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이용자 비율이 5년 연속 1% 이내임.
-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의 이용자 비율은 2013년 이후 5년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여 2017년 1% 미만으로 감소하였음.
 - 동 사업은 2014년 예산배분을 최소화하여 구조조정을 권고한 사업이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일회성 서비스로 특정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신규 이용자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그러나 2018년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확대율(전년 대비 서비스 제공율 증가율 3%)이 포함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과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동 사업을 오용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의 경우 다문화가정 대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실수요가 적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타 부처 사업(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과의 서비스 중복문제가 빈번히 제기되어 왔으므로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는 사업임.
- 궁극적으로는 이용이 저조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예산 배분을 최소화하거나, 자체개발모델 사업으로 전환하여 표준모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 동시에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표준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커뮤니티 케어 추진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 내의 다양한 돌봄 연계 욕구를 지투자사업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개발이 필요

- 셋째, 공급자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정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보편적 서비스 욕구가 있어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표준모델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부 지원 수준을 하향조정하여 그간 지원이 미미했던 사업량의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자체의 경우(예: 강원, 부산) 공급자의 경쟁 정도와 사업의 확장성을 기준으로 지투자사업을 유형화하여 공급 전략의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구분됨.
 - 부산의 경우 `17년 서비스 전후 서비스 1회 이상 추가구매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심리치유)는 25.3%,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사업은 5.1%로 지투자사업 중 시장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됨(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상반기 진단보고서(부산), 2018).
- 해당 사업의 2017년 기준 이용자 규모는 전체의 25% 수준으로, 시장화 방향으로의 단계적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면 새로운 서비스 욕구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의 예산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서는 시장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상한액 또는 상한 한도로 설정하되, 소득기준과 서비스 가격을 자율화하여 궁극적으로 수요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보조금의 의존도를 낮추도록 유도
 - 이 밖에 대기자 수가 많은 표준모델사업의 경우, 재판정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상향조정도 고려해 볼 수도 있음.
- 다만 이러한 접근은 시장화 선도지역의 추진 경과를 참고하여 전국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기자 수, 일반구매율 전환 등에 대한 투명한 통계 자료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함.

참고문헌 <



- 남궁근. (2012).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서울: 법문사.
- 박세경, 김보영, 하태정, 이정은, 김현진, 방호성, 서정민, 등. (2016). 2016년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14).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15).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유훈. (2016). 정책집행론. 서울: 대영문화사.
- 정홍원, 박세경, 박수지, 정은희, 김보영, 김정은, 김현진, 등. (2013).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근식, 이주희, 이성희, 김남혁, 함혜영 (2017). 강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강원연구원.
- Sufflebeam, Daniel L., & Shinkfield, Anthony J.(2007) *Evaluation Theory, Models, and Applic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부 록

부록 1: 지역별·대상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부표 1〉 지역별 지투사업 결재금액 합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단위: 원,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서울	14,525,684,521	15,028,785,967	3.46	11,592,879,250	-22.86	13,384,637,634	15.46	11,541,547,841	-13.77
부산	14,011,195,091	15,806,339,097	12.81	16,997,649,057	7.54	19,827,357,336	16.65	19,383,940,425	-2.24
대구	12,571,951,092	13,033,230,492	3.67	11,922,620,383	-8.52	13,531,179,134	13.49	12,624,233,618	-6.70
인천	9,384,005,922	10,837,488,596	15.49	11,223,965,319	3.57	15,669,317,679	39.61	17,890,551,491	14.18
광주	12,119,863,313	10,471,233,702	-13.60	8,720,261,550	-16.72	12,763,937,596	46.37	10,164,702,147	-20.36
대전	17,812,642,256	15,582,779,249	-12.52	15,081,758,370	-3.22	18,657,697,083	23.71	16,803,106,937	-9.94
울산	4,578,839,254	5,315,260,417	16.08	4,294,766,551	-19.20	6,292,845,790	46.52	4,728,718,467	-24.86
세종	526,507,250	539,102,250	2.39	659,383,711	22.31	618,378,500	-6.22	812,868,800	31.45
시 단위 평균	10,691,336,087	10,826,777,472	3.47	10,061,660,524	-4.64	12,593,168,844	24.45	11,743,708,715	-4.03

〈부표 2〉 지역별 지투자사업 결재금액 합계: 도, 특별자치도

(단위: 원,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경기	29,422,000,844	29,658,837,231	0.80	25,765,575,920	-13.13	38,984,703,781	51.31	40,476,082,532	3.83
강원	7,046,691,320	7,968,116,711	13.08	7,500,351,840	-5.87	10,226,877,339	36.35	8,634,733,029	-15.57
충북	8,902,808,824	5,461,914,974	-38.65	8,212,783,739	50.36	10,740,240,201	30.77	8,460,729,541	-21.22
충남	9,979,369,387	10,837,116,207	8.60	9,744,250,164	-10.08	12,738,797,714	30.73	12,040,518,615	-5.48
전북	11,588,641,580	11,292,289,752	-2.56	12,286,165,820	8.80	16,684,099,338	35.80	17,556,376,339	5.23
전남	13,946,433,350	13,763,327,439	-1.31	12,166,662,430	-11.60	14,465,463,498	18.89	14,267,322,635	-1.37
경북	11,313,595,610	10,714,667,178	-5.29	10,703,289,450	-0.11	14,526,907,114	35.72	11,310,576,133	-22.14
경남	11,824,877,270	11,518,773,327	-2.59	11,930,657,189	3.58	14,421,338,457	20.88	9,866,705,127	-31.58
제주	5,573,879,568	6,820,068,066	22.36	6,688,386,947	-1.93	9,135,141,648	36.58	7,657,539,974	-16.17
도 단위 평균	12,177,588,639	12,003,901,210	-0.62	11,666,458,167	2.22	15,769,285,454	33.00	14,474,509,326	-11.61

〈부표 3〉 지역별 지투자사업 결재금액 합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영유아)

(단위: 원,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서울	4,167,665,081	3,742,591,138	-10.20	1,284,835,800	-65.67	1,490,749,979	16.03	1,254,066,234	-15.88
부산	2,919,875,611	2,704,773,259	-7.37	2,823,790,138	4.40	3,624,896,108	28.37	3,741,465,188	3.22
대구	2,488,123,624	2,066,382,600	-16.95	865,491,610	-58.12	1,067,939,058	23.39	2,134,111,440	99.83
인천	2,001,853,861	1,443,896,950	-27.87	1,135,212,477	-21.38	1,979,849,136	74.40	2,186,679,099	10.45
광주	1,340,485,962	1,185,694,750	-11.55	462,904,071	-60.96	594,784,801	28.49	492,303,850	-17.23
대전	2,066,599,500	1,494,268,750	-27.69	1,210,704,182	-18.98	1,309,282,032	8.14	1,460,160,807	11.52
울산	1,302,574,509	980,304,020	-24.74	826,670,662	-15.67	1,363,617,280	64.95	1,000,346,100	-26.64
세종	169,746,250	162,264,000	-4.41	31,996,000	-80.28	46,296,000	44.69	91,960,000	98.63
시 단위 평균	2,057,115,550	1,722,521,933	-16.35	1,080,200,618	-39.58	1,434,676,799	36.06	1,545,136,590	20.49

〈부표 4〉 지역별 지투자사업 결재금액 합계: 도, 특별자치도 (영유아)

(단위: 원,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경기	7,014,650,835	5,556,812,729	-20.78	2,637,115,301	-52.54	4,086,552,616	54.96	4,405,551,847	7.81
강원	1,468,454,250	984,723,250	-32.94	326,820,995	-66.81	554,357,900	69.62	524,839,800	-5.32
충북	1,934,886,467	964,421,965	-50.16	840,703,050	-12.83	1,107,297,773	31.71	1,018,699,200	-8.00
충남	1,880,441,409	1,818,094,516	-3.32	773,748,956	-57.44	1,093,206,302	41.29	1,019,322,800	-6.76
전북	2,214,847,195	1,733,701,363	-21.72	988,889,013	-42.96	1,336,141,473	35.12	1,341,645,495	0.41
전남	1,344,514,570	1,197,992,564	-10.90	604,379,712	-49.55	851,372,991	40.87	879,666,391	3.32
경북	2,509,420,060	1,662,289,500	-33.76	539,979,075	-67.52	747,831,186	38.49	695,246,050	-7.03
경남	3,100,305,048	2,022,384,750	-34.77	1,876,862,450	-7.20	2,255,138,543	20.15	1,623,157,789	-28.02
제주	978,973,761	1,251,613,796	27.85	794,604,745	-36.51	1,017,073,074	28.00	968,569,504	-4.77
도 단위 평균	2,494,054,844	1,910,226,048	-20.05	1,042,567,033	-43.71	1,449,885,762	40.02	1,386,299,875	-5.37

〈부표 5〉 지역별 지투자사업 결재금액 합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단위: 원,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서울	6,783,447,954	7,220,104,034	6.44	5,835,446,113	-19.18	6,998,147,080	19.92	6,001,178,905	-14.25
부산	5,983,467,649	5,602,540,398	-6.37	6,156,117,763	9.88	7,603,099,631	23.50	8,069,381,296	6.13
대구	6,276,786,046	6,255,428,988	-0.34	5,883,301,163	-5.95	6,161,084,918	4.72	4,997,134,601	-18.89
인천	4,398,797,559	5,802,570,221	31.91	6,392,804,862	10.17	8,030,536,671	25.62	8,842,676,175	10.11
광주	6,835,414,032	5,957,949,342	-12.84	4,866,052,371	-18.33	6,743,081,958	38.57	5,322,430,502	-21.07
대전	7,914,098,718	7,293,248,337	-7.84	6,663,826,796	-8.63	8,336,044,862	25.09	7,224,760,119	-13.33
울산	2,168,064,720	2,791,804,685	28.77	1,570,353,157	-43.75	2,085,804,123	32.82	1,669,230,326	-19.97
세종	274,081,000	306,678,250	11.89	558,290,211	82.04	513,349,500	-8.05	690,284,800	34.47
시 단위 평균	5,079,269,710	5,153,790,532	6.45	4,740,774,055	0.78	5,808,893,593	20.28	5,352,134,591	-4.60

〈부표 6〉 지역별 지투자사업 결재금액 합계: 도, 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단위: 원,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경기	17,306,165,760	17,961,107,130	3.78	16,676,529,780	-7.15	24,243,466,510	45.37	24,762,136,690	2.14
강원	2,573,540,252	3,112,478,449	20.94	4,196,006,087	34.81	5,821,203,237	38.73	5,218,436,579	-10.35
충북	4,625,953,758	2,776,604,929	-39.98	4,525,116,121	62.97	5,881,826,733	29.98	4,227,539,852	-28.13
충남	4,021,634,170	4,286,389,166	6.58	3,834,696,617	-10.54	4,852,669,786	26.55	4,460,633,170	-8.08
전북	7,086,775,826	6,649,204,280	-6.17	7,020,824,869	5.59	9,031,858,711	28.64	9,104,149,562	0.80
전남	6,040,763,103	5,881,018,003	-2.64	5,277,658,218	-10.26	6,526,573,096	23.66	6,411,240,448	-1.77
경북	4,760,451,697	5,190,251,341	9.03	6,552,558,929	26.25	8,940,347,096	36.44	6,632,133,632	-25.82
경남	6,018,101,422	6,108,121,526	1.50	5,300,281,298	-13.23	7,856,961,875	48.24	5,468,308,536	-30.40
제주	3,040,913,200	3,410,168,833	12.14	3,230,599,921	-5.27	4,004,148,006	23.94	2,972,637,558	-25.76
도 단위 평균	6,163,811,021	6,152,815,962	0.58	6,290,474,649	9.24	8,573,228,339	33.51	7,695,246,225	-14.15

〈부표 7〉 지역별 지투자사업 결재금액 합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성인)

(단위: 원,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서울	1,459,096,880	1,605,511,761	10.03	2,028,630,548	26.35	2,180,459,329	7.48	1,885,739,002	-13.52
부산	1,718,953,000	2,598,754,649	51.18	2,410,597,097	-7.24	2,664,568,123	10.54	2,369,574,082	-11.07
대구	1,009,896,331	1,589,695,004	57.41	2,085,787,511	31.21	1,779,177,775	-14.70	1,562,881,421	-12.16
인천	838,164,548	1,076,013,209	28.38	1,151,066,544	6.98	1,611,252,758	39.98	1,915,171,400	18.86
광주	1,779,599,168	1,368,622,010	-23.09	1,226,472,628	-10.39	1,791,153,270	46.04	1,738,341,140	-2.95
대전	2,545,895,368	2,502,107,100	-1.72	2,884,577,297	15.29	3,423,649,255	18.69	3,101,123,254	-9.42
울산	309,710,000	225,008,012	-27.35	539,414,180	139.73	1,018,662,516	88.85	1,176,843,750	15.53
세종	63,150,000	61,325,000	-2.89	66,217,500	7.98	58,553,000	-11.57	30,624,000	-47.70
시 단위 평균	1,215,558,162	1,378,379,593	11.49	1,549,095,413	26.24	1,815,934,503	23.16	1,722,537,256	-7.80

〈부표 8〉 지역별 지투자사업 결재금액 합계: 도, 특별자치도 (성인)

(단위: 원,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경기	1,774,550,469	2,140,479,347	20.62	2,431,615,923	13.6	4,369,850,941	79.71	4,318,693,243	-1.17
강원	964,942,499	1,203,277,996	24.70	722,460,742	-39.96	902,923,992	24.98	654,461,840	-27.52
충북	677,266,758	498,770,500	-26.36	795,961,939	59.58	1,056,063,326	32.68	906,256,643	-14.19
충남	1,178,333,873	1,238,605,499	5.11	1,443,185,039	16.52	1,966,426,097	36.26	1,659,404,237	-15.61
전북	1,017,574,422	1,238,003,840	21.66	1,574,719,545	27.2	1,911,679,817	21.4	1,789,951,292	-6.37
전남	974,122,420	755,258,000	-22.47	635,778,352	-15.82	590,049,556	-7.19	579,462,253	-1.79
경북	436,920,981	445,244,045	1.90	486,379,412	9.24	576,535,600	18.54	574,889,455	-0.29
경남	1,032,549,350	1,407,651,014	36.33	1,821,529,202	29.40	1,545,813,164	-15.14	1,172,061,044	-24.18
제주	103,814,000	121,661,315	17.19	190,511,366	56.59	397,092,139	108.43	542,728,106	36.68
도 단위 평균	906,674,975	1,005,439,062	8.74	1,122,460,169	17.37	1,479,603,848	33.30	1,355,323,124	-6.05

〈부표 9〉 지역별 지투자사업 결재금액 합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노인)

(단위: 원,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서울	2,115,474,606	2,460,579,034	16.31	2,443,966,789	-0.68	2,715,281,246	11.10	2,400,563,700	-11.59
부산	3,388,898,831	4,900,270,791	44.60	5,607,144,059	14.43	5,934,793,474	5.84	5,203,519,859	-12.32
대구	2,797,145,091	3,121,723,900	11.60	3,088,040,099	-1.08	3,982,977,383	28.98	3,930,106,146	-1.33
인천	2,145,189,954	2,515,008,216	17.24	2,544,881,436	1.19	4,047,679,114	59.05	4,946,024,817	22.19
광주	2,164,364,151	1,958,967,600	-9.49	2,164,832,480	10.51	3,634,917,567	67.91	2,611,626,655	-28.15
대전	5,286,048,670	4,293,155,062	-18.78	4,322,650,095	0.69	5,588,720,934	29.29	5,017,062,757	-10.23
울산	798,490,025	1,318,143,700	65.08	1,358,328,552	3.05	1,824,761,871	34.34	882,298,291	-51.65
세종	19,530,000	8,835,000	-54.76	2,880,000	-67.40	180,000	-93.75	0	-
시 단위 평균	2,339,392,666	2,572,085,413	8.97	2,691,590,439	-4.91	3,466,163,949	17.85	3,123,900,278	-24.13

〈부표 10〉 지역별 지투자사업 결재금액 합계: 도, 특별자치도 (노인)

(단위: 원,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경기	3,326,633,780	4,000,438,025	20.25	4,020,314,916	0.50	6,284,833,714	56.33	6,989,700,752	11.22
강원	2,039,754,319	2,667,637,016	30.78	2,255,064,016	-15.47	2,948,392,210	30.75	2,236,994,810	-24.13
충북	1,664,701,841	1,222,117,580	-26.59	2,051,002,629	67.82	2,695,052,369	31.40	2,308,233,846	-14.35
충남	2,898,959,935	3,494,027,026	20.53	3,692,619,552	5.68	4,826,495,529	30.71	4,901,158,408	1.55
전북	1,269,444,136	1,671,380,269	31.66	2,701,732,389	61.65	4,404,419,337	63.02	5,320,629,990	20.80
전남	5,587,033,255	5,929,058,872	6.12	5,648,846,150	-4.73	6,497,467,855	15.02	6,396,953,543	-1.55
경북	3,606,802,872	3,416,882,292	-5.27	3,124,372,031	-8.56	4,262,193,232	36.42	3,408,306,996	-20.03
경남	1,673,921,449	1,980,616,037	18.32	1,931,984,239	-2.46	2,763,424,875	43.04	1,603,177,758	-41.99
제주	1,450,178,607	2,036,624,122	40.44	2,472,670,915	21.41	3,716,828,429	50.32	3,173,604,806	-14.62
도 단위 평균	2,613,047,799	2,935,420,138	15.14	3,099,845,204	13.98	4,266,567,506	39.67	4,037,640,101	-9.23

〈부표 11〉 지역별 지투자업 결제금액 합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장애인)

(단위: 원,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서울	1,603,606,180	1,685,528,111	5.11	1,781,612,848	5.70	1,928,921,884	8.27	1,724,564,062	-10.59
부산	1,122,360,014	503,970,309	-55.10	424,554,606	-15.76	667,161,400	57.14	837,114,632	25.47
대구	823,342,920	800,345,124	-2.79	864,941,204	8.07	890,231,763	2.92	822,823,495	-7.57
인천	1,079,346,192	1,500,980,190	39.06	1,612,109,434	7.40	1,739,904,973	7.93	1,995,110,770	14.67
광주	441,406,000	226,674,473	-48.65	277,121,500	22.26	370,310,260	33.63	459,700,090	24.14
대전	1,254,955,314	1,155,648,350	-7.91	1,291,779,501	11.78	1,459,332,298	12.97	1,550,650,604	6.26
울산	220,490,000	202,210,012	-8.29	307,731,316	52.18	654,813,341	112.79	650,897,250	-0.60
세종	16,680,000	14,890,000	-10.73	9,432,000	-36.66	11,808,000	25.19	13,248,000	12.20
시 단위 평균	820,273,328	761,280,821	-11.16	821,160,301	6.87	965,310,490	32.60	1,006,763,613	8.00

〈부표 12〉 지역별 지투자사업 결재금액 합계: 도, 특별자치도 (장애인)

(단위: 원, %)

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합계	전년대비 증감
경기	2,608,094,500	3,570,829,978	36.91	3,442,838,023	-3.58	6,251,510,895	81.58	5,944,231,343	-4.92
강원	207,523,099	287,615,000	38.59	312,629,132	8.70	485,781,400	55.39	331,266,400	-31.81
충북	574,603,800	469,599,500	-18.27	659,307,590	40.40	842,253,806	27.75	850,847,635	1.02
충남	891,681,873	1,027,204,499	15.20	1,190,103,289	15.86	1,613,499,306	35.58	1,430,078,087	-11.37
전북	1,174,921,422	1,103,155,090	-6.11	1,347,409,913	22.14	1,507,140,665	11.85	1,495,189,492	-0.79
전남	901,205,420	780,557,500	-13.39	682,902,727	-12.51	614,479,776	-10.02	727,857,771	18.45
경북	307,004,581	352,607,545	14.85	479,023,282	35.85	582,630,960	21.63	487,464,600	-16.33
경남	859,035,830	914,586,975	6.47	1,185,577,300	29.63	1,546,252,729	30.42	1,155,229,969	-25.29
제주	410,420,000	295,460,000	-28.01	292,987,754	-0.84	197,455,639	-32.61	119,849,086	-39.30
도 단위 평균	881,610,058	977,957,343	5.14	1,065,864,334	15.07	1,515,667,242	24.62	1,393,557,154	-12.2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방안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기획, 조정, 성과관리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합리적 기획 및 조정을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기획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2조(성실 응답의무)와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통계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오며, 개인정보(실명 등)은 공개되지 않고 분석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안수란 드림

[조사문의] 김진희 연구원 (044-287-8180 / kjh0212@kihasa.re.kr)

0-1 지역명	
----------------	--

A. 사업기획

1-1 다음은 지자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하 지투사업) 사업기획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 정도에 **✓**표시 해주세요.

지자체 사업기획에 대한 생각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1 우리지역은 지투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1-1-2 우리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욕구의 다양성(ex. 인구분포, 특수한 욕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1-1-3 우리지역은 지역 내 공급 가능 기관과 제공인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1-1-4 우리지역은 매년 지역의 욕구조사에 기반하여 사업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1-1-5 우리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지투사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1-1-6 우리지역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잠재적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서비스가 개발·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1-7 우리지역은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8 우리지역은 신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1-1-9 신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1-1-10 신규 사업의 기획·개발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복지부의 적극적인 표준모델 개발이 뒷받침 되는 것이 중요하다.							
1-1-11 지역사회서비스 표준모델이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이 좋다.							
1-1-12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것보다 기존사업을 점검·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2 귀 지역은 매년 지투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계십니까?
1, 2, 3 순위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지역사회의 수요 및 공급 역량
- ② 대상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 ③ 서비스의 실적목표와 달성도
- ④ 서비스 만족도
- ⑤ 서비스 효과성(이용자 변화)
- ⑥ 지투사업의 목적 부합성
- ⑦ 기타 (기재: _____)

1-3 귀 지역은 신규 사업의 발굴·기획·개발을 위하여 **체계화된 절차(시기, 방법, 위원회 구성 등)**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1-3-1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1-3-2 그 절차가 신규 사업 개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 아니오



1-3-3 없다면 신규 사업의 기획·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1-4 귀 지역에는 기존 사업의 조정 및 폐지를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 **1-4-1** 사업의 조정 및 폐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기준별 세부내용이 있는 경우(예: 예산 집행률 20% 이하 등)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① 전년도 예산의 집행률 (구체적으로 기입: _____)
 ② 전년도 서비스 이용률 (구체적으로 기입: _____)
 ③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구체적으로 기입: _____)
 ④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구체적으로 기입: _____)
 ⑤ 사회서비스 제공의 사회적 가치
 ⑥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부재
 ⑦ 복지부의 지침
 ⑧ 기타 (기재: _____)

1-4-2 그 기준이 사업 조정 및 폐지를 결정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 아니오

→ **1-4-3** 없다면 사업의 조정 및 폐지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1-5 귀 지역은 사업별 예산배분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 **1-5-1** 사업별 예산배분을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예산 집행률 ② 서비스 이용률 ③ 서비스 대기자 수
 ④ 이용자의 만족도 ⑤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⑥ 서비스 제공기관 수 ⑦ 복지부의 지침
 ⑧ 기타 (기재: _____)

② 아니요 → **1-5-2**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음
 ② 연도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③ 기준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④ 행정업무의 가중함
 ⑤ 특별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⑥ 기타 (기재: _____)

1-6 다음은 귀 지역 지투사업의 서비스 제공대상별 예산 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의 정도에 **✓표시** 해주세요.
 ※ 서비스 제공대상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기타 대상을 의미

예산 편성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1	우리지역은 서비스 제공대상별 예산 비율에 있어 특정 대상으로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1-6-2	우리지역은 서비스 제공대상별 예산 비율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6-3	서비스 제공대상별 예산 비율의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1-6-4	우리지역의 시군구는 예산 편성에 변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편이다.							
1-6-5	서비스 제공대상별 예산 비율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1-7 서비스 제공대상별 예산 편성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 대상에 예산 배분 상한 기준을 설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특정 서비스 제공 대상에 대한 예산 배분의 상한선은 전체 예산에서 _____%가 적정하다.

C. 구조조정

3-1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귀 지역은 표준모델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 정도에 √표시** 해주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다음은 2018년 현재 제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입니다. 다음 중 개편이 필요한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한 후, **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아래의 항목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	
①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②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③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④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⑥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⑦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⑧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⑨ 정신건강 도탈케어 서비스	⑩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⑪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⑫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⑬ 장애인 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 ⑭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⑮ 성인(청년) 심리지원서비스 ⑯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⑰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서비스

< 개편 필요 이유 >
① 선택한 표준모델에 대한 지역사회의 욕구가 저조함 ② 다른 표준모델과 서비스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어 정체성이 모호함 ③ 지투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델임 ④ 표준모델의 기준정보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의 사업운영 재량을 침해함 ⑤ 서비스 기준정보 위반, 부정수급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 관리가 어려움 ⑥ 기타 (기재: _____)

	3-2-1 표준모델(번호 기입)	3-2-2 개편 필요 이유(번호 기입) ※ 기타의견은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3-3 현재 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지투 사업(표준+자체개발모델 포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3-1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예 →

- ① 특정 대상 또는 기능을 중심으로 사업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 ②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해서
- ③ 수요 욕구가 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해서
- ④ 집행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업 조정이 필요해서
- ⑤ 부정수급이 많은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서
- ⑥ 다른 사업과의 서비스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⑦ 기타 (기재: _____)

② 아니오

3-4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투사업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달성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 ① 구조조정의 근거 부족(지침의 구체성 결여) ② 제공기관의 저항 ③ 시·도의 집행 부담
- ④ 시·군·구와의 갈등 ⑤ 서비스 이용자의 민원 ⑥ 기타 (기재: _____)

3-5 지투사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귀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운영 및 관리 애로사항이나 개선방안 등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